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소득보장 전망 및 과제

신화연

강성호·김형수·최경진·송창길·황안나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신화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진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형수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경진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송창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황안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023-46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소득보장 전망 및 과제

발 행 일 2023년 12월
발 행 인 이 태 수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 쇄 처 에코디자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ISBN 979-11-7252-007-6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3.46>

발|간|사

우리나라는 고령화 정도와 속도가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인구구조는 급격하게 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적용 대상과 도입 시기, 연금 수급 조건 등에 따라 제도별·세대별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으로 외형적으로는 다층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이 가장 오래되었고 퇴직연금과 기초연금은 각각 2005년, 2008년에 도입되어, 세대별·가입시기별로 수급 여부와 보장 수준이 서로 다르다. 조세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은 최근 기초연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본인 기여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다층 노후소득보장에서의 역할 정립은 또 다른 과제로 볼 수 있다.

기초연금액 인상 등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국민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전반에 대한 제도개혁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설정하였고, 2023년에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회 특위에서 연금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인구구조 변화는 기대수명 연장과 근로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수급연령 인상에 맞춘 가입연령 조정 등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현재 55세인 퇴직연금 수급연령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정합성 차원에서 동일한 분석틀로 노후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신화연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우리 원의 송창길 부연구위원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였으며,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경상국립대학교 최경진 교수, 국민연금연구원 김형수 부연구위원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는 내내 유익한 의견을 주신 우리원 우해봉 연구

위원과 연세대학교 양재진 교수, 그리고 익명의 보고서 평가자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끝으로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연구진의 개별 연구임을 밝혀둔다.

202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장 노후소득보장 제도 운영 현황	 13
제1절 국민연금	20
제2절 기초연금	29
제3절 퇴직연금	37
제4절 주택연금	61
제5절 개인연금	88
 제3장 노후소득보장 최근 동향과 해외 사례	 101
제1절 노후소득보장 최근 동향	103
제2절 해외 사례	138
 제4장 노후소득보장 전망 및 분석 결과	 179
제1절 분석 개요	181
제2절 전망 결과	194
 제5장 결론 및 정책과제	 207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209
제2절 정책과제	211



참고문헌	231
------------	-----

부록	247
----------	-----

[부록] 세대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노후보장 수준 전망표	247
---------------------------------------	-----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2-1〉 중장년층의 공적연금 가입 현황	17
〈표 2-2〉 은퇴가구의 생활비 충당 정도 및 노후준비 상황	18
〈표 2-3〉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구성 현황	20
〈표 2-4〉 국민연금 가입 대상	21
〈표 2-5〉 국민연금 가입자 수 추이	24
〈표 2-6〉 국민연금 수급자 수 추이	25
〈표 2-7〉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 월액 현황	27
〈표 2-8〉 국민연금 재정 현황	28
〈표 2-9〉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30
〈표 2-10〉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1
〈표 2-11〉 기초연금 급여액	31
〈표 2-12〉 기초연금 수급자 수 현황	32
〈표 2-13〉 기초연금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	33
〈표 2-14〉 기초연금 소요예산	34
〈표 2-15〉 퇴직급여 유형 비교	41
〈표 2-16〉 종사자 규모별 조직형태별 기업 수 및 소멸률(2016년)	44
〈표 2-17〉 퇴직연금 IRP 가입범위 확대	45
〈표 2-18〉 퇴직(연)금제도 연혁	46
〈표 2-19〉 IRP 유형	49
〈표 2-20〉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 비교	50
〈표 2-21〉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수 추이	54
〈표 2-22〉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수 추이	55
〈표 2-23〉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수 추이	55
〈표 2-24〉 퇴직연금 제도 유형별 가입 근로자 수 추이	56
〈표 2-25〉 퇴직급여제도 유형별 수급 추이	57
〈표 2-26〉 퇴직연금 적립금액 추이	58
〈표 2-27〉 퇴직연금 적립금 제도 유형별 운용수익률 추이	59

〈표 2-28〉 퇴직연금 적립금 제도 유형별 운용방법별 장기수익률 추이	59
〈표 2-29〉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의 비교	64
〈표 2-30〉 연령 및 주택가격별 월지급금(종신정액형, 2023년 기준)	66
〈표 2-31〉 주택연금 상품 비교	67
〈표 2-32〉 주택연금 확정기간형의 가입연령별 수령기간	67
〈표 2-33〉 주택연금 종신 방식의 수시인출금 사용용도	68
〈표 2-34〉 주택연금 확정기간 방식의 수시인출금 사용용도	68
〈표 2-35〉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방식	69
〈표 2-36〉 주택연금 제도 개선 추진 내역	72
〈표 2-37〉 연소자 연령 및 주택시세별 총 대출한도 상황에 따른 월지급금 변동	73
〈표 2-38〉 주택시세 별 총대출한도 상황에 따른 월지급금 변동	74
〈표 2-39〉 주택연금 지역별 가입 건수	76
〈표 2-40〉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령 분포	77
〈표 2-41〉 주택연금 가구 형태별 가입 현황	78
〈표 2-42〉 지급방식별 주택연금 가입 현황	78
〈표 2-43〉 주택연금 지급유형별 가입 현황	79
〈표 2-44〉 담보취득 방식별 주택연금 가입 현황	80
〈표 2-45〉 월지급금별 주택연금 가입 현황	80
〈표 2-46〉 담보주택 가격별 주택연금 가입 현황	81
〈표 2-47〉 지역별 평균 담보주택 가격 현황	83
〈표 2-48〉 담보주택 유형별 주택가격 현황	84
〈표 2-49〉 담보주택 유형별 주택연금 가입 현황	84
〈표 2-50〉 담보주택 면적별 주택연금 가입 현황	85
〈표 2-51〉 주택연금 가입 유인 수단	85
〈표 2-52〉 주택연금 가입자의 대표적 특성	86
〈표 2-53〉 주택연금 계정의 재정 현황	87
〈표 2-54〉 연금저축 상품의 변화 과정 및 내용	90



〈표 2-55〉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2017. 4.1~)	91
〈표 2-56〉 개인연금저축 가입 추이(2013년~)	92
〈표 2-57〉 개인연금 가입 동기	94
〈표 2-58〉 개인연금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 현황	95
〈표 2-59〉 개인연금 연금저축 신규 및 해지 계약	96
〈표 2-60〉 개인연금 저축상품별 수익률 현황	97
〈표 2-61〉 개인연금, 개인형 IRP의 적립액 추이	98
〈표 2-62〉 개인연금 연금저축의 연금 수령 형태 비중	99
〈표 2-63〉 개인연금 연금저축의 연금 수령액	100
〈표 3-1〉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 및 가입 현황(2021년 기준)	105
〈표 3-2〉 중·장년층의 퇴직연금 적용 ¹⁾ 현황(2021년 기준)	106
〈표 3-3〉 퇴직연금 인출 사유·성·연령별 중도인출 현황	107
〈표 3-4〉 퇴직금 수령 전·후 주택자산 및 자가보유율 추이	108
〈표 3-5〉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및 해지 현황	111
〈표 3-6〉 퇴직연금 유형별 적립액 추이	112
〈표 3-7〉 GDP 대비 퇴직연금 적립금 비율 비교	113
〈표 3-8〉 퇴직연금 제도 유형별 운용방법별 연간수익률의 연도별 추이	114
〈표 3-9〉 퇴직연금 제도 유형별 운용방법별 장기수익률 현황	115
〈표 3-10〉 퇴직연금 제도 유형별 총비용 부담률 현황	118
〈표 3-11〉 퇴직연금의 총비용 부담률 현황	118
〈표 3-12〉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의 기금운용수익률 비교	119
〈표 3-13〉 연금퍼즐 및 연금화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 주요 선행연구	121
〈표 3-14〉 퇴직급여 유형별 수령 현황(2022년 기준)	122
〈표 3-15〉 연금소득관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내용과 근거법령	124
〈표 3-16〉 우리나라 사적연금 세제의 주요 변천 내용	126
〈표 3-17〉 OECD 주요국의 사적연금 운영 단계별 세제 혜택	127
〈표 3-18〉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	129

〈표 3-19〉 주택자산 분위별 주택연금 소득대체율	132
〈표 3-20〉 주택연금 반영 전·후 빈곤선 및 상대적 노인빈곤율	137
〈표 3-21〉 주택연금 가입자와 일반국민의 기대여명 비교	138
〈표 3-22〉 OECD 소득보장체계에서 총소득대체율 비교(평균소득자 기준)	140
〈표 3-23〉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OECD 분석 결과)	142
〈표 3-24〉 고령화 단계별 공사적 연금제도 변화 특성	144
〈표 3-25〉 주요국의 퇴직연금 강제성 및 보험료(기여금) 현황	147
〈표 3-26〉 DB형, DC형, CDC형 퇴직연금제도의 특징 및 차이	149
〈표 3-27〉 영국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령 형태	153
〈표 3-28〉 스위스 퇴직연금의 연금 수령 및 일시금 수령 비중	154
〈표 3-29〉 주요국의 GDP 대비 사적연금 급여 수준 변화 추이	157
〈표 3-30〉 다층 노후소득보장 소득대체율(보험료율) 국제 비교1)	159
〈표 3-31〉 OECD 회원국의 연금급여 자동조정장치(의무적 연금 기준)	160
〈표 3-32〉 미국 HECM 요약	162
〈표 3-33〉 미국 주택연금 HECM 대출 비용	163
〈표 3-34〉 홍콩 RMP 제도 개요	165
〈표 3-35〉 홍콩 주택가격 인정 한도	166
〈표 3-36〉 홍콩 RMP 가입연령·수령기간별 월지급금(주택가격 변동금리 적용 기준)	167
〈표 3-37〉 홍콩 RMP 가입연령·수령기간별 월지급금(주택가격 고정금리 적용 기준)	167
〈표 3-38〉 홍콩 생명보험 역모기지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170
〈표 3-39〉 싱가포르 민간 역모기지와 공적 역모기지의 비교 요약	171
〈표 3-40〉 싱가포르 HDB의 Lease Buyback Scheme 주요 특징	172
〈표 3-41〉 싱가포르 LBS 제도 변화	174
〈표 3-42〉 싱가포르 Home Equity Income Loan의 주요 특징	175
〈표 3-43〉 영국 평생주택담보대출 신규 이용자의 특성	177
〈표 4-1〉 분석을 위한 인구변동 요인 가정	187
〈표 4-2〉 분석을 위한 경제변수 가정	189



〈표 4-3〉 분석을 위한 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 가정	190
〈표 4-4〉 분석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변수 가정	190
〈표 5-1〉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226
〈표 5-2〉 주택연금과 생명보험 역모기지의 비교	230
〈부표 1〉 출생연도별 65세 기준 월평균 국민연금 노령연금액	247
〈부표 2〉 퇴직연금 수급자의 출생연도별 65세 기준 퇴직연금액	248
〈부표 3〉 (국민+퇴직) 수급자의 출생연도별 65세 기준 월평균 연금액	249
〈부표 4〉 (국민+퇴직) 출생연도별 65세 기준 A값 대비 소득대체율 (0.5A 소득자)	250
〈부표 5〉 (국민+퇴직) 출생연도별 65세 기준 A값 대비 소득대체율(A 소득자)	251
〈부표 6〉 (국민+퇴직) 출생연도별 65세 기준 A값 대비 소득대체율(1.5A 소득자)	252
〈부표 7〉 (국민+퇴직) 출생연도별 65세 기준 A값 대비 소득대체율(2A 소득자)	253

그림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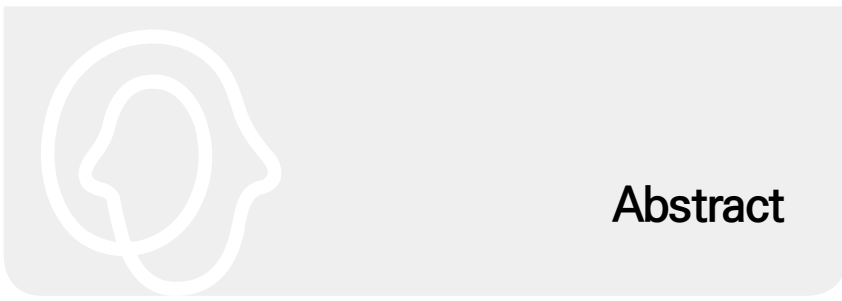
[그림 2-1]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 및 현황	15
[그림 2-2]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비교 (2019년 기준, 66세 이상 가처분 소득 기준)	19
[그림 2-3] 국민연금 가입자 수 추이	24
[그림 2-4] 국민연금 수급자 수 추이	26
[그림 2-5] 국민연금 수급자 수 급여 종별 비중 추이	26
[그림 2-6] 국민연금 적립기금 등 재정 추이	29
[그림 2-7] 기초연금 수급자 수 현황	32
[그림 2-8] 기초연금 동시 수급자 수 및 무연금자 수 전망	35
[그림 2-9] 기초연금 지출 규모 전망	36
[그림 2-10] 기초연금 연동 방식별 지출 규모 전망 결과	36
[그림 2-11] 퇴직급여제도 체계	39
[그림 2-12] 확정급여 퇴직연금 운영방식	39
[그림 2-13] 확정기여 퇴직연금 운영방식	40
[그림 2-14]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식	41
[그림 2-15] 퇴직급여제도 및 퇴직연금제도의 관계	48
[그림 2-16] 퇴직연금제도 운영 체계	52
[그림 2-17] 주택연금 운영구조	61
[그림 2-18] 신탁 방식 주택연금 운영구조	62
[그림 2-19]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구조	65
[그림 2-20] 주택연금 상품 선택기준	70
[그림 2-21] 주택연금 누적 및 신규 가입 건수 연도별 추이	75
[그림 2-22] 개인연금 유형	89
[그림 2-23] 개인연금(연금저축) 소득계층별 가입률(2021년 기준)	93
[그림 3-1] 퇴직연금 제도별 적립금 현황	116
[그림 3-2] 퇴직연금 수익률 및 총비용부담률 추이	117
[그림 3-3] 선진국의 공적연금 개혁과 사적연금 역할 강화	130



[그림 3-4] 퇴직연금 평가요소 및 평가기준	131
[그림 3-5] 주택자산을 고려한 빈곤율 산출 프로세스	136
[그림 3-6] 소득보장체계 공·사적 유형 분류(OECD 기준)	139
[그림 3-7]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142
[그림 3-8] 주요국의 강제성 사적연금 가입 현황	146
[그림 3-9] 미국 DC형 퇴직연금 수급 현황	151
[그림 3-10] OECD 국가의 사적연금 비중 추이	157
[그림 3-11] OECD 주요국의 노인빈곤(2018년)	158
[그림 3-12] 우리나라와 미국의 역모기지 지급방식 구성비	164
[그림 3-13] 미국 HECM 공급 추이	164
[그림 3-14] 싱가포르 CPF 계좌의 구성	173
[그림 4-1] 노후소득보장 수준 분석 개요	181
[그림 4-2] 1~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적립기금 규모 전망 비교	183
[그림 4-3] 1~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부과방식 비용을 전망 비교	184
[그림 4-4]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부과방식 비용을 전망	185
[그림 4-5]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년과 2070년 비교	188
[그림 4-6] 출생코호트별 65세 인구수 전망	196
[그림 4-7] 출생코호트별 65세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수 전망	197
[그림 4-8] 출생코호트별 65세 인구수 대비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 비율 전망	198
[그림 4-9] 출생코호트별 65세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전체 급여액 전망	198
[그림 4-10] 출생코호트별 65세의 국민연금 월평균 노령연금 급여액 전망	199
[그림 4-11] 출생코호트별 A값 대비 국민연금 월평균 노령연금액 전망	200
[그림 4-12] 출생코호트별 65세 퇴직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 전망	202
[그림 4-13] 출생코호트별 A값 대비 출생연도별 월평균 퇴직연금 급여액 전망	203
[그림 4-14] 출생코호트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동시 수급자의 A값 대비 월평균 급여액 전망	204
[그림 5-1]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216



[그림 5-2] 주택연금 비(非)가입 이유	219
[그림 5-3]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 추이	221
[그림 5-4] 주택연금 중도해지 이후 해지자의 주택 활용유형 비중	223
[그림 5-5] 퇴직연금 인출 사유별 증감률	227
[그림 5-6] 퇴직연금 인출 사유·연령대별 중도인출 인원	227



Abstract

The Changing Population Structures and Future Prospects of Old-Age Income Security

Project Head: Shin, Hwa-yeon

Changes in Korea's demographic structure, such as aging, are expected to proceed rapidly.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due to the extension of life expectancy are closely related to stable system operation of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s that consider life cycles.

The system of old-age income security, which is closely linked to demographic change, is a multi-pillar system consisting of the national pension, the basic pension and the retirement pension plan. As the population is expected to age rapidly, even if the current system of income security in old age remains in place, the level of security for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will diff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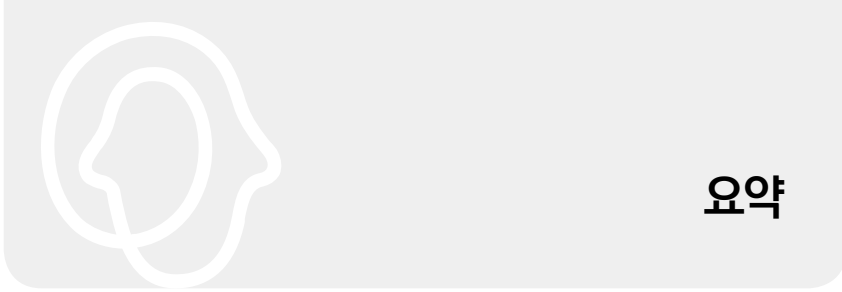
This study forecasts the level of old-age income for each generation, including the national pension, the basic pension and the retirement pension, in preparation for rapid demographic change in the future, and examines the policy direction of a multi-pillar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2021 Future Population Projections, which reflect recent trends in

2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소득보장 전망 및 과제

fertility rates and life expectancy, we have projected the level of old-age income security and reviewed the policy direction of income security on this basis.

Keyword : structure changing population structures, income security in retirement, multi-pillar old age income security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구구조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으로 외형적으로는 다층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이 가장 오래 되었고 퇴직연금과 기초 연금은 각각 2005년, 2008년에 도입되어, 세대별·가입시기별로 수급여부와 보장수준 정도가 서로 다르다. 조세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은 최근 기초연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본인 기여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다층노후소득보장에서의 역할 정립은 또 다른 과제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금제도 중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중심에 해당하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에 대해서 제도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예상되는 노후소득수준을 전망한다.

미래 급격한 인구변화에 대비하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세대별 보장수준과 부담수준을 전망하고 실증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정책방향을 검토하였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보장수준은 서로 차이가 있다. 최근 출산률과 기대수명 추이 등에 따른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를 반영한 미래의 노후 소득보장수준 전망과 이를 토대로 한 노후소득보장의 정책방향을 검토하였다.

2. 주요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주요 현황을 살펴보고,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의 기본가정을 준용하여 출생연도별 노후 소득수준을 전망해 보았다.

4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소득보장 전망 및 과제

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급자 및 전체적인 재정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에서의 가입 관련, 점진적이긴 하지만 도입률과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퇴직급여의 연금 수령 비중 또한 높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연금보다는 일시금 수령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망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전망은 기본적으로 재정계산에서의 기본 가정하에 전체적인 재정전망을 위한 세부적인 전망으로 이루어지는 성별, 연령별 단위의 가입과 수급에 대한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갖는 결과로 이해하는 데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퇴직연금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가정을 설정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설정된 가정들은 퇴직연금 현황의 수준과 다소 괴리가 있거나, 현행 제도의 DB, DC IRP 등의 구분을 따르지 않고 단순화하였다. 그러한 가정 설정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는 연금제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노후 대비에 충실하게 따랐을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 부분에서 제시된 노후 소득수준 전망 결과는 평균 소득수준의 근로자가 퇴직연금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를 충실히 따랐을 경우에 예상할 수 있는 노후 소득수준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한 노후 소득수준을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즉 국민연금은 강제가입에 의한 것으로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노동시장에서 평균적인 근로기간을 보냈을 경우 현재의 국민연금 급여 수준에 의하면 약 27%의 소득대체율을 예상할 수 있고, 퇴직연금을 추가로 가입하였을 경우 최대 50%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평균 소득자보다 낮은 소득수준의 가입자는 국민연금 부분에서 소득대체율이 다소 높아질 여지가 있고, 평균 소득자보다 높은 소득수준의 가입자인 경우에는 다소 소득대체율 수준이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노후에 평균적으로 50%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기대할 수 있다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매우 부족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은 국민연금의 경우 현 제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재정계산 결과에서 언급하였듯이 현 제도 및 현재 예상되는 인구구조에서는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는 현 제도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데, 별도의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앞에서 분석한 노후 소득수준을 기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부과방식 비용을 분해를 통한 접근에 기초하면, 부과방식 비용률은 노인부양비와 실질적인 평균 소득대체율에 비례한다. 따라서 인구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별도의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소득대체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퇴직 시까지 적립된 퇴직급여 적립액이 많을수록 연금액이 커지고 소득대체율이 높아질 수 있다. 개별 근로자별 소득수준에 의한 차이를 논외로 하면, 이에 대한 운용수익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현황에서와 같은 퇴직연금 운용수익률로는 더 넉넉한 노후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러한 분석은 국민연금의 경우 현 제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재정계산 결과에서 언급하였듯이 현 제도 및 현재 예상되는 인구구조에서는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는 현 제도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데, 별도의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앞에서 분석한 노후 소득수준을 기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부과방식 비용을 분해를 통한 접근에 기초하면, 부과방식 비용률은 노인부양비와 실질적인 평균 소득대체율에 비례한다. 따라서 인구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별도의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소득대체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퇴직 시까지 적립된 퇴직급여 적립액이 많을수록 연금액이 커지고 소득대체율이 높아질 수 있다. 개별 근로자별 소득수준에 의

한 차이를 논외로 하면, 이에 대한 운용수익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현황에서와 같은 퇴직연금 운용수익률로는 더 넉넉한 노후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불확실한 미래를 예상 가능한 미래로 만들기 위해서는 위험 요인에 해당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의 입장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확실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투자의 관점에서와 같이 분산투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다층 체계의 연금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야 노후 소득수준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전반적인 연금제도를 관리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되는 퇴직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 기관 입장에서의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뿐만 아니라, 연금형태로의 수급 등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주요 용어 : 인구구조 변화, 노후소득수준, 다층 노후소득보장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1 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외형적으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소득수준이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공적연금제도에서 사적연금제도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소득수준의 관점에서 개개인의 소득수준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근로 시기의 소득수준의 차이가 노후의 소득수준의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 공적연금제도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고,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사적연금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산업화 이전의 물물교환 또는 자급자족으로 생활이 이루어지던 세상에서는 굳이 연금제도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경제활동으로 인한 가치가 화폐로 환산되는 세상에서는 연금제도가 노후를 준비하는 데 유용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로 시기에는 나름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젊은 근로 시기와 동일한 수준의 경제활동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예전에 비해 평균수명이 점점 길어지는 고령화되는 추세는 그러한 노인의 삶에 해당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더 필요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재정의 문제는 현대 사회의 큰 이슈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의 중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우선 국민연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개개인이 모두 동일하게 다루어질 수는 없지만, 복잡한 사회를 유지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는 대표성을 갖는 기준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제도는 그러한 관점에서 평균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준으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많은 개인이 근로 시기에 사업장 근로자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대표성을 갖는 국민연금제도에서 가입자의 상당 규모가 사업장가입자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제도 또한 중요한 대표성을 갖는 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금제도 중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중심 제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에 대해서 각 제도가 운영되는 현황을 살펴보고 예상되는 노후 소득수준을 전망하고자 한다.

인구구조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적용 대상과 도입 시기, 연금 수급 조건 등에 따라 제도별·세대별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으로 외형적으로는 다층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이 가장 오래되었고 퇴직연금과 기초연금은 각각 2005년, 2008년에 도입되어, 세대별·가입시기별로 수급 여부와 보장 수준이 서로 다르다. 조세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은 최근 기초연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본인 기여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다층 노후소득보장에서의 역할 정립은 또 다른 과제로 볼 수 있다.

퇴직연금은 전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고 적립금 규모도 빠르게 늘었으나 연금 수급 비중이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퇴직연금은 가입 확대 및 적립금 규모 증가 등으로 외형적인 형태는 갖추었으나 준공적연금으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기초연금 관련 공약 등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국민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전반에 대한 제도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기초연금을 인상한다면 노후소득보장에서 국민연금 등 타 관련 제도의 정책 방향 모색 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기대수명 연장과 근로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수급연령 인상에 맞춘 가입연령 조정 등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현재 55세인 퇴직연금 수급연령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정합성 차원에서 동일한 분석틀로 노후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급격한 인구변화에 대비하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세대별 보장 수준과 부담 수준을 전망하고,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정책 방향을 검토하였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보장 수준은 서로 차이가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후소득보장 수준과 전망 등에 대한 정책 수요는 높아지고 있는 데 비해 연구 사례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출산율과 기대수명 추이 등에 따른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반영한 미래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노후소득보장의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수준 전망 및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노후소득보장 제도 운영 현황

제1절 국민연금

제2절 기초연금

제3절 퇴직연금

제4절 주택연금

제5절 개인연금

제2장 노후소득보장 제도 운영 현황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중 공적연금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직역연금으로 구성되며, 0층인 기초연금은 조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1층인 소득비례형 공적연금(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사회보험료 방식으로 운영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사적연금으로 분류되며, 2층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재원(사용자 부담분) 혹은 본인 기여금(적립 IRP)으로 운영되며, 3층은 연금저축(적격), 연금보험(비적격)의 개인연금¹⁾으로 구성된다.

[그림 2-1]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 및 현황

보 험 료	사 적 연 금	3층	연금저축(2021년, 218만 명) / 연금보험(2022년 가입 593만 건) * 주택·농지연금			
		2층	퇴직연금 (가입: 2021년 684만 명, 수급: 2020년 55세 이상 1.2만 좌)		적립 IRP (2017.7.26. 시행, 가입: '21년 277만 명.)	
	공 적 연 금	1층	국민연금 (가입: 2023.4월 2,227만 명, 수급: 2023.4월 65세 이상 노령 401만 명)		특수직역연금 2019년 약 155만 명, 수급: 2019년 65세 이상 노령 43만 명)	
		0층	기초연금 수급자(65세 이상 소득하위 70%) (2023.7월 637만 명)			
	조 세	0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021년 노인 85만 명)			
소 득 원	대 상	근로자			자영자 등	공무원 등 직역가입자

자료: 생명보험협회 내부자료(2023),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보험 추이

국세청(2022), 2022 국세통계연보(2021년 기준)

금융감독원(2022.4.11.), 2021년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 퇴직연금감독팀(2021. 4. 5.), 2020년도

1) 여기서 적격 개인연금은 납부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개인연금을 의미하며, 비적격 개인연금은 납부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지 않지만 10년 이상 가입하고 수급 시 비과세되는 연금상품을 의미함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6240&menuNo=200218>
 에서 2023.5.2. 인출
 통계청 보도자료(2022. 12. 19.), 2021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국민연금공단(2023), 국민연금 공표통계(2023년 4월 기준)

[그림 2-1]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특정 시점에서 보여지는 가입 현황만을 제시하고 있다. 연금 수급은 생애근로기간 동안 다양한 경제활동 이력의 총합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생애기간 동안 대부분의 경제활동자(이하, 경활자)는 임금근로(근로자), 비임금근로(자영업자), 비취업(비경활, 실업 등)을 경험하게 되어 하나의 경제활동행태에 머물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림 2-1]에서 설정된 가입행태 또한 바뀔 수 있으며, 생애기간 동안 완전비경활자인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하겠다. 따라서, 생애 근로활동 유형 전환율을 고려하여 근로기간을 산출하면 퇴직연금의 경우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수급연령에 도달할 때 상당수가 퇴직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고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성호·류건식(2018)은 25세 입직자의 생애근로 가능 기간(40년 가정) 동안 근로활동 기간은 27.3년(임금근로 19.5년, 자영업 7.8년), 비취업 기간은 12.7년으로 추정된 바 있다.²⁾ 이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생애근로기간 동안의 근로활동과 매우 유사하게 추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볼 때 특정 시점에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임금근로 이력이 상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강성호, 류건식(2018), Markov 전환율을 활용한 자영업자 생애근로 유형별 연금소득대체율 추정, 보험금융연구 제29권 제2호, pp.39-71.

(표 2-1) 중장년층의 공적연금 가입 현황

구분		계	연금 있음		연금 없음	
			공적연금	퇴직연금		
2020년		20,086 (100)	15,133 (75.3)	14,881 (74.1)	4,581 (22.8)	4,953 (24.7)
2021년		20,182 (100)	15,327 (75.9)	15,033 (74.5)	4,902 (24.3)	4,855 (24.1)
전년 대비	증감	96	194 (0.6)	152 (0.4)	321 (1.5)	-98 (-0.6)
	증감률	0.5	1.3	1.0	7.0	-2.0
〈 2021년 특성 〉						
남자		10,138 (100)	8,333 (82.2)	8,173 (80.6)	2,898 (28.6)	1,805 (17.8)
여자		10,044 (100.0)	6,994 (69.6)	6,860 (68.3)	2,004 (20.0)	3,050 (30.4)
40~44세		3,831 (100.0)	3,021 (78.9)	3,000 (78.3)	1,134 (29.6)	810 (21.1)
45~49세		4,010 (100.0)	3,201 (79.8)	3,180 (79.3)	1,130 (28.2)	809 (20.2)
50~54세		4,351 (100.0)	3,502 (80.5)	3,481 (80.0)	1,152 (26.5)	849 (19.5)
55~59세		3,976 (100.0)	3,214 (80.8)	3,196 (80.4)	900 (22.6)	762 (19.2)
60~64세		4,014 (100.0)	2,389 (59.5)	2,175 (54.2)	586 (14.6)	1,625 (40.5)
등록 취업자		13,402 (100.0)	12,040 (89.8)	11,811 (88.1)	4,740 (35.4)	1,362 (10.2)
	임금 근로자	10,427 (100.0)	9,430 (90.4)	9,237 (88.6)	4,295 (41.2)	997 (9.6)
	비임금 근로자	2,396 (100.0)	2,080 (86.8)	2,052 (85.7)	299 (12.5)	316 (13.2)
	임금 ·비임금 근로 병행	580 (100.0)	530 (91.5)	522 (90.1)	146 (25.2)	49 (8.5)
미취업 (미등록)자		6,780 (100.0)	3,287 (48.5)	3,222 (47.5)	162 (2.4)	3,493 (51.5)
주택 소유		8,844 (100.0)	7,412 (83.8)	7,257 (82.0)	2,758 (31.2)	1,433 (16.2)
주택 미소유		11,338 (100.0)	7,916 (69.8)	7,776 (68.6)	2,144 (18.9)	3,422 (30.2)

주: 1) 국민연금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공적연금, 퇴직연금 수급자(장애·유족연금 포함) 모두 포함

2) 공적연금은 10월 말 기준이며, 퇴직연금은 12월 말 기준 자료를 활용

자료: 통계청, (2022. 12. 20.). 2021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 p. 32.

고령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고령층은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 우리나라 70대 이상 고령층은 수급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즉, 선진국에 비해 늦게 다층 연금제도가 출범하여 공사적 연금의 가입기간이 짧거나 가입할 기회조차 없어 연금 수급액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개인 측면에서는 현재의 고령층은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한 세대로 부모의 의료 및 요양비, 자녀 교육비 마련 등으로 인해 개인적 차원의 노후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50% 이상이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공·사적 연금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35% 내외에 불과하였다.

〈표 2-2〉 은퇴가구의 생활비 충당 정도 및 노후준비 상황

(단위: 세, 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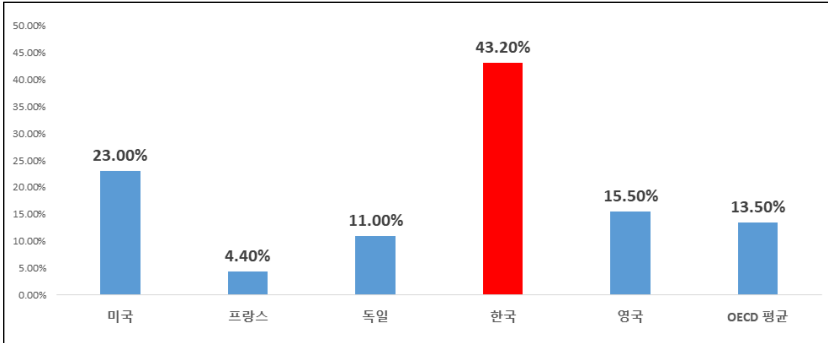
연도	은퇴 연령	생활비 충당 정도					노후를 위한 준비 상황				
		충분히 여유 있다	여유 있다	보통 이다	부족 하다	매우 부족 하다	가족, 친지 등의 용돈	공적 연금	사적 연금	공적 수혜금	기타
'20	63.0	2.0	6.7	32.0	40.6	18.8	20.9	30.4	4.1	35.5	9.0
'21	62.9	2.2	10.1	32.1	38.8	16.8	21.1	30.1	4.5	35.1	9.2
'22	62.9	2.4	7.9	32.6	39.1	18.1	22.4	30.4	5.2	33.6	8.4

자료: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2022).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도자료. p.33.

〈표 4-10〉, 〈표 4-11〉 수정하여 인용.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후 생활비 부족 현상은 노인빈곤율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19년 기준 43.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그림 2-2]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비교
(2019년 기준, 66세 이상 가처분소득 기준)



자료: 통계청, 2022년 고령자통계.

우리나라 국민은 주거 안정에 대한 니즈가 높아 은퇴 전 소득의 대부분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 은퇴 후 소득 마련을 위한 금융 자산 축적보다는 내 집 마련 등 실물자산 투자에 집중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가구는 아파트(44%)와 자가 거주 비중(75.7%)이 높으나 소득수준은 낮아 PIR(자가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9.5배로 전체 가구(7.1배)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2021년 주거실태조사). 결국, 은퇴한 뒤에 노후소득은 부족하나 주택자산을 보유한 저소득 자가보유 고령층으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된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표 2-3〉 참조)에서도 은퇴 계층인 가구주 60세 이상의 주택 등 실물자산 보유 비중은 83.0%로 나타났다. 고령가구뿐 아니라 예비 은퇴 계층에 해당하는 40~50대의 실물자산 소유 비중도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실물자산은 거래의 비유동성이 존재하므로 우리나라 가구는 실물자산 편중으로 인해 은퇴 시점에 노후소득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실물자산 보유는 자산가치 변동성 리스크가 따를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납입 부담이 존재한다.

〈표 2-3〉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구성 현황

(단위: 백만 원, %)

가구주 연령대	총자산 ①	금융자산			실물자산		
		소계 ②	저축액	전·월세 보증금	소계 ③	부동산 ④ 실물자산 대비 ④	기타
전체	548	121 (22.1)	85	36	426 (77.9)	404 (94.6)	23
40대	592	143 (24.2)	94	49	449 (75.8)	422 (93.9)	28
50대	642	147 (22.8)	114	33	496 (77.2)	467 (94.1)	29
60대 이상	544	922 (17.0)	76	16	452 (83.0)	433 (96.0)	18

주: ()는 총자산 대비 비중
자료: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제1절 국민연금

1. 제도 개요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8년에 시작되었다. 시행 초기인 1988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시작했고, 1995년에는 대상 범위를 농어촌 지역 주민으로 확대하였으며, 1999년에는 도시지역 자영업자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발전하였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을 대상³⁾으로 하며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

3)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

된다.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경우는 별도의 가입 신청에 의하여 임의가입자 될 수 있고,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경우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표 2-4〉 국민연금 가입 대상

구분		대상자	
가입 대상 (18~60세)	당연 가입	사업장	• 근로자, 사용자
		지역	• 사업장가입자 아닌 자(적용 제외자 제외)
		납부 예외	• 실직, 휴직, 병역, 재학, 교정, 감호, 1년 미만 행방불명, 재해 발생으로 보험료 납부 곤란
	임의 가입 대상	임의 가입	• 적용 제외자 중 가입 희망자
		적용 제외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수급권이 있는 배우자를 둔 무소득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연계급여 미신청자) • 재학, 병역 등 18~27세 미만 무소득자(납부 이력자 제외) • 기초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가입 대상 제외	• 타 공적연금 가입자, 국민연금 수급자(특수직종, 조기노령)		
임의계속가입		• 임의계속가입 신청자(60~65세 미만 중)	

자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2023). 알기 쉬운 국민연금 - 연금정보. https://www.nps.or.kr/jspage/info/easy/easy_02_01.jsp (2023.1.15. 인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국민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이 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제도 초기에 3%에서 시작하여 사업장가입자는 1998년 이후 9%, 지역가입자는 2005년 7월 이후 9%를 적용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일정 요건이 만족되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의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의 4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일정한 연령요건이 되면 수급 가능한 급여이다. 노령연금 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40년 기준으로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작 시에는 70%를 적용하였으나, 이후 장기적인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1998년 60%, 2008년 50%에서 2028년 40%까지 하향 조정되었다. 또한 노령연금의 연령요건이 되는 수급개시 연령은 60세를 기준으로 시작하여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되어 2033년 이후에는 65세를 수급개시 연령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수급개시 연령 이전에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 정도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급할 수 있는 급여이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 또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사망 시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급여이다. 일시금은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으로 나누어지는데,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 수급요건이 되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미충족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60세 이후에 돌려받는 급여이고,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이 없어서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 부조적·보상적 성격의 급여이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재정 상태 점검을 위하여 1998년에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하여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5차 재정계산이 수행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할 때에는 장기적인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전망과 연금 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3년 1차 재정계산의 결과에 기초하여 2007년에 2차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매 재정계산 시에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제도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 운영 현황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입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1999년 4월 이후 전 국민에게 적용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규모는 22,498천 명으로, 사업장가입자는 14,786천 명, 지역가입자는 6,846천 명, 임의가입자는 365천 명, 임의계속가입자는 501천 명이다. 본격적인 전 국민 연금시대가 열리는 2000년대 이후 당연가입자에 속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추이를 보면, 사업장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사업장 가입자 확대 정책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 기준이 제도 초기의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화한 것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자발적인 가입 신청에 의한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규모는 절대적인 규모가 작지만, 2010년대 이후 전체 가입자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이후로 임의계속가입자 규모가 더 증가한 것은 1955년생 이후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후 대비를 위해 60세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 등을 목적으로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러한 증가 추이는 1955~1963년생에 해당하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끝나는 시기⁴⁾ 및 최근의 건강보험 이슈⁵⁾ 등에 의해서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임의계속가입은 65세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이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1963년생은 65세가 되는 2028년까지만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함

5) 최근에 건강보험 자격 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 기준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연금소득이 포함되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적 유불리가 임의(계속) 가입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4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소득보장 전망 및 과제

〈표 2-5〉 국민연금 가입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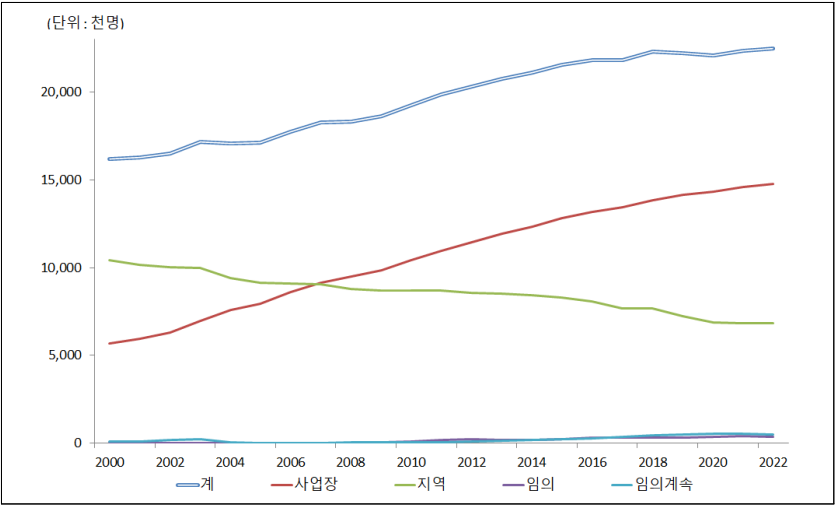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연도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가입자 수	
					합계	전년 대비 증감율
2010	10,415	8,674	90	49	19,229	3.2%
2015	12,806	8,303	241	219	21,568	2.1%
2016	13,192	8,060	297	283	21,833	1.2%
2017	13,459	7,692	328	345	21,824	0.0%
2018	13,818	7,695	330	471	22,314	2.2%
2019	14,158	7,232	329	498	22,216	-0.4%
2020	14,320	6,898	362	527	22,107	-0.5%
2021	14,581	6,827	397	543	22,348	1.1%
2022	14,786	6,846	365	501	22,498	0.7%

주: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사업장의 임·퇴사, 사업의 등록 및 폐업 등으로 수시로 변경되며, 납부에 외자를 포함함.

자료: 국민연금공단. (2023). 국민연금 공표통계 (2022년 12월 기준). p. 1. 인용하여 재작성.

〔그림 2-3〕 국민연금 가입자 수 추이



자료: 국민연금공단. (2023). 국민연금 공표통계(2022년 12월 기준)를 반영하여 재작성.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와 더불어 국민연금 수급자 규모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규모는 6,644천 명⁶⁾이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5,397천 명, 장애연금 수급자는 77천 명, 유족연금 수급자는 969천 명,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202천 명이다. 국민연금 급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제도 시행 이후 최소 가입기간을 확보하는 가입자가 누적됨에 따라서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유족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수급자 증가와 더불어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준다. 한편, 장애연금 수급자와 반환일시금 수급자 규모는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로 유지되고 있다. 급여 종류별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가 81.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연금 수급자는 1.2%, 유족연금 수급자는 14.6%,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3.0%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에 국민연금제도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됨에 따라서 이러한 급여 종류별 비율 수준은 일정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2-6〉 국민연금 수급자 수 추이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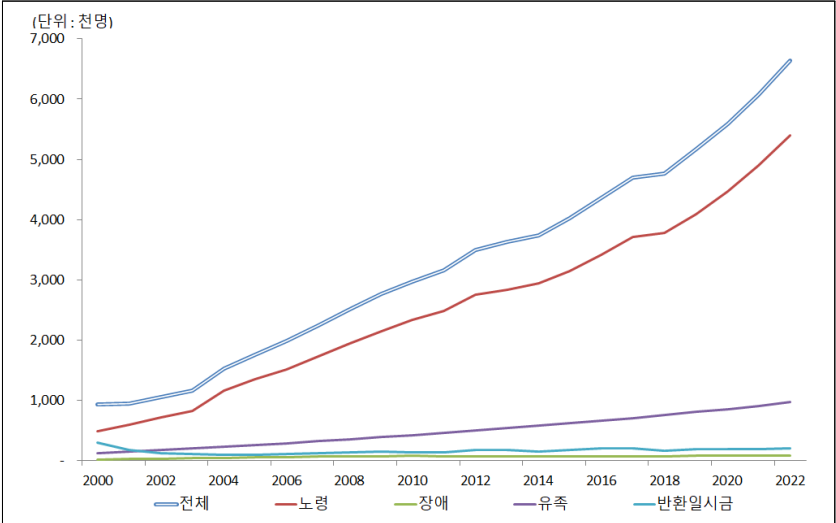
연도	연금 수급자				일시금 수급자	전체 수급자 수		가입자 수 대비 (가)
	소계	노령 (가)	유족	장애			전년 대비	
2010	2,820	2,330	424	80	158	2,975	7.4%	12.1%
2015	4,051	3,151	617	78	205	4,051	7.5%	14.6%
2016	4,135	3,412	659	78	235	4,385	8.2%	15.6%
2017	4,475	3,707	706	78	226	4,716	7.6%	17.0%
2018	4,597	3,779	756	79	180	4,794	1.7%	16.9%
2019	4,961	4,090	808	81	210	5,190	8.3%	18.4%
2020	5,388	4,465	858	81	209	5,616	8.2%	20.2%
2021	5,884	4,894	908	78	215	6,099	8.6%	21.9%

자료: 국민연금공단. (각 연도). 국민연금 통계연보.

6) 국민연금 급여 중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미미한 장애 일시금과 사망 일시금은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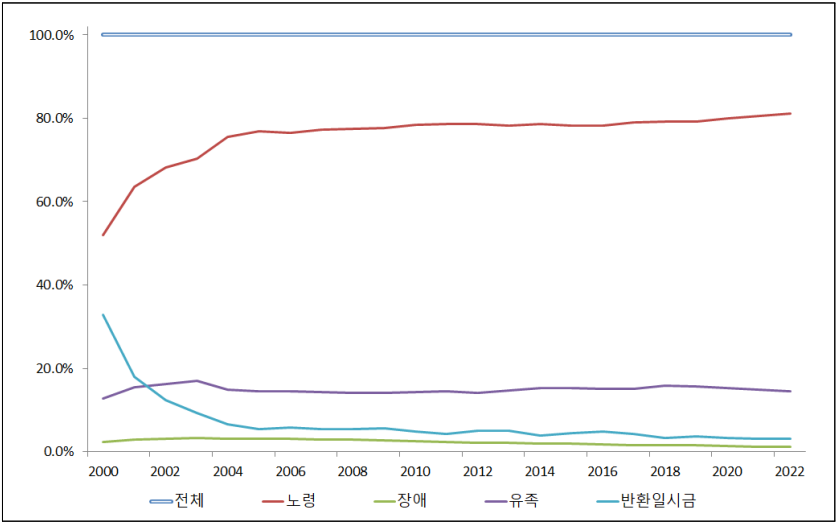
26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소득보장 전망 및 과제

[그림 2-4] 국민연금 수급자 수 추이



자료: 국민연금공단. (2023). 국민연금 공표통계(2022년 12월 기준)를 반영하여 재작성.

[그림 2-5] 국민연금 수급자 수 급여 종별 비중 추이



자료: 국민연금공단. (2023). 국민연금 공표통계(2022년 12월 기준)를 반영하여 재작성.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최고액과 평균액 수준은 연금제도가 성숙하면서 증가하고 있다. 노령연금을 중심으로 평균 연금액(특례연금과 분할연금 제외)을 살펴보면, 2015년 484천 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7년에 500천 원을 넘어섰고, 2021년에는 557천 원으로 나타났다.

〈표 2-7〉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 월액 현황

(단위: 천 원, 월액)

연도	노령연금 평균 연금액 (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나)	중위소득 (다)	노령연금 평균 연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대비(가/나)	중위소득 대비 (가/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중위소득
2012	464	1,882	2,530	24.6%	18.3%	3.7%	5.8%
2013	474	1,955	2,677	24.3%	17.7%	3.9%	5.8%
2014	478	2,017	2,712	23.7%	17.6%	3.1%	1.3%
2015	484	2,085	2,809	23.2%	17.2%	3.4%	3.6%
2016	492	2,160	2,909	22.8%	16.9%	3.6%	3.6%
2017	500	2,228	3,036	22.5%	16.5%	3.2%	4.4%
2018	510	2,319	3,182	22.0%	16.0%	4.1%	4.8%
2019	527	2,413	3,304	21.8%	16.0%	4.0%	3.8%
2020	541	2,531	3,357	21.4%	16.1%	4.9%	1.6%
2021	557	2,642	3,594	21.1%	15.5%	4.4%	7.1%
2022	586	2,861	-	20.5%	-	8.3%	-

주: 1) 노령연금에서 1988년 제도 도입 초기에 가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당시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특례노령연금 등은 연금액 평균에서 제외.

2) 2022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은 A값

3) 중위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18~65세 시장소득 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각 연도), 국민연금 통계연보.

국민연금공단(각 연도말), 국민연금 공표통계.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각 연도).

매년 증가하는 가입자 및 수급자 규모에 비례하여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수입과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지출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보험료 수입 규모가 급여 지출 규모를 매년 상회

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투자수익⁷⁾을 더하여 누적된 적립기금 또한 증가하여 2022년 말 기준으로 적립기금 규모는 890조 원이다.

〈표 2-8〉 국민연금 재정 현황

(단위: 조 원)

연도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조성	55	58	64	83	39	121	123	145	82
연금 보험료	25	36	39	42	44	48	51	54	56
운영 수익	30	22	25	41	-6	73	72	91	26
국고 보조금 등	0.04	0.09	0.05	0.07	0.03	0.08	0.07	0.1	0.1
지출	9	16	18	20	21	23	26	30	35
연금급여 지급	9	15	17	19	21	23	26	29	34
관리 운영비	0.4	0.6	0.6	0.6	0.6	0.7	0.7	0.7	0.8
기금 증가분	46	43	46	63	17	98	97	62	47
기금운용	324	512	558	622	639	737	834	945	890
기타	0.3	0.5	0.5	0.5	0.4	0.4	0.4	0.4	
수익률	10.4%	4.6%	4.8%	7.3%	-0.9%	11.3%	9.7%	10.8%	-8.2%

주: 1)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공단 사육 임대보증금, 복지연금 전입금을 뜻함.

2) 기타는 공단회관 취득비와 임차보증금, 기금보관분을 합한 금액

3) 기금운용 규모는 시장가 기준으로 작성

자료: e-나라지표(2023), 국민연금 재정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4에서
2023. 4. 29.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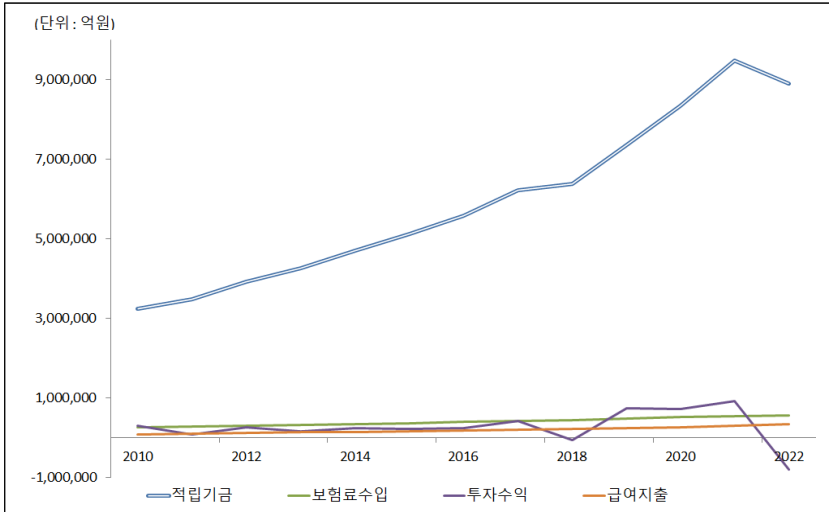
국민연금공단(2023),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 현황

https://www.nps.or.kr/jsppage/fund/mcs/mcs_03_02.jsp에서 2023. 4. 29. 인출
2022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적립 현황

https://fund.nps.or.kr/jsppage/fund/mcs/mcs_02_02.jsp에서 2023. 3. 2. 인출

7) 금융시장의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2008년, 2018년, 2022년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하여 음(-)의 투자수익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2010년, 2019년, 2020년, 2021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여 당해 연도 보험료 수입 규모를 초과하는 투자수익이 발생하기도 함.

[그림 2-6] 국민연금 적립기금 등 재정 추이



자료: e-나라지표(2023), 국민연금 재정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4에서
2023. 4. 29. 인출

국민연금공단(2023),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 현황

https://www.nps.or.kr/jsppage/fund/mcs/mcs_03_02.jsp에서 2023. 4. 29. 인출
2022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적립 현황

https://fund.nps.or.kr/jsppage/fund/mcs/mcs_02_02.jsp에서 2023. 3. 2. 인출

제2절 기초연금

1. 제도 개요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근거하며, 제1조(목적)에서 밝힌 것처럼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제도이며, 2014년 7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70%로 수준이 되도록 결정되며,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다.

단, 직역연금법 및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의한 법률에 적용받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조건 중 하나인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초연금법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서 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한다. 2019년과 2020년의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액이 단계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기초연금법 제5조의 2」 특례 조항에 따라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를 구분한 바 있다.

〈표 2-9〉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위: 원, 월액)

연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14	870,000	1,392,000
2015	93,000	1,488,000
2016	1,000,000	1,600,000
2017	1,190,000	1,904,000
2018	1,310,000	2,096,000
2019 ¹⁾	1,370,000(50,000)	2,192,000(80,000)
2020 ²⁾	1,480,000(38,000)	2,368,000(608,000)
2021	1,690,000	2,704,000
2022	1,800,000	2,880,000

주: 1) 소득 하위 20% 이하인 저소득자는 () 금액을 적용

2) 소득 하위 40% 이하인 저소득자는 () 금액을 적용

자료: 보건복지부. (각 연도). 기초연금 사업안내.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기초연금법」 제5조에서 제8조에 근거하며, 기준연금액과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의 범위에서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다.

〈표 2-10〉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단위: 원, 월액)

기간	단독
2014년 7월 ~ 2015년 3월	200,000
2015년 4월 ~ 2016년 3월	202,600
2016년 4월 ~ 2017년 3월	204,010
2017년 4월 ~ 2018년 3월	206,050
2018년 4월 ~ 2018년 8월	209,960
2018년 9월 ~ 2019년 3월	250,000
2018년 4월 ~ 2019년 12월 ¹⁾	253,750(300,000)
2020년 1월 ~ 2020년 12월 ²⁾	254,760(300,000)
2021년 1월 ~ 2021년 12월	300,000
2022년 1월 ~ 2022년 12월	307,500

주: 1) 소득 하위 20% 이하인 저소득자는 () 금액을 적용

2) 소득 하위 40% 이하인 저소득자는 () 금액을 적용

자료: 보건복지부. (각 연도). 기초연금 사업안내.

〈표 2-11〉 기초연금 급여액

대상 유형	무 연금자	국민연금 수급자			직역연금 특례 대상
		유족연금 장애연금	노령연금		
기 초 연 금 액	기준 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 기준연금액 ×1.5	기준연금액×1.5 〈국민연금 급여액≤기준연금액 ×2.0〉	국민연금 급여액×기준 연금액×2.0	기준연금 액의 1/2
		기준 연금액	Max(산식 적용액, 기준연금액×2.5-국 민연금액)	산식 적용액	

감액 1단계(부부감액)

1) 1인 수급(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미적용

2) 2인 수급(부부 2인 수급): 개인별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감액 2단계(소득역전 방지 감액)

1단계: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차액 계산

2단계: 가구별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Min(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부부감액 후 기초연금액)

3단계: 개인별 기초연금액의 비율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결정

기초연금 급여액 = Max(2단계 감액 후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0.1)

자료: 신경혜, 김형수. (2021). 기초연금 재정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국민연금연구원. p.26. 〈표 II-3〉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21년도 말 기준 597만 명(수급률 67.6%)으로, 베이비부머의 은퇴 등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여 2014년도 말 435만 명(수급률 66.8%)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수급자의 성별 비율은 6:4 수준으로 여성 비중이 높고, 연령 분포는 6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에 집중되어 있다.

〈표 2-12〉 기초연금 수급자 수 현황

(단위: 만 명, %)			
연도	65세 이상 인구수	기초연금 수급자 수	수급률
2014	652	435	66.8
2015	677	450	66.4
2016	699	458	65.6
2017	735	487	66.3
2018	764	513	67.1
2019	801	535	66.7
2020	848	566	66.7
2021	884	597	67.6

주: 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2) 연도 말(12월) 기준이며, 소급지급 수급자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그림 2-7〕 기초연금 수급자 수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2020).

기초연금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 도입 이후에 빈곤율은 2014년 44.5%에서 2020년 38.9%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빈곤갭 역시 2014년 41.8%에서 2020년 32.0%로 낮아졌고, 노인세대 내의 소득 격차도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2014년 10.6배에서 2020년 6.7배로, 지니계수는 2014년 0.447에서 2020년 0.376으로 각각 37.3%, 15.9%씩 감소하고 있어, 기초연금액을 인상한 것이 노후소득 개선 효과에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표 2-13〉 기초연금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

연도	빈곤지표		노인세대 내 소득격차 지표	
	빈곤율	빈곤갭	소득 5분위 배율	지니계수
2014	44.5%	41.8%	10.6배	0.447
2015	43.2%	40.4%	9.4배	0.427
2016	43.6%	39.8%	9.0배	0.422
2017	42.3%	39.8%	8.8배	0.416
2018	42.0%	37.4%	7.9배	0.403
2019	41.4%	35.3%	7.3배	0.389
2020	38.9%	32.0%	6.7배	0.376

주: 1) 빈곤율은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위치한 노인의 수가 전체 노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빈곤갭은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위치한 노인의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50%의 차이를 중위소득 50%로 나눈 값을 의미함.

3)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계산한 값이며,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 계층의 소득평균(점유율)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평균(점유율)으로 나눈 값이며,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한 경우가 0, 완전히 불평등한 경우가 1임.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1. 19).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예산은 2022년 기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체 20조 원에 달하는데, 2015년 10조 대비 2022년 20조로 2배 증가한 수준이다. 기초연금 소요 예산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은 2021년 기준 79.3%, 지방이 부담하는 비율은 20.7% 수준으로 나타난다.

베이비부머의 은퇴 등 급격한 고령화 속도로 인해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국가 차등 보조 기준의 강화로 기존에 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2-14〉 기초연금 소요예산

(단위: 조 원, %)

연도	기초연금 예산		
	계	국비(비율)	지방비(비율)
2014	6.9	5.2(75.0)	1.7(25.0)
2015	10.0	7.6(75.6)	2.4(24.4)
2016	10.3	7.9(76.3)	2.4(23.7)
2017	10.6	8.1(76.6)	2.5(23.4)
2018	11.8	9.1(77.0)	2.7(23.0)
2019	14.7	11.5(78.0)	3.2(22.0)
2020	16.8	13.2(78.6)	3.6(21.4)
2021 ²⁾	18.8	14.9(79.3)	3.9(20.7)
2022 ³⁾	20.0	16.1(80.5)	3.9(19.5)

주: 1) 2014~2020년은 12월 말 기준
2) 2021년은 10월 말 기준 실적치
3) 2022년은 통계청 인구추계를 기초로 한 예상치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1. 19)

2. 기초연금 재정 전망⁸⁾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소요액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65세 이상 인구수와 기준연금액에 영향을 주는 물가상승률 등의 경제변수 가정을 꼽을 수 있다.

인구 구성요소는 기초연금 대상자의 규모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

8) 신경혜, 김형수. (2021). 기초연금 재정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요약 및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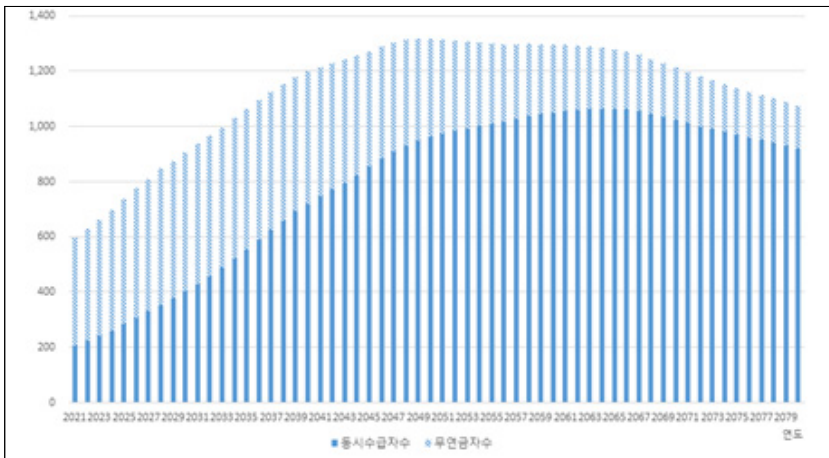
수 및 수급자 수의 구조도 변화시키게 되므로, 기초연금 대상자 중 동시 수급자의 규모도 변화하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법에서는 매년 물가상승률로 인상하는 것을 정하고 있으나, 5년마다 이루어지는 급여액 인상에 대한 중장기 연동 방식은 확정된 바 없다.

인구 및 경제변수 가정은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의 결과를 기본 시나리오로 적용하고 기초연금액을 현재 수준과 유사하게 A값의 12%로 인상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여 기초연금 재정을 전망하였다.

그 결과, 동시 수급자 수와 무연금자 수를 합한 전체 규모는 65세 이상 인구수의 70%이며, 기초연금 총소요액 중 동시 수급자의 총소요액은 점차 증가하여 장래에는 지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8] 기초연금 동시 수급자 수 및 무연금자 수 전망

(단위: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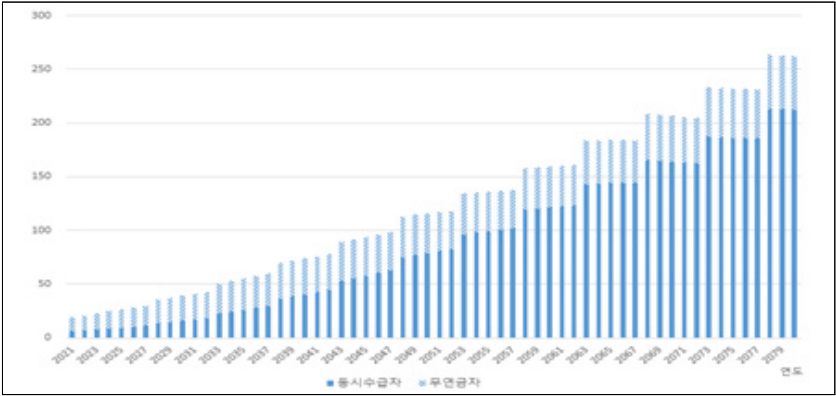


자료: 신경혜, 김형수(2021).

36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소득보장 전망 및 과제

[그림 2-9] 기초연금 지출 규모 전망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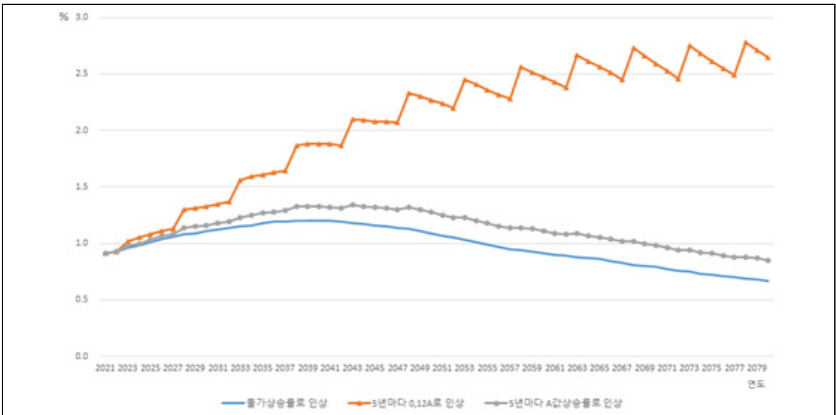


자료: 신경혜, 김형수(2021)

연동 방식에 따라 재정 소요액 전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5년마다 A값의 0.12배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2060년 GDP의 약 2.47%로 전망되고 물가상승률로 매년 인상한 경우는 GDP의 약 1.11% 수준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10] 기초연금 연동 방식별 지출 규모 전망 결과

(단위: GDP 대비 %)



자료: 신경혜, 김형수(2021).

제3절 퇴직연금

1. 제도 개요

퇴직연금은 1961년에 근로자의 퇴직 이후 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금제도를 법정 제도로 도입한 것이 그 전신이라 할 수 있다. 퇴직금제도는 1961년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제 적용하였으며, 1975년 16인 이상에서 1987년 10인 이상, 1989년 5인 이상, 2010년에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하는 일정 금액으로, 긴급한 생활자금 수요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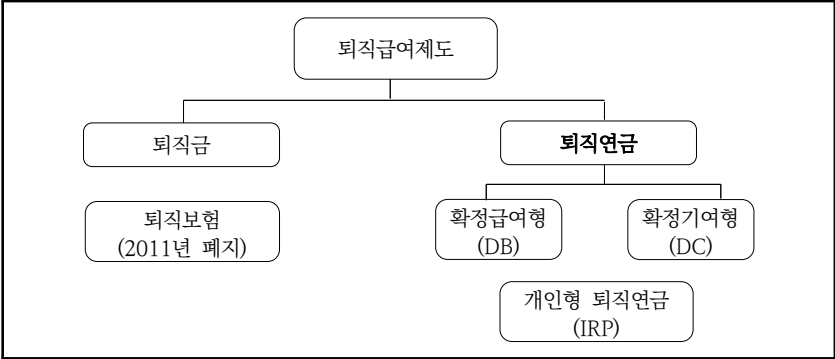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1961년에 근로자의 퇴직 이후 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금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퇴직금제도를 확대 개편한 퇴직급여 시행으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고령화 추세로 은퇴 이후의 생애가 길어짐에 따라 은퇴 이후 노후소득보장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노후 대비는 미흡하고,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과 퇴직금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을 은퇴 이전에 생활자금으로 소진하는 등 노후 재원으로 퇴직금을 활용하는 것이 미흡하고 연금지급 기능도 미비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라 기업 도산 시 근로자의 퇴직금 체불 문제가 지속되는 것도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개편하게 한 큰 요인이다.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제도를 개혁하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인하됨에 따라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의 보완이 필요했다.

2005년 12월, 급속한 고령화 등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근로자의 노후소득 재원 확충을 위해 퇴직금제도의 대체 제도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퇴직연금은 개별 사업장별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퇴직금제도 유지도 가능하다. 퇴직연금은 사용자(기업)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금융기관에 적립한 퇴직금 지급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의해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7년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까지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해져서 퇴직연금 가입 대상은 사실상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퇴직금과 동일,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가 확정된 제도로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며, 퇴직 시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 수준만큼의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DC)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 총액의 1/12로 확정된 제도로, 사용자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불입하고 근로자는 본인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 수령하는 금액은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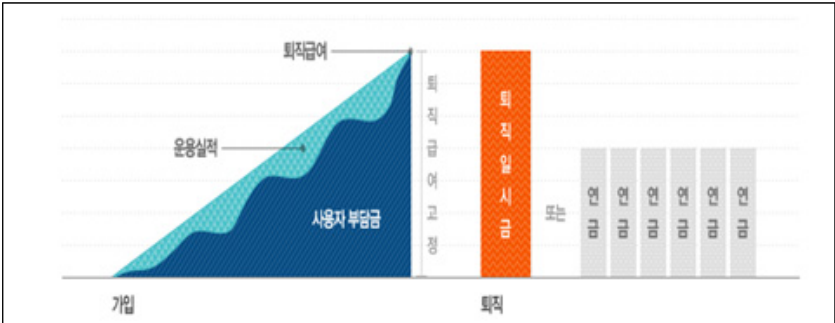
[그림 2-11] 퇴직급여제도 체계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확정급여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임금 총액의 1/12, 퇴직금과 동일 수준)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30일분 평균임금 × 근속 연수)가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가 퇴직급여의 지급 의무에 따라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된다. 사용자의 부담금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수익이 목표 수익보다 낮은 경우 사용자의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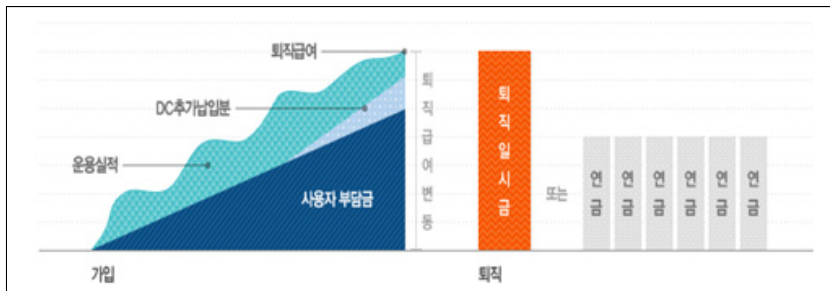
[그림 2-12] 확정급여 퇴직연금 운영방식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확정기여는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 수준(임금 총액의 1/12, 퇴직금과 동일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근로자의 개인별 계좌에 입금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용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 수준이 달라지게 된다. 기업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의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자산(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해주면 근로자는 그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 시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한다. 즉 투자 위험과 수익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 부담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13] 확정기여 퇴직연금 운영방식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은 근로자가 이직·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운영하여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IRP 계정으로 의무 이전이 가능하다.

IRP 가입자는 연금 수령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를 과세이연⁹⁾ 혜택을 받으며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

9) IRP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금 수급 시점까지 연기

다. IRP는 퇴직금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 적용 제외 근로자(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 등), 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 군인 등), 자영자 등 소득이 있는 경우 임의가입도 가능하다. 재직 중인 근로자가 DB/DC형 이외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로도 활용되고 있다.

[그림 2-14]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식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표 2-15〉 퇴직급여 유형 비교

구분	확정급여 (DB)	확정기여 (DC)	개인형 퇴직연금(IRP)	
			특례형 IRP	개인형 IRP
개념	- 퇴직 시 지급할 급여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근로자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	-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설정 ⇒ 퇴직 급여제도 설정한 것으로 인정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DC형 준용 - 근로자는 일정 연령에 달하면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	-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DB형 또는 DC형 가입자 추가 설정, 자영업자 등이 설정 - 설정자가 부담금을 납입하고 적립 운용 방법을 결정 - 퇴직일시금 수령자 가입 시 동 일시금에 대해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

42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소득보장 전망 및 과제

구분	확정급여 (DB)	확정기여 (DC)	개인형 퇴직연금(IRP)	
			특례형 IRP	개인형 IRP
기업 부담	- 산출기초율(운용 수익률, 승급률, 이직률 등)에 따라 부담금 변동 - 규정에서 정한 최소 수준 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 퇴직연금 사업자는 기업의 부담금이 최소 수준을 상회하는지 매년 재정 건전성 검증 실시	-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 비율로 확정 ※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 비율로 확정 -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 가입자의 부담금 납입 가능	- 없음
연금 수급 요건	- 연령: 55세 이상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연금 수급: 5년 이상			- 연령: 55세 이상 - 연금 수급: 5년 이상
일시금 수급 요건	-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 55세 이상으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제도 간 이전	- 어려움 (퇴직 시 IRP로 이전)	직장 이동 시 이전 용이	직장 이동 시 이전 용이	- 연금 이전 용이
적합한 기업·근로자	-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 연봉제 도입 기업 - 체불 위험이 있는 기업 - 직장 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	- 퇴직일시금 수령자 - DB형 또는 DC형 가입자 추가 설정 - 자영업자

자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2. 퇴직연금 도입 배경과 특징

가. 도입 배경

퇴직연금제도는 노령으로 인한 소득 감소·상실, 노인부양 의식의 약화 등에 따른 노후생활의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2005년 12월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에 의해 도입되었다. 기업(또는 근로자)이 근로

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현금 또는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였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용자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속연수 1년마다 1개월 치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하고 있다.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제도로 변천된 이유에는 퇴직금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에서 출발한다. 1953년부터 도입된 퇴직금 제도는 퇴직급여 수급권의 보장과 노후소득보장에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었다.

첫째, 수급권 보장 측면에서 보면, 퇴직금은 회사가 퇴직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였으므로 전적으로 회사의 존속 여부에 의존하였다. 즉,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퇴직 시 회사의 존폐는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었으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제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표 2-16〉은 기업의 소멸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소멸률은 2016년 기준 10.8%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인 사업장이 11.3%로 법인 사업장보다 소멸률이 높고, 종사자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소멸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소규모 개인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사외적립이 아닌 사내유보하게 될 경우 근로자 퇴직자산 수급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외적립하는 퇴직연금제의 도입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퇴직연금 도입 시점인 2005년 이전에는 기업 소멸률이 2016년의 상황보다 더 열악했을 것임은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표 2-16〉 종사자 규모별 조직형태별 기업 수 및 소멸률(2016년)

(단위: 천 개, %)

구분 종사자 규모	전체			법인			개인		
	활동	소멸	소멸률	활동	소멸	소멸률	활동	소멸	소멸률
전체	5,776	626	10.8%	585	40	6.8%	5,191	586	11.3%
5인 미만	5,254	611	11.6%	301	34	11.3%	4,953	577	11.6%
5~100인 미만	508	15	3.0%	271	6	2.2%	237	9	3.9%
100~300인 미만	11	0	1.5%	10	0	1.2%	1	0	4.3%
300인 이상	4	0	0.4%	3	0	0.4%	0	0	2.9%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18.12.10), 2017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 p. 48. 참고하여 재정리

둘째,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보면, 퇴직금은 일시불로 지급되는 방식
이어서 퇴직 후 종사돈이 되어 투자자금으로 활용되거나 노후생활 수단
이 아닌 다른 형태로(자녀 결혼 및 교육비 등)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특
히, 퇴직금으로 받은 목돈을 투자사기 혹은 잘못된 파생상품 등에 투자
하여 자신의 노후자산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사회문제화되었다. 이
러한 이유로 자산관리를 은행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맡기고 일시금
지불이 아닌 연금 지급 시스템으로 바꾼 퇴직연금에 대한 논의가 끊임 없
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¹⁰⁾ 한편, 1997년 헌법재판소가 근로기준법의 임
금채권(퇴직금 포함)의 최우선변제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로 판결함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보장이 취약해졌다. 정부가 이를 고려하여 200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퇴직금제도의 대안으로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추
진하게 된 것도 그 이유라고 하겠다.¹¹⁾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2003년 9월 고용부 입법예고, 2005년 1월 법
률 공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된 뒤, 2005년 8월, 9월에 각각 퇴직급여

10) 퇴직연금(나무위키) 참고
(<https://namu.wiki/w/%ED%87%B4%EC%A7%81%EC%97%B0%EA%B8%88>(2023.5.2. 인출)
11) 구인회, 이경희, 강성호, 우해봉, 남찬섭, 주은선 외 (2023). 포괄적 연금통계 작성방법
및 활용성 확대방안 연구. 퇴직연금 편 참고

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2005년 11월 퇴직연금 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제정을 거쳐 2005년 12월에 시행되었다.

퇴직연금제도로 전환된 이후 2010년 12월에는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모든 사업장의 임금근로자를 포괄하였다(퇴직금, 퇴직연금 모두 적용).¹²⁾ 한편, 이러한 대상자 확대는 임금근로자를 넘어 소득활동자 모두에게 확대되게 되는데, 2017년 7월 이후 자영업자, 공무원 등 모든 소득활동자도 개인형 IRP(소위 적립 IRP¹³⁾)에 포함함으로써 퇴직급여 비적용자에게도 적용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현재 비경활자만을 제외하면 모두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퇴직급여 비적용자는 본인 기여로 가입할 수 있고 그 본인 부담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표 2-17〉 퇴직연금 IRP 가입범위 확대

구분	2017년 7월 이전	2017년 7월 이후(추가 대상)
대상자	퇴직(일시)금 수령한 퇴직근로자 퇴직연금제도(DB, DC)에 가입한 재직근로자	• 자영업자 •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 • 직역연금 가입자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적용 대상자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7.04.11), 7월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가능

12)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적용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0.12.1.~2012년 12월까지의 법정 퇴직금의 50%만 지급 가능, 2013년 이후 발생한 법정 퇴직금의 100% 지급(<https://seeyoulabor.tistory.com/2>)

13) IRP의 유형은 '퇴직연금제도의 특성'에서 설명

〈표 2-18〉 퇴직(연)금제도 연혁

구분	내용
퇴직금	1953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거 퇴직금제도 도입(임의제도) 1961년 30인 이상 사업장 퇴직금제도 강제적용(퇴직금제도 도입) 1975년 16인 이상 사업장으로 범위 확대 1987년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범위 확대 1989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범위 확대 1996년 퇴직보험 및 신탁제도 도입(효력 만료 시점: 2010.12.31) 1997년 퇴직금 중간정산 도입
퇴직급여 (퇴직연금 포함)	2003.9.24. 고용부 입법예고 2004.12.2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05.1.27. 법률 공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법률 제7379호) 2005.6.29. 퇴직급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5.8.19.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정 2005.9.22. 퇴직급여법 시행규칙 제정 2005.11.3. 퇴직연금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제정 2005.12.1. 퇴직연금제도 시행 2010.12.1.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퇴직금, 퇴직연금 모두 적용) ¹⁴⁾ 2011.6.30. 퇴직급여법 개정안 국회 의결 2012.7.26. 퇴직급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시행 2012.7.27. 퇴직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012.12.5. 퇴직연금 감독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2013.9.17.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 및 시행 2014.9.3.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시행 2014.10.1) 2014.12.2.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시행 2015.7.1) 2015.3.2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 2015.5.1.) 2017.4.1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시행 2017.7.26.) 2017.7.2. 자영업자, 공무원, 프리랜스 등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IRP가입 허용 2017.12.1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시행 2018.1.1.) 2022.7.12. 사전지정운영제도 도입(본격 시행 2023.7.12.)

자료: <http://pension.fss.or.kr/fss/psn/intro/overview/lavor.jsp>;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종합 안내.

나. 퇴직연금제도의 특성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구분하는 주요 특징은 퇴직 적립금을 사내에 적립하느냐, 사외에 적립하느냐의 차이이다. 퇴직연금은 적립금을 사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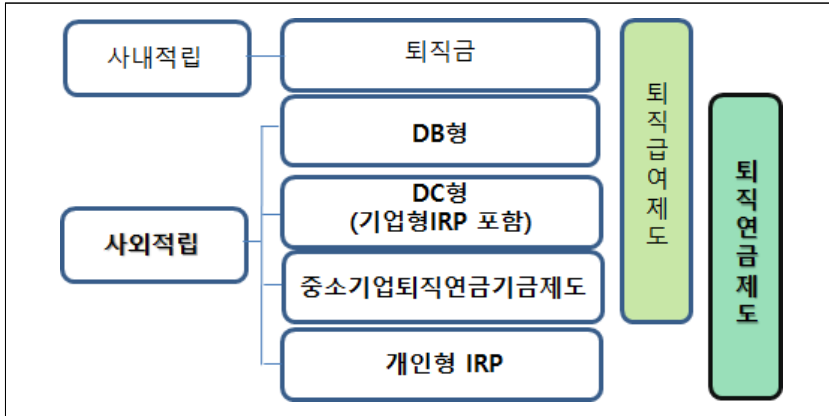
14)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적용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0.12.1.~2012년 12월까지의 법정퇴직금의 50%만 지급 가능, 2013년 이후 발생한 법정퇴직금의 100% 지급(<https://seeyoulabor.tistory.com/2>)

적립하나, 퇴직금은 사내에 유보된다는 점에서 두 제도 간에 차이가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퇴직금제도는 그 적립금이 사내유보된다는 것 외에 DB형 퇴직연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또한 퇴직연금제도가 퇴직금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고 노사 자율에 의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¹⁵⁾ 오히려 이러한 제도적 특성이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은 임금상승률에 의해 퇴직급여가 결정되고, DC형 퇴직연금은 금융시장에서 투자수익률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그동안 저금리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퇴직금에 비해 DC형 퇴직연금이 동일 조건에서 적립자산이 적다는 점이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기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림 2-15]에서는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 및 퇴직연금제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의하면 적립 형태가 사내나 사외냐에 따라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퇴직연금에는 DB형, DC형(기업형 IRP 포함),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이하 ‘중퇴기금’), 개인형 IRP로 구분된다.

15) 신규 사업장에 대해 1년 이내 퇴직연금 설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퇴직급여법 제5조) 퇴직급여 미설정 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함(퇴직급여법 제11조: 퇴직급여 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그림 2-15] 퇴직급여제도 및 퇴직연금제도의 관계



자료: 퇴직급여법 제2조 정의를 참고하여 정리

DB형(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은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퇴직 시점 평균임금 × 근속연수)되는 제도이며, DC형(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은 일정 시점(예, 매분기 혹은 매년 말)에 연간 임금 총액의 1/12(8.3%)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점까지 운용하는 제도이다. IRP 특례형은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특례 제도로, 근로자 개인별로 IRP를 설정하고 사용자가 기여금을 해당 계좌에 납입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DC형과 동일하다.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령할 퇴직금을 전달받아 은퇴 시점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통산장치 계좌이다. 특징적인 것은 개인형 IRP에는 이직 시 퇴직급여의 통산장치 기능과 본인 기여에 의해 저축처럼 관리하는 기능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전자는 흔히 퇴직 IRP, 후자는 적립 IRP라 불린다.

〈표 2-19〉 IRP 유형

구분	개인형 IRP		기업형 IRP(특례 IRP)
	퇴직 IRP	적립 IRP	
정의	퇴직 일시금 수령자가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기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추가 설정하기 위해 가입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IRP를 설정하는 경우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
주요 내용	일시금을 통산하여 근로자의 은퇴 시까지 적립을 유지하기 위함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 원 (연금저축 포함)	적립금 운용 및 급여 등은 DC 제도와 동일
	- 운용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연금지급 시 연금소득세 과세 - 일시금 지급 시에는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과세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퇴직연금규약 노동부 신고 면제 - 가입자별 계약 체결 및 통장 신규(1인 1통장)

중퇴기금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인데, 중소기업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적립한 부담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 방식이다. 그 운용방식은 국민연금과 유사하나 완전적립형으로 운영되는 특징이 있다.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금형으로 운영되며 사용자 부담금의 10%¹⁶⁾를 지원한다.

이러한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퇴직급여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 부담분으로 운영되는 부분을 의미하며, 흔히 연간 임금 총액의 1/12(8.3%) 이상을 부담하는 퇴직자산이 해당된다. 이러한 사용자 부담분은 퇴직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중 DB형, DC형(기업형 IRP 포함), 중퇴기금에도 포함되어 있어 이들 제도는 모두 퇴직급여제도로 분류된다. 한편,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과 같이 사내적립이 아닌 사외적립하는 모든 형태의 퇴직급여와 본인 기여 퇴직연금을 포괄한다.

그 외 퇴직연금 자산을 활용한 대출, 연금 수령 조건, 과세체계 등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16) 3년 동안 상시 30명 이하 사업의 최저임금 120% 이하(고용보험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1명당 23만 원, 사업별 최대 30명까지 지원(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소개(comwel.or.kr) 참고)

〈표 2-20〉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 비교

구분	형태	퇴직금	퇴직연금			
			DB	DC	기업형 IRP	개인형 IRP
보험료 납부기준	사용자 부담(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연간 한도 1,800만 원 ¹⁷⁾ (연금저축 포함)
담보대출, 중도인출	중간 정산	담보대출(적립금의 50%)만 가능(단, 주택 구입, 장기요양비용, 파산, 천재지변 등 ¹⁸⁾)	• 담보대출(적립금의 50%, 단서는 DB와 동일) • 7중도인출 가능			
연금지급 조건	퇴직 시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지급기간 5년 이상 ¹⁹⁾			좌동 단, 가입기간 조건은 없음	
급여 수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 회사 연간 부담금 + 운용수익		
지급방법	일시금	일시금, 연금 선택				
적립방법	사내 적립	사외 (2021년 이후 100%)		사외(100%)		퇴직일시금, 추가납입금 (회사와 무관)
적립금 운용주체	-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 자영업자 ²⁰⁾ 등
과세체계		퇴직연금계좌 대상 아님		• 사용자 부담액은 연금 소득 시 분리과세(종합소득과세 대상 아님). • 추가 납입액은 퇴직연금 계좌로 관리(연금소득은 종합소득과세)		퇴직연금계좌로 관리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과세 혹은 분리소득과세)
관련 조항	근로기준법 제28	퇴직급여법 제17조 등		퇴직급여법 제19조 등	퇴직급여법 제25조 등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8조 등
도입 시기	1953년	2005년 12월			-	2012년 7월

주: 과세체계는 '연금세제' 참조

자료: 퇴직연금 종합안내/제도종류: NABO 산업동향 & 이슈, 2018년 2월호 통권 제5호

1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부한도)

18) 퇴직급여법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DC형의 중도인출 사유와 동일함

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연금저축이 5년 가입, 10년 수급조건인 것과 반대임)

20) 2017년 7월 26일 이후 자영업자, 공무원에게도 가입 허용

담보대출은 일정 조건하에서 퇴직연금에서 적립금의 50%까지 가능하나, 퇴직금은 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중도인출의 경우 퇴직금은 중간정산이라는 형태로 지급될 수 있으며, 퇴직연금 중에서는 DC형(기업형 IRP 포함)만 허용된다. 일반적으로 중도인출할 수 있는 조건은 주택 구입, 장기요양비용, 파산, 천재지변 등으로 제한되고 있다.²¹⁾ 한편, DB형에서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제도 특성상 DB형은 퇴직 시점까지 해당 재원이 사용자 책임하에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연금 수령 조건으로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 일시금과 연금 형태의 수령을 선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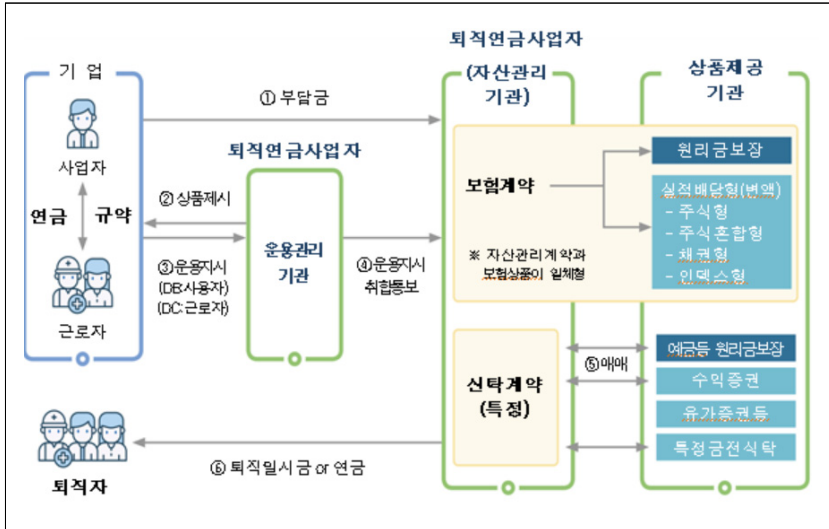
개인형 IRP는 이직 시 퇴직급여 수령분인 퇴직 IRP와 순수 본인 기여분인 적립 IRP로 구분되는데 후자는 연간 한도 1,800만 원²²⁾(연금저축 포함)까지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연금 수령기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퇴직 IRP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30%(10년 이상 연금 수령 시 40%)를 감면받으며, 적립 IRP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 3.3~5.5%를 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가진 퇴직연금은 납부액에 대해서만 강제적으로 적용되고 기금운용, 지급 절차 등 대부분은 시장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시장의 주체는 근로자, 사용자, 퇴직연금 사업자로 구성된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퇴직연금 운용관리,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무 건전성,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된다.

2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DC형의 중도인출 사유와 동일함

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부한도)

[그림 2-16]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2.4.17.). 2021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3. 운영 현황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에 도입되었지만, 도입 이후 관련 통계 현황은 주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나 수익률 등에 관한 자료들이어서 미비한 부분이 많았다. 이는 퇴직연금제도가 가입에서 수급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에 걸치는 장기간의 경험이 누적되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여전히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보다는 하나의 금융상품 또는 예전의 퇴직금 제도의 성격이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2016년 말부터는 자산운용 부분 이외에 퇴직연금 가입에 관계된 정보들이 통계청을 통해서 매년 발표되고 있다.²³⁾

23) 이는 2014년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으로 인하여 퇴직연금제도가 의무화되기 시작한 영향 또는 관련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측된다(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2014. 8.27)).

2022년 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619만 명이며, 전체 상용근로자(1,157만 명²⁴⁾) 대비 퇴직연금 가입률은 약 53.5% 수준이다. 2010년부터 전체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전체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다. 2012년부터 신설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금제도가 아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4,977천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5,000천 명을 넘어섰고 2018년에는 6,000천 명을 넘어서서 2021년에는 6,368천 명 수준이다.

퇴직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 대비 가입자 수를 나타내는 가입률은 2015년 48.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50%를 넘어서서 2021년에는 53.3%로 나타난다.

24) 고용노동통계조사 홈페이지, 2014년 사업체 노동실태현황 기준, http://laborstat.moel.go.kr/hmp/tblInfo/TblInfoList.do?menuId=0010001100101104&leftMenuId=0010001100101vwCdVal=MT_ZTITLE&upListVal=118_901 에서 2023. 8.2 인출.

54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소득보장 전망 및 과제

〈표 2-21〉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수 추이

(단위: 명, %)

연도		가입 대상 근로자 수	가입 근로자 수	가입률
전체	2015	10,336,230	4,977,407	48.2
	2016	10,588,453	5,221,202	49.3
	2017	10,830,161	5,437,938	50.2
	2018	10,937,712	5,612,103	51.3
	2019	11,508,858	5,929,473	51.5
	2020	11,865,340	6,219,497	52.4
	2021	11,956,524	6,367,827	53.3
남	2015	6,305,675	3,168,336	50.2
	2016	6,439,963	3,291,612	51.1
	2017	6,604,012	3,387,094	51.3
	2018	6,602,501	3,447,055	52.2
	2019	6,900,279	3,595,029	52.1
	2020	7,032,549	3,729,534	53.0
	2021	7,034,691	3,790,163	53.9
여	2015	4,117,056	1,809,071	44.9
	2016	4,148,490	1,929,590	46.5
	2017	4,226,149	2,050,844	48.5
	2018	4,335,211	2,165,048	49.9
	2019	4,608,579	2,334,444	50.7
	2020	4,832,791	2,489,963	51.5
	2021	4,921,833	2,577,664	52.4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퇴직연금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RP101&vw_cd=MT_ZTITLE&list_id=D3_RP_002&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6.10. 인출.

〈표 2-22〉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수 추이

(단위: 천 명, %)

연도	가입 대상 근로자 수(가)	가입 근로자 수(나)	가입률 (나/가)
2015	10,336	4,977	48.2
2016	10,588	5,221	49.3
2017	10,830	5,438	50.2
2018	10,938	6,108	51.3
2019	11,509	5,929	51.5
2020	11,865	6,219	52.4
2021	11,957	6,368	53.3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퇴직연금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RP101&vw_cd=MT_ZTITLE&list_id=D3_RP_002&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6.10. 인출

사업장 단위로 퇴직연금 도입률을 살펴보면, 2021년 말 사업장 기준 도입률은 27.1%로, 퇴직연금 도입 대상 사업장(1,531천 개소) 중 415천 개소가 도입하고 있다. 2019년 기준 도입률은 27.5%으로 이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표 2-23〉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수 추이

(단위: 개소, %)

연도	전체 도입 사업장 수	도입 대상 사업장 수		
			도입 사업장 수	도입률
2017	354,018	1,259,585	343,134	27.2
2018	378,430	1,334,138	363,644	27.3
2019	396,539	1,402,583	385,073	27.5
2020	408,462	1,464,143	398,587	27.2
2021	424,950	1,530,363	414,565	27.1

자료: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행정통계과. (2022.12.19.). 2021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60800&bid=11816&act=view&list_no=422391 에서 2023.6.10. 인출.

전체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가운데 확정급여형(D형)을 선택한 비중은 2017년 53.4%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9년에는 50%를 밑돌았고 2021년에는 45.7%로 나타난다. 확정기여형(DC)은 2017년 43.8%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0년에는 50%를 넘어서서 2021년 51.8% 수준이다.

〈표 2-24〉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가입 근로자 수 추이

(단위: 천 명, %)

연도	전체 가입 근로자 수	제도 유형별			
		DB	DC	IRP 특례	병행
2017	5,797 (100.0)	3,096 (53.4)	2,540 (43.8)	66 (1.1)	94 (1.6)
2018	6,105 (100.0)	3,053 (50.0)	2,867 (47.0)	66 (1.1)	119 (1.9)
2019	6,371 (100.0)	3,077 (48.3)	3,117 (48.9)	66 (1.0)	113 (1.8)
2020	6,648 (100.0)	3,133 (45.7)	3,340 (51.6)	64 (0.9)	111 (1.7)
2021	6,837 (100.0)	3,128 (45.7)	3,529 (51.6)	64 (0.9)	117 (1.7)

주: 1) ()는 전체 대비 비중

2) 병행형은 근로자가 2 종류 이상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를 뜻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퇴직연금통계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p. 10.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7/index.board 에서 2023.6.10. 인출.

퇴직급여의 수급과 관계된 현황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계좌 수 기준 연금 수령 비중은 2016년 1.6%에서 2022년 7.1%로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금액 기준으로도 연금 수령 비중이 2016년 20.3%에서 2022년 67.4%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25〉 퇴직급여제도 유형별 수급 추이

(단위: 계좌, 억 원, %)

연도	연금 수령		일시금 수령		합 계	
	계좌 수	금액	계좌 수	금액	계좌 수	금액
2016	3,766 (1.6)	11,701 (20.3)	236,952 (98.4)	45,916 (79.7)	240,718 (100.0)	57,617 (100.0)
2017	4,672 (1.9)	10,756 (21.6)	236,783 (98.1)	39,039 (78.4)	241,455 (100.0)	49,795 (100.0)
2018	6,145 (2.1)	12,643 (21.4)	290,227 (97.9)	46,359 (78.6)	296,372 (100.0)	59,002 (100.0)
2019	8,455 (2.7)	18,047 (26.3)	309,727 (97.3)	50,641 (73.7)	318,182 (100.0)	68,688 (100.0)
2020	12,404 (3.3)	23,565 (28.4)	361,953 (96.7)	59,483 (71.6)	374,357 (100.0)	83,048 (100.0)
2021	16,984 (4.3)	32,028 (34.3)	380,286 (95.7)	61,398 (65.7)	397,270 (100.0)	93,426 (100.0)
2022	32,566 (7.1)	50,639 (32.6)	424,902 (92.9)	104,474 (67.4)	457,468 (100.0)	155,113 (100.0)

주: ()은 비중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각 연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 현황 통계.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고, 운용 및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면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 및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의 운용 지시를 받아 적립금을 운영한다.

적립금 납부는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다른데,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사용자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기준책임준비금의 최소 적립 비율(80%) 이상 적립할 의무가 있다.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 계정에 정기적으로 납부한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위험자산 투자는 적립금의 70%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퇴직연금 적립금은 2015년 말 126조 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9년에는 200조 원을 넘어섰고 2020년 말에는

255조 원 수준이다. 2021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295조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5.5% 증가하였고, 2022년 말 약 334조 원으로 계속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²⁵⁾

2021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영방식별로 살펴보면 확정급여형(DB)이 58%로 비중이 가장 높고, 확정기여형(DC)이 25.6%, IRP는 각각 개인형 IRP 16%, 기업형 IRP 0.4%이다.

〈표 2-26〉 퇴직연금 적립금액 추이

(단위: 조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확정급여형 (DB)		86.3	99.6	110.9	121.2	138.0	153.8	170.1
확정기여형 (DC)		28.4	34.2	41.4	48.7	56.8	65.1	75.3
IRP	개인형	10.9	12.4	15.3	19.2	25.4	35.0	47.2
	기업형 (특례)	0.7	0.8	0.9	0.9	1.0	1.0	1.0
합계		126.3	147.0	168.5	190.0	221.2	255.0	294.6

자료: 통계청. (각 연도). 퇴직연금통계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p. 10.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7/index.board (2023.6.10. 인출)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현황과 퇴직급여 수급에 관계된 현황은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운용수익률과 관련하여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수익률은 최저 0.02%에서 최고 2.58%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수준²⁶⁾에 비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다. 제도 유형별로 DB형 제도는 1.46~1.91%, DC형 제도는 -1.21~3.47%, IRP형 제도는 -3.14~3.84%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제도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 차창희(2023.6.1.) 매일경제. ‘퇴직연금 통해 RP·MMF 100% 투자 가능해진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750168>에서 2023.6.10. 인출.

26) 2016~2022년간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4.8%, 7.3%, -0.9%, 11.3%, 9.7%, 10.8%, -8.2% 나타냈음.

〈표 2-27〉 퇴직연금 적립금 제도 유형별 운용수익률 추이

(단위: %)

연도	전체	DB	DC	IRP
2016	1.09	1.58	1.68	1.45
2017	2.21	1.88	1.59	2.54
2018	1.01	1.46	0.44	-0.39
2019	2.25	1.86	2.83	2.99
2020	2.58	1.91	3.47	3.84
2021	2.00	1.52	2.49	3.00
2022	0.02	1.51	-1.21	-3.14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각 연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 현황 통계.

〈표 2-28〉 퇴직연금 적립금 제도 유형별 운용방법별 장기수익률 추이

(단위: %, %p)

연도	구분	구 분	DB	DC기업형 IRP	개인형 IRP	전체
2016	전체	5년	2.77	3.06	2.64	2.83
		8년	3.55	4.04	3.68	3.68
	원리금 보장형	5년	2.76	3.05	2.67	2.82
		8년	3.46	3.54	3.45	3.48
	실적 배당형	5년	3.12	3.07	2.93	3.05
		8년	6.15	5.58	5.19	5.61
2017	전체	5년	2.39	2.31	2.67	2.27
		9년	3.29	3.20	3.53	3.18
	원리금 보장형	5년	2.36	2.29	2.62	2.20
		9년	3.18	3.15	3.27	3.08
	실적 배당형	5년	2.93	3.01	2.98	2.74
		9년	4.74	5.53	4.57	4.28
2018	전체	5년	1.91	1.97	1.46	1.88
		10년	3.11	3.53	3.09	3.22
	원리금 보장형	5년	1.90	2.14	1.67	1.94
		10년	3.04	3.17	2.97	3.07
	실적 배당형	5년	2.24	1.24	0.95	1.48
		10년	5.58	4.55	4.27	4.80

60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소득보장 전망 및 과제

연도	구분	구 분	DB	DC기업형 IRP	개인형 IRP	전체
2019	전체	5년	1.75	1.92	1.51	1.76
		10년	2.75	3.00	2.75	2.81
	원리금 보장형	5년	1.72	1.92	1.45	1.74
		10년	2.72	2.88	2.66	2.75
	실적 배당형	5년	2.54	2.08	1.78	2.15
		10년	3.62	3.50	3.51	3.54
2020	전체	5년	1.70	2.14	1.92	1.85
		10년	2.48	2.76	2.55	2.56
	원리금 보장형	5년	1.64	1.78	1.32	1.64
		10년	2.45	2.63	2.26	2.47
	실적 배당형	5년	2.96	4.17	3.89	3.77
		10년	2.81	3.59	3.43	3.34
2021	전체	5년	1.67	2.37	2.36	1.96
		10년	2.22	2.73	2.49	2.39
	원리금 보장형	5년	1.64	1.50	1.52	1.59
		10년	2.18	2.35	1.93	2.19
	실적 배당형	5년	3.33	5.79	5.51	5.18
		10년	3.27	4.40	4.20	4.09
2022	전체	5년	1.63	1.52	1.13	1.51
		10년	1.96	2.05	1.67	1.93
	원리금 보장형	5년	1.65	1.71	1.35	1.62
		10년	1.95	2.11	1.69	1.95
	실적 배당형	5년	1.32	0.55	0.53	0.70
		10년	2.16	1.75	1.62	1.78

주: 해당 연도 기준 과거 5년, 10년 동안의 수수료 차감 후 연환산 수익률이며, 원리금 보장형에는 대기성 자금 포함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6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8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4.26.). 2018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통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 퇴직연금감독팀 (2021. 4. 5.), 2020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6240&menuNo=200218>에서 2023.5.2. 인출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4.17.). 2021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통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근로조건개선(moel.go.kr)/2022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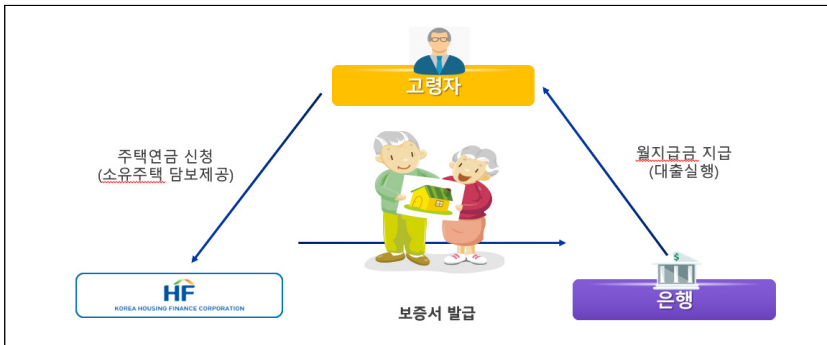
제4절 주택연금

1. 제도 개요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시가 16~17억 원 수준)의 주택을 소유한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종신 까지 노후생활자금과 거주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적 역모기제도이다.

구체적인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살펴보면, 연령은 부부 중 만 55세 이상이면 되고, 가입 대상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 다가구주택)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 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또한, 다(多) 주택자라도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고 12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처분을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고령층은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가입신청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은행에 제출하면 해당 은행 계좌를 통해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림 2-17] 주택연금 운영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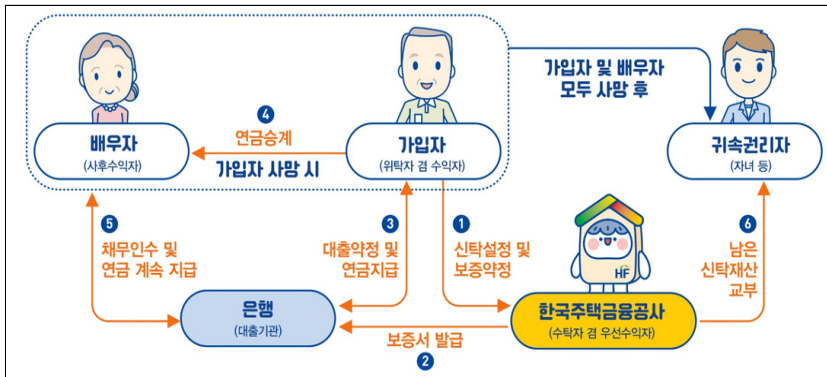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가입자는 담보 설정 방식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 주택연금의 담보 설정 방식은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이 있으며 가입 이후에도 담보 설정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먼저, 저당권 방식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주택 소유권을 유지하고 주택금융공사가 담보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근저당 설정 금액은 부부 중 연소자 연령 100세의 말 일 기준 예상 주택가격과 예상 대출잔액의 120%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주택연금 가입자는 근저당권 설정 시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참고로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은 법무사 수수료,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인지세 등이 있으며 단독주택의 경우 감정평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신탁 방식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소유 주택을 주택금융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주택금융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방식이다.

[그림 2-18] 신탁 방식 주택연금 운영구조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탁 방식은 주택 소유권이 주택금융공사로 이전되므로 근저당권 방식에 비해 다음의 3가지 주요한 장점이 존재한다.

첫째,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의 동의 없이도 배우자에게 안정적으로 연금 승계가 가능하다. 저당권 방식에서는 주택 소유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급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할뿐만 아니라 채무인수 및 소유권 이전 절차를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신탁 방식에서는 자녀의 동의 및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둘째, 유희공간 발생 시 전세 또는 보증금 있는 월세 계약이 가능하다. 기존 저당권 방식에서는 보증금 없는 월세만을 허용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추가로 임대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또한, 전월세 보증금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임대계약 종료 시 보증금 운용 수익을 추가로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의 가입 시 초기비용을 줄일 수 있어 초기 가입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주택연금 가입을 기피하는 고령층의 가입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참고로 저당권 방식하에서 초기비용은 근저당권 설정비용(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법무사 수수료, 대출약정 인지세 등으로 구성된다.

신탁 방식은 가입자뿐만 아니라 운용기관 측면에서도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계약 종료 시 담보주택을 처분할 때 경매가 아닌 공매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어서 경매 지연에 따른 시간 및 금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주택매매·임대시장의 상황에 따라 가입자의 담보주택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을 요약·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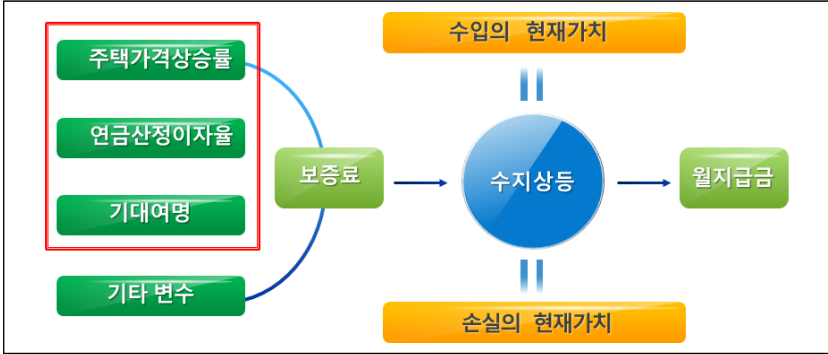
〈표 2-29〉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의 비교

구분		저당권 방식	신탁 방식
담보권 설정 방식		근저당권	신탁등기 (주택금융공사로 소유권 이전)
유희공간 임대차 설정 여부		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	보증금 있는 임대계약이 가능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불가능	가능
가입자 비용	담보 설정 비용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	약 34만 원(70세, 3억 원 기준)	7천 원
		약 69만 원(70세, 6억 원 기준)	
		약 103만 원(70세, 9억 원 기준)	
	배우자 승계 비용	약 61만 원(공시가격 3억 원 기준)	-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의 월지급금 승계 절차		자녀 동의→ 배우자에게 주택 소유권 이전→ 월지급금 승계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월지급금 승계
채권실행 방법		법원경매	공매(public sale)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 이후 수령하게 될 월지급금은 매년 주요 변수(주택가격 상승률, 연금산정 이자율, 생존확률) 가정을 적용하여 연령(연소자 기준) 및 주택가격별 수지상등한 월지급금을 산정한다. 여기서 수지상등이란 계약 종료 시점의 대위변제 손실액[계약 종료 시 연금 수령 총액(① 월지급금 누계 + ② 수시인출금 + ③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 (①, ②, ③)에 대한 대출이자율 의미)의 담보주택가격 초과분]의 현재가치와 보증료 수입의 현재가치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19]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구조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가입자의 연금 수령 총액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먼저 월지급금은 연령과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높게 산정되는 구조로서 연령은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독신의 경우도 부부 연령차 4세를 가정하여 연소자 연령을 적용한다. 여기서 월지급금 적용 시 주택가격은 시가 기준이며 다음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평가한다.

- ①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시세
- ② KB 국민은행 시세
- ③ 국토교통부 공시가격(공시가격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 ④ 감정평가 가격(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연소자 연령이 70세에 5억 원 주택 소유자의 경우 매월 약 15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표 2-30〉 연령 및 주택가격별 월지급금(종신정액형, 2023년 기준)

(단위: 천 원)

연령 (연소자 기준)	주택가격											
	1억 원	2억 원	3억 원	4억 원	5억 원	6억 원	7억 원	8억 원	9억 원	10억 원	11억 원	12억 원
50세	112	225	338	451	564	677	790	903	1,016	1,129	1,242	1,355
55세	151	302	453	604	756	907	1,058	1,209	1,360	1,512	1,663	1,814
60세	204	409	614	819	1,023	1,228	1,433	1,638	1,843	2,047	2,252	2,457
65세	246	492	739	985	1,232	1,478	1,724	1,971	2,217	2,464	2,615	2,615
70세	300	601	901	1,202	1,503	1,803	2,104	2,405	2,705	2,763	2,763	2,763
75세	373	746	1,120	1,493	1,867	2,240	2,613	2,977	2,977	2,977	2,977	2,977
80세	476	951	1,427	1,903	2,379	2,855	3,310	3,310	3,310	3,310	3,310	3,310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지급금의 지급기간은 기본적으로 종신 방식과 확정기간 방식으로 구분된다. 종신 방식에는 일반 주택연금,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이 있다. 일반 주택연금은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이 아니거나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입자가 월지급금을 종신까지 수령하는 상품이다.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은 대출한도의 50~90%의 수시인출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한도에 대해 종신까지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취약 고령층(부부 기준 시가 2억 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을 대상으로 일반 주택연금에 비해 월지급금을 최대 20% 높게 수령하는 상품이다.

상기 3가지 상품은 지급방식, 인출한도, 보증료율 등에서 일반 주택연금 상품과 다소 차이가 있다.

〈표 2-31〉 주택연금 상품 비교

구분	일반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요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1주택자 또는 합산가격 12억 원 이하 다주택자		부부 중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인 2억 원 미만 주택 소유자
지급 방식	종신지급/종신흡합/확정기간 혼합 방식	대출상환 방식	우대지급/ 우대혼합 방식
지급 유형	정액형/전후후박형 (지급유형 변경 가능)	정액형만 가능	
수시 인출 한도	대출한도의 50% 이내 수시인출	대출한도의 50% 초과~90% 이내 일시인출	대출한도의 45% 이내 수시인출
보증료율	초기보증료 1.5% 연보증료 0.75%	초기보증료 1.0% 연보증료 1.0%	초기보증료 1.5% 연보증료 0.75%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반면, 확정기간 방식은 가입연령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월지급금 지급 종료 후에도 평생 거주가 가능하다. 확정기간 방식은 가입연령(부부 중 연소자 기준)별 월지급금 수령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연소자 기준 75세 이상은 확정기간 방식을 선택할 수 없다.

〈표 2-32〉 주택연금 확정기간형의 가입연령별 수령기간

연령(연소자 기준)	55~57세	55~63세	55~68세	60~74세	65~74세
수령기간	30년	25년	20년	15년	10년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종신 방식과 확정기간 방식은 의료비, 주택유지수선 등 은퇴 후 목돈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대출한도(장래 월지급금의 현금 흐름을 연 보증료율과 연금산정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금액)의 일정 비율(50% 이하, 단 확정기간 방식은 5%를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함) 이내에서 수시 인출할 수 있고 나머지는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혼합 방식 옵션도 존재한다.

〈표 2-33〉 주택연금 종신 방식의 수시인출금 사용용도

구분	일반 용도	대출상환 용도
용도 내용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관혼상제비 등 일반적인 노후생활자금 * 이용 불가능한 용도 도박, 투기 등 사행성 및 사치오락성 지출 자 금, 주택 구입 및 임차 자금 등	선순위채권 상환자금 저당권 담보부 대출금, 대여금 등 전세권 설정한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금 국세채납 등에 의한 압류 채권, 가압류 채권 및 처분 채권
사용 한도	대출한도의 50%(종신훈합 방식), 45%(우대혼합 방식) 이내 ※ 단, 신탁 방식 주택연금으로 종신훈합 방식을 선택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목적으로 90%까지 설정 가능(최초 가입시점에서만 설정 가능)	
지출 대상	소유자, 배우자, 소유자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과 형제자매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는 채권
신청 시기	실제 지출일로부터 1년 전후	주택연금 신청 시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표 2-34〉 주택연금 확정기간 방식의 수시인출금 사용용도

구분	일반 용도(대출상환 용도 포함)	의무설정액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용도
용도 내용	종신 방식과 동일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사용 한도	대출한도의 45% 이내	대출한도의 5% 해당액
지출 대상	종신 방식과 동일	의료비, 주택유지·수선비
신청 시기	종신 방식과 동일	월지급금 지급기간 종료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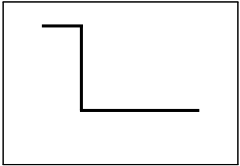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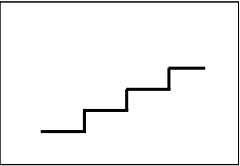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가입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종신 방식, 종신훈합 방식, 확정기간혼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택연금 이용 도중 지급방식의 변경은 아래와 같다.

- 종신지급과 종신훈합 간 변경
- 우대지급과 우대혼합 간 변경
- 우대형 전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종신지급(혼합) 방식에서 우대 지급(혼합) 방식으로 변경

월지급금의 지급방식은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으로 구분된다. 정액형은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여 확정기간 또는 종신까지 지급받는 방식이다. 초기증액형은 초기 3년·5년·7년·10년 중 선택한 기간은 정액형 대비 높은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대신 선택기간 경과 후 기간부터는 정액형 대비 70% 수준의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정기증가형은 초기에는 정액형 대비 적게 월지급금을 수령하나 3년마다 4.5%만큼 증가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표 2-35〉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방식

구분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연금 수령 방식	평생 동일한 금액을 수령	가입 초기 일정 기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수령	3년마다 4.5%만큼 증가한 금액을 수령
연금 수령 형태			
예상 수요 층	종신까지 안정적으로 동일한 월지급금을 받고 싶은 가입자	공적연금 수급이 개시되지 않았거나 자녀결혼·의료비 등 가입 초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생활비가 필요한 가입자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을 보완하여 실질 노후소득의 가치를 유지하고 싶은 가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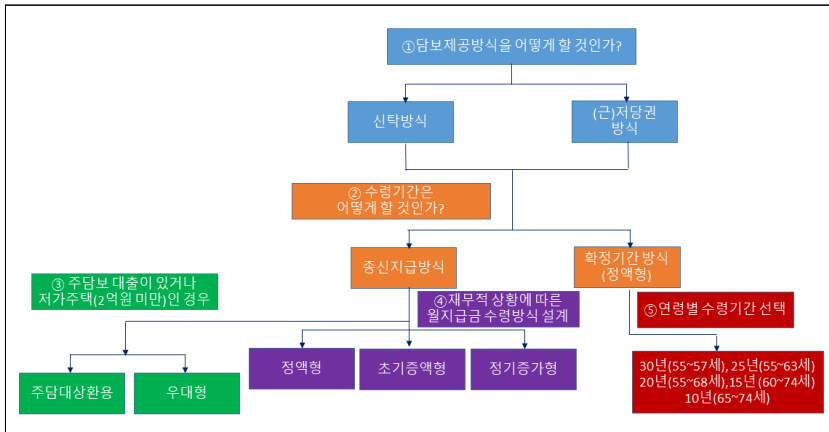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다음으로 보증료는 월지급금 보장 및 장래 대위변제 손실액 충당을 위한 재원으로서 가입비 성격의 초기보증료(가입 시 주택가격의 1.5%)와 연 보증료(연금 수령 총액의 연 0.75%)로 구성된다. 다만, 초기보증료는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자 비용은 일정 주기별 변동금리에 의해 결정된다. 주택연금에 적용되는 금리는 가입 시점에 ‘CD금리(3개월마다 변동) + 1.1%’ 또는 신규취급액 COFIX(6개월마다 변동) + 0.85%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자 비용과

보증료는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지 않고 대출잔액에 자동 계상되어 계약 종료 시점에 정산한다(단, 초기보증료는 3년 이내 해지 시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

[그림 2-20] 주택연금 상품 선택기준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 가입 기간 중 이사 또는 재개발(재건축)의 경우에도 주택연금 계약유지가 가능하다. 먼저, 주택연금 이용 중 불가피 하계(이사 등)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가입자는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담보주택에 대한 변경 동의를 얻으면, 담보주택을 기존 주택에서 신규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 시점에 기존 주택과 신규주택의 가격 평가 결과에 따라 가입자의 월지급금이 증가·동일·감소할 수 있다. 또한, 가입 시점에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단계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며 이용 도중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더라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향후 재건축 사업이 종료될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는 신축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고 주택금융공사는 종전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해야 한다.

다음으로 주택연금 가입자의 세제 혜택은 주택연금 가입 주택이 5억 원 이하일 경우 재산세(본세)는 25% 감면(5억 원 초과 주택은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본세) 25% 감면)되고 연금 수령 총액의 이자 비용은 연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이 밖에 수급권 보호 측면에서는 신탁 방식은 배우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주택연금 수급자는 주택연금 수급전용계좌(주택연금 지킴이통장)를 개설할 경우 185만 원 이하의 월 지급금에 대해서는 수급권 보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월지급금은 지급 정지되고 계약이 종료된다. 월지급금 지급정지 등으로 계약 종료 시 연금 수령 총액(대출총액)에 대해 상속인에게 현금상환 기회가 주어지며, 만약 현금상환이 어려울 경우 경매(저당권 방식) 또는 공매(신탁 방식)를 통해 담보 가치 회수가 이뤄진다. 이때 연금 수령 총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도 초과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의 경우 남은 차액은 상속인에게 배분한다.

-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단, 가입자만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채무 인수 후 계속 이용이 가능함)
-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다만,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제외됨. 여기서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로는 질병 치료, 심신 요양을 위한 병원, 요양(시설)소 입원, 자녀 등의 봉양 목적으로 다른 주택 장기체류 등이 있음)
-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매각, 양도로 소유권 이전, 화재 등에 의한 주택 소실 등)
- 주택 처분 조건 약정 미이행 및 주택을 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

2) 제도 개선 추진 내역

국가적 차원에서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연령 및 주택가격 요건 완화,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등의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표 2-36〉 주택연금 제도 개선 추진 내역

시행시기	항목	구분
2008.10	시가 6억 원 이하 → 시가 9억 원 이하	가입 대상 주택요건 완화
2010.07	노인복지주택 가입 허용	
2014.11	다주택자 가입 허용(보유주택 합산 9억 원 이하)	
2021.12	시가 9억 원 이하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2021.12	주거목적 오피스텔 가입 허용	
2023.10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 시가 12억 원 이하	가입기준 연령 완화
2013.08	주택 소유자 기준 만 65세 이상 → 만 60세 이상	
2016.03	주택 소유자 →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2020.04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만 60세 이상 → 만 55세 이상	가입 대상 확대
2016.04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2022.09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 (시가 1.5억 원 미만 → 2억 원 미만)	
2019.01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요건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 도입	가입 대상 요건 명확화
2009.03	대출한도 상향 조정(3억 원 → 5억 원)	수령방식 개선
2023.10	대출한도 상향 조정(5억 원 → 6억 원)	
2012.07	수시 인출한도 비율 상향 조정(30% → 50%)	
2012.08	전후후박형 월지급금 도입	
2013.11	확정기간 방식 출시	
2019.02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의 최대 인출한도 확대(70% → 90%)	기타
2021.08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신설	
2015.02	초기보증료를 인하(2.0% → 1.5%), 연보증료를 인상(0.5% → 0.75%)	
2015.08	담보주택 재건축 시 주택연금계약 유지	
2021.06	신탁 방식 주택연금 도입	
2021.06	주택연금 지킴이(압류 방지) 통장 도입	기타
2022.07	기존 가입자의 신탁 방식과 저당권 방식 간 담보설정 변경 허용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가장 최근에 단행된 제도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2023년 10월 신규 가입자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하고 총대출한도는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했다. 총 대출한도가 상향되면 연소자 연령 및 공시가격에 따라 월지급금은 아래와 같이 조정된다.

만 65세, 주택가격 10억 원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총대출한도는 4억 7,100만 원(매월 246만 원 수령)으로 5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총대출한도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의 변화는 없다. 그러나 만 65세, 주택가격 12억 원 주택 소유자의 경우 총대출한도가 5억 6,500만 원으로, 기존의 총대출한도 상한 5억 원 제한을 적용할 경우 월지급금으로 261만 원을 수령하지만, 총대출한도 상한 6억 원을 적용하면 월지급금이 295만 원으로 증가한다.

〈표 2-37〉 연소자 연령 및 주택시세별 총 대출한도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 변동

구분	주택시세 6억 원		주택시세 8억 원		주택시세 10억 원		주택시세 12억 원 이상	
	현행 (5억)	상향 (6억)	현행 (5억)	상향 (6억)	현행 (5억)	상향 (6억)	현행 (5억)	상향 (6억)
55세	907	907**	1,209	1,209**	1,512	1,512**	1,814	1,814**
60세	1,228	1,228**	1,638	1,638**	2,047	2,047**	2,457	2,457**
65세	1,478	1,478**	1,971	1,971**	2,464	2,464**	2,615	2,957 (+13.0%)
70세	1,803	1,803**	2,405	2,405**	2,763	3,006 (+8.8%)	2,763	3,315 (+20.0%)
80세	2,855	2,855**	3,310	3,807 (+15.0%)	3,310	3,972 (+20.0%)	3,310	3,972 (+20.0%)
90세	4,988	5,309 (+6.4%)	4,988	5,985 (+20.0%)	4,988	5,985 (+20.0%)	4,988	5,985 (+20.0%)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또한, 주택연금 평균 가입연령 72세, 일반주택, 종신행 기준으로 살펴보면, 공시가격이 9억 원인 신규 가입자의 경우 예상 월지급금이 294만

9,000원으로 현재보다 11만 원을 더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주택가격이 10억 원과 11억 원인 신규 가입자의 경우, 월지급금은 각각 327만 6,000원, 340만 7,000원으로 대출한도 5억 원 대비 각각 15%, 20% 증가한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가격이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의 경우 새로 적용되는 총대출한도액(6억 원)을 초과하므로 최대 수령 가능한 월지급금은 11억 원 주택을 소유한 가입자와 동일하다. 또한, 총대출한도가 5억 원 미만인 시세 9억 원 미만의 주택 소유자는 기존 대비 월지급금의 변동은 없다.

〈표 2-38〉 주택시세별 총대출한도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 변동

구분	① 현행 (5억 원)	② 한도 상향 시 (6억 원)	구분	① 현행 (5억 원)	② 한도 상향 시 (6억 원)	
					월지급금	증가율
시세 2억 원	655천 원	현행과 같음	시세 9억 원	2,839천 원	2,949천 원	4%
시세 4억 원	1,311천 원		시세 10억 원	2,839천 원	3,276천 원	15%
시세 6억 원	1,966천 원		시세 11억 원	2,839천 원	3,407천 원	20%
시세 8억 원	2,621천 원		시세 12억 원	2,839천 원	3,407천 원	20%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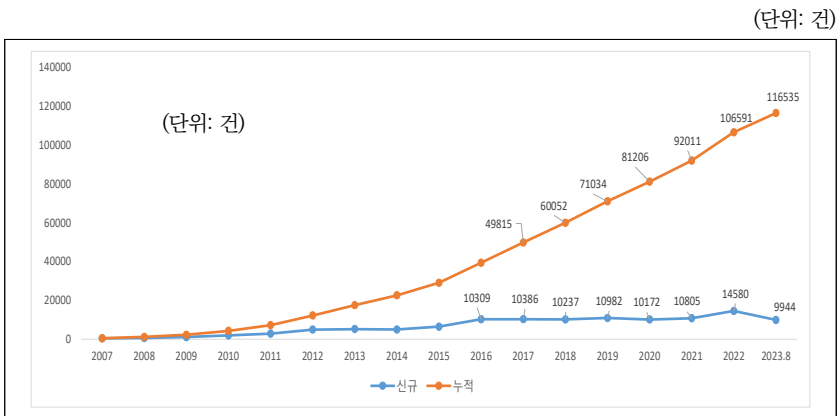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이 직접 부담하는 초기 비용 중 감정평가 비용에 대한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즉, 현재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만 감정평가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10월 12일부터 2억 원 미만 1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 시 감정평가 수수료를 면제한다. 참고로 1억 8,000만 원 주택 소유자가 주택연금 가입 시 부담해야 하는 감정평가 수수료는 38만 9,000원이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대상 주택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많으며 농어촌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계층의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주택연금제도 가입 현황

2016년 이후 신규 가입 건수가 매년 1만 건 이상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가입 건수 증가세를 보인 결과 2022년 말 기준 누적 가입 건수는 106,591건이다. 또한, 2023년에도 가입 건수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8월까지 신규 가입 건수가 9,944건으로 이를 합산하면 2023년 8월 기준 누적 가입 건수는 116,535건이다.

[그림 2-21] 주택연금 누적 및 신규 가입 건수 연도별 추이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누적 가입 건수에 대한 세부 통계를 분석하기 위해 2022년 말 기준 데이터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의 누적 가입 건수는 72,643건, 수도권 이외 지역(지방 광역시 포함)은 33,948건으로 수도권 지역이 전체 가입 건수의 68.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누적 기준과 2022년도 기준을 비교하더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비중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누적 가입 현황을 통해 수도권 대비 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18.3%) 및 지방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비중(13.5%)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최근 4년간의 추세를 보더라도 수도권 지역의 가입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가입 비중 격차는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9〉 주택연금 지역별 가입 건수

(단위: 건,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합계(2007~)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수도권	서울	2,752	25.1	2,641	26.0	2,899	26.8	3,389	23.2	29,511	27.7
	경기	3,545	32.3	3,216	31.6	3,839	35.5	5,849	40.1	36,725	34.5
	인천	637	5.8	555	5.5	538	5.0	968	6.6	6,407	6.0
	소계	6,934	63.1	6,412	63.0	7,276	67.3	10,206	70.0	72,643	68.2
비수도권	부산	1,066	9.7	917	9.0	833	7.7	977	6.7	8,556	8.0
	대구	519	4.7	493	4.8	522	4.8	619	4.2	4,909	4.6
	광주	247	2.2	244	2.4	209	1.9	314	2.2	2,139	2.0
	대전	249	2.3	285	2.8	315	2.9	505	3.5	2,814	2.6
	울산	149	1.4	129	1.3	149	1.4	167	1.1	1,209	1.1
	충북	200	1.8	168	1.7	133	1.2	164	1.1	1,575	1.5
	충남	214	1.9	172	1.7	144	1.3	213	1.5	1,701	1.6
	세종	31	0.3	23	0.2	55	0.5	92	0.6	277	0.3
	전북	222	2.0	231	2.3	175	1.6	201	1.4	1,883	1.8
	전남	105	1.0	136	1.3	113	1.0	135	0.9	964	0.9
	경북	256	2.3	204	2.0	198	1.8	214	1.5	1,765	1.7
	경남	527	4.8	491	4.8	441	4.1	487	3.3	3,990	3.7
	강원	196	1.8	197	1.9	199	1.8	236	1.6	1,746	1.6
	제주	67	0.6	70	0.7	43	0.4	50	0.3	420	0.4
	소계	4,048	36.9	3,760	37.0	3,529	32.7	4,374	30.0	33,948	31.8
합계	10,982	100	10,172	100	10,805	100	14,580	100	106,591	100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평균 가입연령은 연소자 기준 72.1세로 다층연금 수급 사각지대에 속한 고령층의 가입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현재 연소자 기준으로 55세로 낮아진 상태에서 70세 이하 가입자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2-40〉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령 분포

(단위: 건,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누계(2007~)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55세 미만	7	0.1	25	0.2	25	0.2	57	0.4	205	0.2
55~59세	207	1.9	344	3.4	381	3.5	728	5.0	2,602	2.4
60~64세	1,475	13.4	1,172	11.5	1,450	13.4	2,519	17.3	15,269	14.3
65~69세	1,969	17.9	1,849	18.2	2,167	20.1	3,442	23.6	21,856	20.5
70~74세	2,651	24.1	2,337	23.0	2,466	22.8	3,160	21.7	26,102	24.5
75~79세	2,550	23.2	2,359	23.2	2,191	20.3	2,401	16.5	22,622	21.2
80세 이상	2,123	19.3	2,086	20.5	2,125	19.7	2,273	15.6	17,935	16.8
합 계	10,982	100	10,172	100	10,805	100	14,580	100	106,591	100
평균연령	72.8세		72.8세		72.4세		71.0세		72.1세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가구 형태별 주택연금 가입 현황의 경우 부부 가구의 비중이 58.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독신녀 가구의 비중도 34.5%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독신녀 가구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통해 주택연금이 남성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부족한 여성 고령자의 유용한 노후소득 마련 수단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표 2-41〉 주택연금 가구 형태별 가입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합계(2007~)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부부	6,165	56.1	5,559	54.7	5,910	54.7	6,950	57.3	60,667	58.2
독신남	796	7.2	847	8.3	805	7.5	988	8.1	7,517	7.2
독신녀	4,021	36.6	3,766	37.0	4,090	37.9	4,201	34.6	35,966	34.5
합 계	10,982	100	10,172	100	10,805	100	12,139	100	104,150	100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지급방식별로 살펴보면, 종신 방식(종신훈합 포함)의 비중이 99%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종신 방식의 비중이 높은 이유로는, 우선 종신 까지 안정적인 월지급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선호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우대형과 대출상환 방식의 경우 종신 방식으로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표 2-42〉 지급방식별 주택연금 가입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합계(2007~)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종신 방식	10,848	98.8	10,050	98.8	10,698	99.0	14,443	99.1	105,401	98.9
종신지급	7,733	70.4	7,024	69.1	7,291	67.5	9,747	66.9	74,602	70.0
일반	6,583	59.9	5,940	58.4	6,518	60.3	8,979	61.6	67,532	63.4
우대지급	1,150	10.5	1,084	10.7	773	7.2	768	5.3	7,070	6.6
종신훈합	3,115	28.4	3,026	29.7	3,407	31.5	4,696	32.2	30,799	28.9
일반	2,176	19.8	2,190	21.5	2,780	25.7	3,814	26.2	24,707	23.2
대출상환	614	5.6	531	5.2	457	4.2	724	5.0	3,507	3.3
우대혼합	325	3.0	305	3.0	170	1.6	158	1.1	1,941	1.8
사전가입	-	-	-	-	0	0.0	0	0.0	644	0.6
확정기간	134	1.2	122	1.2	107	1.0	137	0.9	1,190	1.1
확정혼합	134	1.2	122	1.2	107	1.0	137	0.9	1,190	1.1
합 계	10,982	100	10,172	100	10,805	100	14,580	100	106,591	100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지급유형별로는 현금 흐름 예측이 용이한 정액형의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정액형 이외에 기존의 증가형과 감소형은 폐지된 반면, 초기증액형은 최근 신설된 지급방식이어서 현재까지는 그 비중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2-43〉 주택연금 지급유형별 가입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9		2020		2021		2022		합계(2007~)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정액형	7,367	67.1	6,915	68.0	7,327	67.8	9,838	67.5	74,630	70.0
증가형	-	0.0	-	0.0	-	0.0	0	0.0	189	0.2
감소형	-	0.0	-	0.0	-	0.0	0	0.0	3,923	3.7
전후후박형	3,615	32.9	3,257	32.0	2,073	19.2	0	0.0	21,702	20.4
초기증액형 (3년)	-	-	-	-	61	0.6	210	1.4	271	0.3
초기증액형 (5년)	-	-	-	-	126	1.2	485	3.3	611	0.6
초기증액형 (7년)	-	-	-	-	113	1.0	368	2.5	481	0.4
초기증액형 (10년)	-	-	-	-	1,101	10.2	3,647	25.0	4,748	4.5
정기증가형	-	-	-	-	4	0.0	32	0.2	36	0.0
합계	10,982	100	10,172	100	10,805	100	14,580	100	106,591	100

주: 1) 지급유형별 출시 시점은 증가형은 2008년 5월, 감소형은 2008년 10월, 전후후박형은 2012년 7월, 초기증액형·정기증가형은 2021년 8월임.

2) 지급유형별 폐지 시점은 증가형은 2016년 2월, 감소형은 2016년 2월임.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보취득 방식의 경우 신탁 방식 주택연금제도가 도입된 2021년 6월 이후 신탁 방식을 선택한 가입자 비중은 2022년 말 기준 45.1%를 차지하고 있다. 신탁 방식은 기존 근저당권 방식에 비해 가입자의 초기 비용이 적은 데다 추가 임대소득 마련이 용이하고 주택소유자 사망 후에 자녀

의 동의 없이 생존 배우자에게 안정적인 월지급금 수급이 가능한 부분 등이 가입 건수 증가의 요인으로 판단된다.

〈표 2-44〉 담보취득 방식별 주택연금 가입 현황

(단위: 건, %)

구분	'22.6	'22.7	'22.8	'22.9	'22.10	'22.11	'22.12	누계('21~)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신탁 방식	627 (49.1)	525 (47.1)	661 (47.6)	597 (48.3)	675 (47.5)	715 (48.5)	429 (44.4)	9,399 (45.1)
저당권 방식	649 (50.9)	645 (52.9)	729 (52.4)	639 (51.7)	745 (52.5)	759 (51.5)	538 (55.6)	11,446 (54.9)
합계	1,276 (100)	1,170 (100)	1,390 (100)	1,236 (100)	1,420 (100)	1,474 (100)	967 (100)	20,845 (100)

주: ()는 비중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지급금 규모를 보면 누적 가입자 기준으로 평균 월지급금은 약 116만 원이다. 담보주택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입 연도별 평균 월지급금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부 구간별로는 50~100만 원(36.3%), 100~150만 원(20.8%), 50만 원 미만(7.3%)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2-45〉 월지급금별 주택연금 가입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9		2020		2021		2022		합계(2007~)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50만 원 미만	2,306	21.0	1,937	19.0	1,343	12.4	1,282	8.8	18,399	17.3
50~ 100만 원 미만	4,046	36.8	3,329	32.7	2,517	23.3	3,149	21.6	38,656	36.3
100~ 150만 원 미만	2,257	20.6	2,056	20.2	2,168	20.1	3,165	21.7	22,219	20.8

구분	2019		2020		2021		2022		합계(2007~)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50~ 200만 원 미만	1,173	10.7	1,161	11.4	1,778	16.5	2,657	18.2	12,358	11.6
200~ 300만 원 미만	894	8.1	1,206	11.9	2,132	19.7	3,258	22.3	11,092	10.4
300만 원 이상	306	2.8	483	4.7	867	8.0	1,069	7.3	3,857	3.6
합 계	10,982	100	10,172	100	10,805	100	14,580	100	106,591	100
평 균	1,079천 원		1,212천 원		1,515천 원		1,584천 원		1,156천 원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보주택 가격은 2억 원 이상~3억 원 미만의 구간이 2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향과 주택가격 상승 추세 등으로 최근에는 9억 원 이상 주택소유자의 가입 비중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6〉 담보주택 가격별 주택연금 가입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합계(2007~)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5천만 원 미만	39	0.4	52	0.5	36	0.3	23	0.2	386	0.4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588	5.4	653	6.4	382	3.5	256	1.8	5,257	4.9
1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1,276	11.6	1,089	10.7	760	7.0	624	4.3	11,238	10.5
1.5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1,429	13.0	1,198	11.8	802	7.4	844	5.8	13,594	12.8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2,766	25.2	2,127	20.9	1,516	14.0	1,695	11.6	24,557	23.0
3억 이상~ 4억 미만	1,935	18.8	2,012	19.4	1,716	16.8	1,640	14.9	1,410	13.9

82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소득보장 전망 및 과제

구 분	2019		2020		2021		2022		합계(2007~)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4억 이상~ 5억 미만	990	9.6	1,114	10.7	953	9.3	1,140	10.4	907	8.9
5억 이상~ 6억 미만	482	4.7	569	5.5	566	5.5	816	7.4	783	7.7
6억 이상~ 7억 미만	290	2.8	318	3.1	379	3.7	495	4.5	589	5.8
7억 이상~ 8억 미만	147	1.4	199	1.9	262	2.6	354	3.2	474	4.7
8억 이상~ 9억 이하	162	1.6	206	2.0	386	3.8	439	4.0	653	6.4
9억 초과	-	-	-	-	-	-	-	-	237	2.3
합 계	10,309	100	10,386	100	10,237	100	10,982	100	10,172	100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체 평균 담보주택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주택가격이 급등한 2021년과 2022년의 평균 주택가격은 그 이전 연도인 2019년과 2020년에 비해 약 1억 원 이상 상승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이 두드러진다. 비수도권 지역은 2020년 2억 2천8백만 원에서 2021년과 2022년 각각 2억 9천7백만 원과 3억 4천2백만 원으로 소폭 상승한 반면, 수도권 지역은 2020년 4억 6천만 원에서 2021년과 2022년 각각 6억 2천5백만 원과 6억 3천8백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 폭을 기록하였다.

〈표 2-47〉 지역별 평균 담보주택 가격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합계 (2007~)
수도권	서울	488	583	772	783	504
	경기	342	397	551	584	385
	인천	247	254	354	461	270
	평균	391	461	625	638	423
비수도권	부산	272	277	391	451	286
	대구	249	264	342	362	256
	광주	214	218	272	333	206
	대전	220	283	353	405	261
	울산	241	238	331	326	250
	충북	167	156	204	272	176
	충남	176	185	204	251	183
	세종	274	462	649	635	453
	전북	157	151	183	210	156
	전남	156	146	179	208	147
	경북	163	170	205	199	170
	경남	184	197	223	263	199
	강원	168	180	192	236	167
	제주	323	299	308	353	279
	평균	219	228	297	342	230
전체 평균		328	375	518	549	362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가입 시점의 담보주택 유형별 주택가격을 살펴보면, 아파트의 가격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2020년 이후에는 아파트 평균 주택가격과 비(非)아파트 주택인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별 담보주택 가격의 패턴과 유사한 추세를 보여 주택연금 가입자 중 아파트 거주자는 수도권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결국 주택연금 가입자는 수도권 아파트 거주 가입자의 담보주택 가격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48〉 담보주택 유형별 주택가격 현황

(단위: 백만 원)

유형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 기간 ('07~)
아파트	329	345	402	555	578	382
단독	278	294	311	367	357	283
다세대	188	199	197	231	261	195
연립	247	261	313	351	396	279
노인복지주택	309	391	311	488	511	376
복합용도주택	361	337	355	360	426	342
주거목적 오피스텔	-	-	426	416	439	427
평균	312	328	375	518	549	362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보주택 유형으로는 아파트의 비중이 80% 이상, 주택 면적은 85㎡ 이하의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표 2-49〉 담보주택 유형별 주택연금 가입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합계(2007~)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아파트	8,941	81.4	8,173	80.3	9,115	84.4	12,852	88.1	89,339	83.8
단독	887	8.1	813	8.0	618	5.7	606	4.2	7,197	6.8
다세대	832	7.6	835	8.2	679	6.3	705	4.8	6,687	6.3
연립	253	2.3	246	2.4	206	1.9	213	1.5	2,436	2.3
노인복지주택	37	0.3	45	0.4	37	0.3	69	0.5	436	0.4
복합용도주택	32	0.3	39	0.4	32	0.3	24	0.2	246	0.2
주거목적 오피스텔	0	0.0	21	0.2	118	1.1	111	0.8	250	0.2
합 계	10,982	100	10,172	100	10,805	100	14,580	100	106,591	100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표 2-50〉 담보주택 면적별 주택연금 가입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19		2020		2021		022		합계(2007~)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60㎡ 이하	4,208	38.3	3,922	38.6	4,009	37.1	5,117	35.1	40,202	37.7
60㎡ 초과~ 85㎡ 이하	4,702	42.8	4,354	42.8	4,783	44.3	7,012	48.1	45,920	43.1
85㎡ 초과~ 102㎡ 이하	457	4.2	435	4.3	418	3.9	558	3.8	4,503	4.2
102㎡ 초과~ 135㎡ 이하	986	9.0	885	8.7	1,060	9.8	1,327	9.1	10,579	9.9
135㎡ 초과	629	5.7	576	5.7	535	5.0	566	3.9	5,387	5.1
합 계	10,982	100	10,172	100	10,805	100	14,580	100	106,591	100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자는 신문/방송, 한국주택금융공사 홍보를 통해 가입한 비중이 가입 동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금융기관 및 국민연금과의 연계성을 통한 가입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2-51〉 주택연금 가입 유인 수단

(단위: 건, %)

연도 유형	2019	2020	2021	2022	합계(2007~)
신문/방송	6,008 (54.7)	5,218 (51.3)	4,704 (43.5)	5,449 (37.4)	64,035 (60.1)
공사홍보	4,396 (40.0)	4,521 (44.4)	5,497 (50.9)	8,347 (57.2)	36,374 (34.1)
금융회사	60 (0.5)	44 (0.4)	29 (0.3)	14 (0.1)	1,014 (1.0)
기 이용자 권유	57 (0.5)	49 (0.5)	53 (0.5)	63 (0.4)	895 (0.8)
주택금융 직원 추천	4 (0.0)	5 (0.0)	2 (0.0)	3 (0.0)	139 (0.1)
명예 홍보대사	7 (0.1)	3 (0.0)	-	-	153 (0.1)

연도 유형	2019	2020	2021	2022	합계(2007~)
노인 복지관 등	2 (0.0)	1 (0.0)	2 (0.0)	1 (0.0)	49 (0.0)
기타	111 (1.0)	69 (0.7)	87 (0.8)	159 (1.1)	1,211 (1.1)
재가입	74 (0.7)	109 (1.1)	265 (2.5)	169 (1.2)	854 (0.8)
가교형	-	4 (0.0)	2 (0.0)	-	13 (0.0)
은퇴금융 아카데미	1 (0.0)	-	-	2 (0.0)	4 (0.0)
금융기관 (주담대상환)	261 (2.4)	148 (1.5)	160 (1.5)	370 (2.5)	1,841 (1.7)
국민연금 공단 연계	1 (0.0)	1 (0.0)	4 (0.0)	3 (0.0)	9 (0.0)
합 계	10,982	10,172	10,805	14,580	106,591

주: ()는 비중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결론적으로 주택연금 가입자의 대표적 특성은 누적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의 85㎡ 이하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고령자로서 약 115만 원의 월 지급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표 2-52〉 주택연금 가입자의 대표적 특성

구분	2022년 기준		합계(2007~)	
평균 주택가격 (백만 원)	549	수도권: 638 (70.0%)	357	수도권: 423 (68.2%)
		지 방: 342 (30.0%)		지 방: 230 (31.8%)
평균 월지급금 (천 원)	1,584	수도권: 1,791	1,147	수도권: 1,319
		지 방: 1,102		지 방: 807
평균 연령	70.9세(70대 38.1%, 60대 40.9%)		72.1세(70대 45.7%, 60대 34.8%)	
주택 유형	아파트: 88.1%		아파트: 83.8%	
주택 규모	85㎡ 이하 83.2%		85㎡ 이하 80.8%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4) 재정 및 운영현황

저부담 고급여인 공적연금과 달리 주택연금은 수지상등 원리에 따라 월지급금을 산정하며, 계약 종료 시점에 연금 총액이 담보주택의 가격을 초과하는 대위변제 손실액에 대비한 보증료도 가입자에게 사후적으로 부과되므로 국가의 재정 부담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연금은 제도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공적연금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연도별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대위변제 금액에 비해 보증료 누계액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보증료 수입 이외에 금융기관 출연금, 이익잉여금 등에 의한 기본재산액 규모도 2022년 말 기준 7,844억 원을 기록하는 등 재정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주택연금의 양호한 재정 상황은 최근의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중도해지 급증의 영향도 존재하므로 주택가격 하락 시 재정 악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

〈표 2-53〉 주택연금 계정의 재정 현황

(단위: 억 원, %, 배)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연금지급 잔액(A)	34,286	43,407	52,484	62,811	78,860
보증료 누계 (당해연도 보증료)	3,476	4,236	5,066	6,195	7,793
출연금 누계 (당해연도 출연금)(B)	406	634	1,290	2,003	2,791
대위변제 순증 (발생-회수)	34.6	9.1	51.4	33	82.5
이익잉여금(C)	1,893	2,242	3,072	4,450	5,298
기타 포괄손익(D)	13	13	162	42	(245)
기본재산 (E=B+C+D)	2,312	2,889	4,524	6,495	7,844
운용배수(A/E)	14.8	15.0	11.6	9.7	10.1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5절 개인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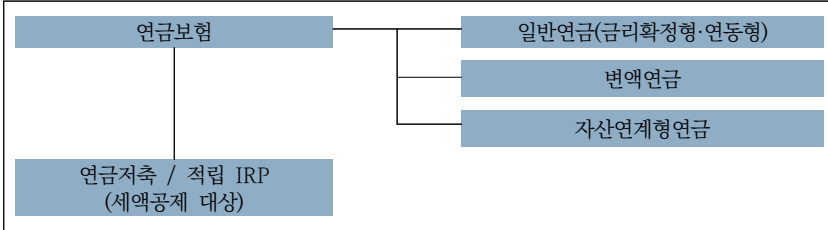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노후 대비가 부족하고,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는 개인연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1994년 적격 개인연금 형태로 개인연금저축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개인연금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개인연금은 퇴직연금과 달리 별도로 개인연금법이 존재하지 않고, 소득세법(세제 적격), 보험업법(세제 비적격) 등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정부(금융위원회)는 「개인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등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법률 제정 추진을 시도한 바 있으나, 제정하지 못하였다.²⁷⁾

개인연금은 연금세제 적용 방법에 따라 연금저축(적격)과 연금보험(비적격)으로 대별되며, 퇴직연금 체계를 따르는 개인형 IRP 중 본인 부담분(가칭, 적립 IRP)도 적격 개인연금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개인연금은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납부금액과 수령액에 세제 혜택(세액공제)이 부과되는 특성이 있다.

[그림 2-22]는 개인형연금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데, 개인형연금은 개인연금과 적립 IRP(개인형 퇴직연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2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11.8.), 「개인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그림 2-22] 개인연금 유형



- 주: 1) 일반연금: 납입보험료에 확정금리(확정형) 또는 변동금리(연동형)를 적용하여 연금액을 결정
 2) 변액연금: 보험료를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여 그 실적을 연금액에 반영하여 지급
 3) 자산연계형연금: 보험료를 주가지수 등 특정 지표 또는 자산에 연계하여 그 수익을 연금액에 반영하여 지급

연금저축은 일정한 납부액(보험료)까지 소득세법상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5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장기 저축 상품²⁸⁾이며, 연금 수령 시에는 일정 연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후 과세된다(EET 방식). 1994년 6월에 도입된 개인연금저축이 적격 개인연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01년 연금저축, 2013년 연금저축계좌로 변천되었다. 특히 2014년부터는 세제지원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세제 특성과 관련하여 소득수준, 연령에 무관하게 연금저축의 연간 납부액은 600만 원까지(적립 IRP 납부액 합산 시 900만 원) 세액공제 대상이며,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자 4,000만 원) 이상인 자는 연금저축 납입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5,500만 원(종합소득자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세액공제된다.²⁹⁾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 시에는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³⁰⁾ 이때 연금 소득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 한도 내에 인출되어야 하며, 연금 수령

28)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3. 12. 19.), 연금저축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추진

29) 보험개발원(2016), “2016 KIDI 은퇴시장 리포트”에 의하면, 희망세액공제는 19.2%로 조사됨

30)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5호

한도는 연금 수령 연차 10년까지 $\frac{\text{연금계좌평가액}}{11 - \text{연금수령연차}} \times 120\%$ 내로 설정되어 있다. 해당 범위 내에서 수령하여야 연금소득세를 적용받는다.³¹⁾ 수령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시금 수령으로 보아 기타소득세가 적용된다.

〈표 2-54〉 연금저축 상품의 변화 과정 및 내용

구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판매기간	1994.6. ~ 2000.12.	2001.1. ~ 2013.2.	2013.3. ~ 현재
납입한도	분기별 300만 원(연 1,200만 원)		연간 1,800만 원 (2013년부터)
소득(세액) 공제	소득공제(연간 납입액의 40%, 72만 원 한도)	• 2001.1~2013.2: 소득공제(연 240만 원 → 400만 원 한도) • 2014.1~2022.12: 세액공제(13.2%, 연 400만 원 한도, IRP 포함 700만 원) • 2023.1~: 세액공제(13.2%, 연 600만 원 한도, IRP 포함 900만 원)	
불입기간 및 연금개시 기간	적립 후 10년 경과, 55세 이후		적립 후 5년 경과, 55세 이후
연금 수령 한도	5년 이상 분할수령	5년 이상 분할수령	연금 수령 연차별 한도 설정 => 10년 이상 분할수령
수령 시 세제	비과세	• 연금소득세 (5%) • 600만 원(공적연금 포함) 초과 시 종합과세	연금소득세 (3.3~5.5%) : 연금소득(공적연금 제외)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900만 원까지 연금 소득 공제)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 시	• 이자소득세 부과 •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세	• 기타소득(22%)으로 과세 : 3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 과세(~2014년) • 5년 이내 해지 시 가산세(과세 대상 금액의 2%)	• 기타소득(16.5%)으로 과세 (2015년~) : 기타소득세 혹은 종합소득세(~2014년) • 해지가산세 폐지(2013.3월 이후 체결한 연금저축)
근거 법률	舊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舊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및 소득세법 제20조의 3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
취급기관	은행(신탁), 증권(펀드), 보험사(보험)가 판매 : 신탁, 수협,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공제보험 등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5.4.21.); 금융감독원,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 기획재정부 (2022. 7. 21.),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등을 활용하여 재구성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연금보험(세제비적격)은 납부액(보험료)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나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특성이 있다. 연금보험은 일반연금과 투자형 연금인 변액연금 및 자산연계형 연금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반연금은 납입보험료에 확정 혹은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연금액을 산출하고, 변액연금³²⁾은 보험료를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여 그 실적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상품이다.³³⁾ 자산연계형 연금은 보험료를 채권 금리, 주가지수, 금리스왑 등 특정 지표 또는 자산에 연계하여 그 수익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상품이다. 연금보험 상품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취급한다.

〈표 2-55〉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2017. 4.1~)

구분	내용
보험차익 정의	보험금 혹은 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뺀 금액(보험금-보험료)
보험차익 비과세 대상	동 요건을 갖추면 보험차익 비과세 1. 1억 원 이하 저축성 보험 계약(가입기간 10년 이상) 단, 10년 이상 가입이지만, 10년 경과 전에 연금 형태로 지급받은 경우는 과세 2.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계약(가입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은 5년 이상 • 매월 균등보험료 납입(월 150만 원 한도), 선납기간 6개월 이내 3. 종신행 연금보험 계약 • 55세 이후 종신 연금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해야 하고, 중도해지 못함 • 연간 연금액 상한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연간 연금액=연금계좌 평가액/기대여명 연수×3 4.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32) 변액연금 2002년 도입, 일시납즉시연금 2001년 도입. 변액보험에는 일반변액보험(variable life insurance), 변액유니버설보험(variable universal life insurance), 변액연금(variable annuity) 등이 있음.

33) 변액연금은 연금개시 시점(예: 55세)에 최소 연금지급을 보증(GMAB,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의 70~120%)함(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8.4.21),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보험 가입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이자소득세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설명된다. ‘1억 원 이하 저축성 보험 계약’은 저축성 보험 계약자의 납입보험료 합계액(‘월적립식’ 및 ‘종신행’ 제외)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10년 이상 유지 시 해당 보험차익이 비과세된다.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계약’은 5년 이상 매월 보험료를 균등하게 납입(월 150만 원 한도, 선납기간 6개월 이내)하고 10년 이상 유지 시 해당 보험차익은 비과세된다. ‘종신행 연금보험계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하고 55세 이후 종신 형태로 연금을 수령하되 연간 연금액 상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해당 보험차익이 비과세된다. 종신연금은 중간 해지가 불가능하고, 연간 연금액(연간 연금액=연금계좌 평가액/기대여명 연수×3)은 연금계좌평가액을 기대여명 연수로 나눈 후 3을 곱하여 산출된다.

연금저축 가입자 수 변화를 보면 소득공제 적용 시점이던 2013년에 2,405만 명이었으며, 2018년 2,219만 명, 2021년 2,175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가입률³⁴⁾로 보면, 2013년 14.8%, 2018년 12.0%, 2021년 10.9%로 8년간 △3.9%p 감소하여 연간 △0.5%p 감소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6〉 개인연금저축 가입 추이(2013년~)

(단위: 천 명, %)

연도	가입자 수	가입률 ¹⁾	연도	가입자 수	가입률 ¹⁾
2013년	2,405	14.80%	2018년	2,219	12.00%
2014년	2,346	14.10%	2019년	2,188	11.50%
2015년	2,281	13.20%	2020년	2,164	11.20%
2016년	2,292	13.00%	2021년	2,175	10.90%
2017년	2,267	1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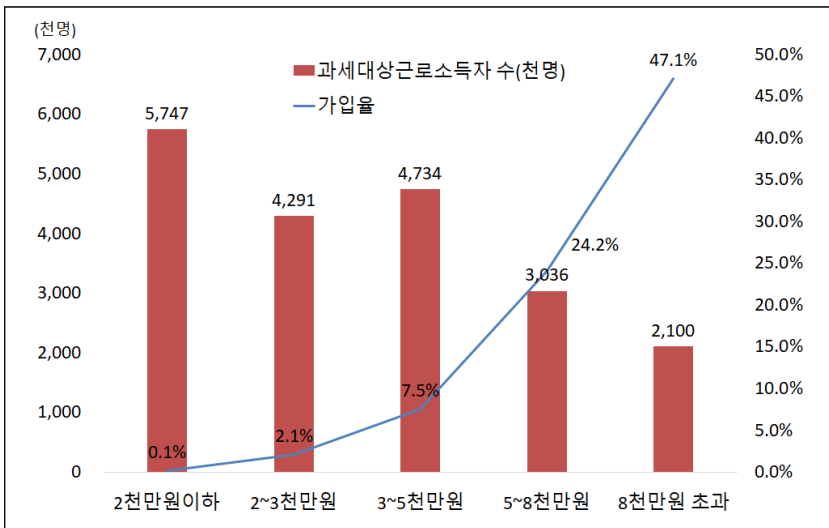
주: 가입률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자(총급여) 중에서 납부액이 있는 자(과세 및 비과세 대상 모두 포함)의 비율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활용하여 재정리

34) 전체 총급여 소득자 수 대비 연금저축 가입자 수의 비율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가입률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2천만 원 이하 0.1%, 8천만 원 초과 47.1%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입률이 낮다.

[그림 2-23] 개인연금(연금저축) 소득계층별 가입률(2021년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활용하여 작성

개인연금 가입 동기를 보면, 연령대/금융자산 규모에 무관하게 ‘노후 자금 마련’, ‘세제 혜택’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볼 때 일반적으로 개인연금을 노후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57〉 개인연금 가입 동기

(단위: %)

가입 동기	연령대별				금융자산 규모별		
	20대	30대	40대	50대	5천 미만	5천~1억	3억 이상
노후자금 마련	45.0	50.1	61.8	68.5	55.5	57.3	61.1
세제 혜택	25.2	41.6	38.8	49.1	34.3	37.7	47.4
가족/지인 추천 및 권유	31.4	25.5	19.9	15.6	25.5	22.7	18.2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	21.0	19.8	22.9	15.9	18.8	23.0	18.0
금융회사 직원 추천 및 권유	17.2	11.5	8.4	8.3	17.1	19.4	19.2
직장의 권유	21.4	18.6	18.2	13.2	11.4	9.3	7.6
타 금융상품 대비 우수한 금리/혜택	12.6	12.9	12.0	11.6	12.8	11.8	12.0

주: 1, 2순위 복수 응답

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8), 개인연금 가입자의 특성 분석

김정훈(2020), 사적연금 관련 정책과제 및 감사 시사점, 감사연구원

연금저축 총납입액은 2017년 10조 2,168억 원에서 2021년 9조 8,763억 원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납부액은 동 기간 225만 원에서 262만 원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동기간 보험과 신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펀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연금저축 납입을 원리금 보장 상품보다 실적배당형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표 2-58〉 개인연금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 현황

(단위: 억 원, 만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보험	77,100 (213)	76,173 (223)	71,435 (220)	68,711 (235)	59,676 (233)
신탁	12,676 (274)	11,497 (286)	10,455 (286)	9,924 (292)	9,324 (317)
펀드	12,393 (272)	13,132 (280)	14,997 (321)	18,395 (298)	29,763 (329)
합계	102,168 (225)	100,803 (235)	96,887 (237)	97,030 (250)	98,763 (262)

주: 1) 납입액 '0원'인 계약은 제외

2) () 안은 계약 당 납입액(만 원)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7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4.3.), 2019년 연금저축 운용현황 분석 결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1.4.6.), 2020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4.11), 2021년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

다음으로 연금저축의 신규계약과 해지계약 현황을 통해 지속성을 살펴본다. 2021년 기준 연금저축 신규계약은 174.9만 건이며, 당해 중도해지된 연금저축 계약은 27.3만 건으로 나타났다. 편의상 해지율을 신규계약 대비 해지계약의 비율로 정의하면 2021년 연금저축 해지율은 27.3%로 추정된다. 이러한 해지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02%, 2019년 97.5%, 2020년 47.0%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경기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노후소득보장 제도로는 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징적인 것은 2021년 신규계약을 보면 전체 신규계약 175만 건 중 펀드가 163.4만 건(249.0%p 인상)으로 93.4%, 보험은 11.6만 건(8.3%p 감소)으로 감소하여 최근에는 대부분 연금저축펀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익률을 추구하는 가입자의 성향이 연금저축에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표 2-59〉 개인연금 연금저축 신규 및 해지 계약

(단위: 천 건, 억 원)

구 분	2020년			2021년		
	신규계약	해지계약	해지금액	신규계약	해지계약	해지금액
보 험	126	197	25,304	116	152	22,812
신 탁	-	32	4,364	-	51	5,032
펀 드	468	51	4,801	1,634	70	6,888
합 계	594	279	34,470	1,749	273	34,732

주: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신규 판매 중단(기존 계좌 납입은 가능)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4.11), 2021년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

〈표 2-59〉에서와 같이 연금저축에 대한 해지가 많을수록 적립액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노후자산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적 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가입, 유지 단계에서부터 납입금, 적립금이 관리될 수 있도록 중도인출, 중도해지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연금저축 적립금은 보수적·유동성 위주의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됨에 따라 수익률은 낮은 편이다. 한편,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투자는 수익률이 높지만 주식시장 변동 등에 따라 수익률의 변동성이 크다. 즉,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은 2018년에 △13.86% 감소한 후 2019년에 10.50% 증가하였으며, 경기가 좋았던 2021년까지 수익률은 두 자리 수로 높다. 이러한 현상은 퇴직연금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어 개인연금 또한 퇴직연금 수익률과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표 2-60〉 개인연금 저축상품별 수익률 현황

(단위: %)

연도	신탁	펀드	보험		전 체
			생보	손보	
2018	1.83	△13.86	1.79	1.36	△0.44
2019	2.34	10.50	1.84	1.50	3.05
2020	1.72	17.25	1.77	1.65	4.18
2021	△0.01	13.45	1.83	1.63	4.36
단순평균	1.47	6.84	1.81	1.54	2.79

주: 1) 통합연금포털 공시기준(납입원금 대비 수익률)

2) 개별 상품별·회사별 수익률은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 「연금저축 비교공시」란에서 확인 가능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4.3.), 2019년 연금저축 운용현황 분석 결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1.4.6.), 2020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4.11), 2021년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

개인형 연금의 적립액 추이를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대부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이러한 증가는 매년 납부액의 추가도 있지만, 투자수익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7~2021년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개인형 IRP가 32.1%로 가장 높고, 연금저축이 5.6%, 연금보험은 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 기간 연금저축에서는 펀드의 증가율이 19.5%로 높은데, 이는 실적배당형 등 투자성 상품으로 소비자의 선호가 바뀌어 가고 있음을 조심스럽게 짐작하게 한다.

〈표 2-61〉 개인연금, 개인형 IRP의 적립액 추이

(단위: 조 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7~2021년 연평균증가율
연금저축	128.8	135.2	143.4	152.5	160.1	5.6
보험	94.9	100.5	105.6	109.7	112.0	4.2
신탁	16.8	17.2	17.4	17.6	17.0	0.3
펀드	12.2	12.1	14.5	18.9	24.3	19.5
기타	4.9	5.4	5.9	6.4	6.8	8.5
연금보험	196.6	196.8	201.9	207.2	208.6	1.5
개인형IRP	15.3	19.2	25.4	34.4	46.5	32.1

주: 1) 은행, 증권, 보험사가 판매하는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2) 신탁, 수협,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공제보험 등

3) 보험사의 일반 연금보험, 변액연금(2020년까지 집계 방법에 오류가 있어 수치를 전부 수정)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7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4.3.), 2019년 연금저축 운용현황 분석 결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1.4.6.), 2020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4.11), 2021년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

개인연금의 경우도 퇴직연금과 유사하게 연금퍼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6~2019년 동안 연금저축 연금 형태로 수급하고 있는 수급자 중에서 확정기간형을 선택한 비중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종신행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2019년에는 확정기간형이 전체의 64.1%를 차지하며, 종신행(33.2%), 확정금액형(2.3%), 혼합형(0.2%)의 順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금저축의 연금 형태 수급자들의 대부분(89.3%)은 2019년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이하로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⁵⁾

3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9년 연금저축 운용현황 분석 결과.

〈표 2-62〉 개인연금 연금저축의 연금 수령 형태 비중

(단위: %)

연도	확정기간형	확정금액형	종신형	기타 (혼합형 등)	총 계
2016	66.4	1.0	32.4	0.2	100.0
2017	66.0	1.4	32.4	0.2	100.0
2018	65.4	1.7	32.7	0.2	100.0
2019	64.1	2.3	33.2	0.2	100.0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7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4.3.), 2019년 연금저축 운용현황 분석 결과 등 참고하여 정리

2021년 중 연금저축 연금 수령액은 4.0조 원으로 2020년에 비해 0.5조 원(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2018년 308만 원, 2019년 302만 원, 2020년 293만 원, 2021년 295만 원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2-63〉 개인연금 연금저축의 연금 수령액

구 분		보 험	신 탁	펀 드	총 계
연간 수령액 (억 원)	'18년	18,689 -	5,022 -	2,673 -	26,384 -
	'19년	21,968 (17.5%)	5,431 (8.1%)	3,200 (19.7%)	30,600 (16.0%)
	'20년	25,192 (14.7%)	5,676 (4.5%)	4,458 (39.3%)	35,326 (15.4%)
	'21년	29,044 (15.3%)	5,956 (4.9%)	5,371 (20.5%)	40,371 (14.3%)
수령 계약 수 (천 건)	'18년	732 -	86 -	37 -	855 -
	'19년	875 (19.5%)	89 (3.5%)	49 (32.4%)	1,013 (18.5%)
	'20년	1,039 (18.7%)	92 (3.4%)	74 (51.0%)	1,205 (19.0%)
	'21년	1,193 (14.8%)	101 (9.8%)	74 (0.0%)	1,368 (13.5%)
계약당 수령액 (만 원)	'18년	255 -	583 -	714 -	308 -
	'19년	251 (-1.6%)	610 (4.6%)	652 (-8.7%)	302 (-1.9%)
	'20년	242 (-3.6%)	617 (1.1%)	606 (-7.1%)	293 (-3.0%)
	'21년	243 (0.4%)	591 (-4.2%)	723 (19.3%)	295 (0.7%)

주: () 안은 연간 증가율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4.3.), 2019년 연금저축 운용현황 분석 결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1.4.6.), 2020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4.11), 2021년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을 참고하여 정리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3장

노후소득보장 최근 동향과 해외 사례

제1절 노후소득보장 최근 동향

제2절 해외 사례

제3장 노후소득보장 최근 동향과 해외 사례

제1절 노후소득보장 최근 동향

1. 퇴직연금 현황 및 문제점

가. 가입 단계: 낮은 가입율 및 유지율

퇴직연금 제도적 요소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가입 및 유지에 대해 그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먼저, 퇴직연금 도입 및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1년 기준³⁶⁾ 도입률은 27.1%, 가입률은 53.3%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가입률이 낮다는 특징을 보인다. 퇴직연금 도입률 추이를 보면 2015년 26.2%, 2016년 26.9%, 2017년 27.2%, 2018년 27.3%, 2019년 27.5%, 2020년 27.2%, 2021년 27.1%로 2019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퇴직연금 가입률 추이는 2016년 49.3%, 2017년 50.2%, 2018년 51.3%, 2019년 51.5%, 2020년 52.4%, 2021년 53.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퇴직연금 가입률이 증가하기는 하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제도가 이분화되어 있고, 퇴직금을 기본제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률의 증가 속도는 높지 않고, 앞서 도입률에서도 최근 감소세라는 점에서 볼 때 향후 추가적 가입률 제고가 의문시 된다고 볼 수 있다.

36) 통계청 보도자료(2022. 12. 19.), 2021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p. 7.

사업장 규모별로 도입률과 가입률 현황을 보면 <표 3-1>과 같다. 먼저 도입률을 보면, 사업장의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도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0.6%, 10~29인 사업장은 57.1%, 100~299인 사업장은 87.0%, 300인 이상 사업장은 91.4%로 나타났다. 특히, 10인 미만 도입 사업장은 225천 개소로 전체 도입 사업장 중 52.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다음으로 가입률을 보면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5인 미만 가입률은 11.8%, 5~9인은 30.2%, 10~29인은 48.3% 수준인데 반해, 100~299인 사업장 가입률은 68.5%, 300인 이상 사업장은 70.7% 수준이다.

〈표 3-1〉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 및 가입 현황(2021년 기준)

(단위: 천 개소, %)

사업장 규모	도입				가입			
	전체 도입 사업장	도입 대상 사업장 (A)	도입 사업장 (B)	도입률 (B/A× 100)	전체 가입 근로자	가입 대상 근로자(A)	가입 근로자(B)	가입률 (B/A× 100)
합계 (구성 비중)	425 (100.0)	1,530 (100.0)	415 (100.0)	27.1	6,837 (100.0)	11,957 (100.0)	6,368 (100.0)	53.3
5인 미만	93 (21.9)	827 (54.0)	87 (21.1)	10.6	165 (2.4)	1,242 (10.4)	146 (2.3)	11.8
5 ~9인	132 (31.0)	389 (25.4)	129 (31.1)	33.1	511 (7.5)	1,461 (12.2)	441 (6.9)	30.2
10 ~29인	131 (30.8)	227 (14.8)	129 (31.2)	57.1	1,195 (17.5)	2,177 (18.2)	1,051 (16.5)	48.3
30 ~49인	29 (6.8)	39 (2.6)	29 (6.9)	73.0	551 (8.1)	892 (7.5)	502 (7.9)	56.3
50 ~99인	23 (5.4)	28 (1.8)	23 (5.5)	80.4	735 (10.7)	1,125 (9.4)	684 (10.7)	60.8
100 ~299인	13 (3.0)	15 (1.0)	13 (3.1)	87.0	1,056 (15.5)	1,457 (12.2)	999 (15.7)	68.5
300인 이상	5 (1.1)	5 (0.3)	5 (1.2)	91.4	2,623 (38.4)	3,601 (30.1)	2,545 (40.0)	70.7

주: 1) '사업장 규모'는 사업장별 연간 활동 기간의 평균 종사자 수(※ 일용근로자는 근무일수를 가중치로 적용하여 종사자 수를 산정)

2) 전체 도입 사업장은 가입 대상 근로자의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1인 이상 존재하는 사업장(도입 대상 사업장 중 도입한 사업장과 대상 외 사업장 중 도입한 사업장의 합)

3) '도입 대상 사업장'은 가입 대상 근로자가 1인 이상 존재하는 사업장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2022. 12. 19.), 2021년 퇴직연금 통계 결과

〈표 3-2〉는 우리나라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중·장년층의 퇴직연금 적용 현황(수급자 포함)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퇴직연금에 적용 중인 중·장년층(40세~64세)은 24.3%로 공적연금을 포함하면 75.9%로 나타난다. 성별 퇴직연금 가입자 비중을 보면, 남자 28.6%(공적연금 합산 시 82.2%), 여자

20.0%(공적연금 합산 시 69.6%)로 남자의 퇴직연금 가입 비중이 높다. 연령별로 보면 40~44세에서 가장 많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취업형태별로 보면 임금근로자가 41.2%, 임금·비임금근로 병행자가 25.2%, 비임금근로자가 12.5%로 퇴직연금 적용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에서 퇴직연금 적용 비율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수급자 혹은 IRP 가입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표 3-2〉 중·장년층의 퇴직연금 적용¹⁾ 현황(2021년 기준)

(단위: 천 명, %)

구분		가입자 수	비율
전체		4,902	(100.0%)
성별	남자	2,898	(59.1%)
	여자	2,004	(40.9%)
연령대	40~44세	1,134	(23.1%)
	45~49세	1,130	(23.1%)
	50~54세	1,152	(23.5%)
	55~59세	900	(18.4%)
	60~64세	586	(12.0%)
근로 형태	임금근로자	4,295	(87.6%)
	비임금근로자	299	(6.1%)
	임금·비임금근로 병행	146	(3.0%)
	미취업(미등록)자	162	(3.3%)

주: 1) 퇴직연금 납부자 및 수급자(장애·유족연금 포함) 모두 포함

2) 12월 말 기준 자료를 활용

자료: 통계청 (2022. 12. 20.), 2021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 p. 32.

다음으로, 퇴직연금 유지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어 일정 조건을 갖추게 되면 퇴직 전에 전액 인출할 수 있다(근퇴법 제22조). 중도인출은 주로 주택 구입(54.4%, 금액 기준 65.2%), 주거임차(27.2%, 금액 기준 23.5%)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인출되는 경향이 있다.³⁷⁾

37) 통계청 보도자료 (2022), 2021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p. 21.

중도인출이 발생하는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인원 기준으로 30대 45.1%, 40대 31.0%, 50대 13.9%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금액 기준으로 40대 35.4%, 30대 33.5%, 50대 24.3%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퇴직 전의 상당수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필요 자금이 많은 것으로 이해되고 특히 30~40대에서 많은 것은 주택 구입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퇴직연금과 주거와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3-3〉 퇴직연금 인출 사유·성·연령별 중도인출 현황

(단위: 명, 억 원,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인출 인원	인출 금액	인출 인원	인출 금액	인출 인원	인출 금액	인출 인원	인출 금액	인출 인원	인출금 액	인출 인원	인출 금액
합계	4,256 (7.8)	565 (2.9)	24,682 (45.1)	6,501 (33.5)	16,942 (31.0)	6,876 (35.4)	7,584 (13.9)	4,711 (24.3)	1,252 (2.3)	750 (3.9)	54,716 (100.0)	19,403 (100.0)
주택 구입	1,698	281	14,314	4,373	9,339	4,627	3,894	2,950	520	428	29,765 (54.4)	12,659 (65.2)
주거 임차	1,915	234	6,941	1,681	4,025	1,589	1,721	977	268	74	14,870 (27.2)	4,555 (23.5)
장기 요양	3	3	520	124	955	290	660	320	110	49	2,280 (4.2)	787 (4.1)
파산 선고	11	2	77	9	66	10	56	10	15	1	225 (0.4)	30 (0.2)
회생 절차	597	46	2,819	309	2,551	357	978	184	87	8	7,032 (12.9)	905 (4.7)
기타	-	0	11	4	6	4	275	270	252	189	544 (1.0)	467 (2.4)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2. 12. 19.), 2021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퇴직급여 및 퇴직연금과 주거의 관계를 김동진(2022)의 연구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동진(2022)은 한국노동패널 13~23차 자료를 이용해서 퇴직금 수령 이후의 주택자산, 임차보증금, 자가보유율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표 3-4〉 퇴직금 수령 전·후 주택자산 및 자가보유율 추이

(단위: 만 원, %)

구분	주택자산	자가보유율	임차보증금	총주택자산
t-3	9,978	73.9	1,094	11,072
t-2	10,390	75.3	1,197	11,587
t-1	10,359	74.1	1,384	11,743
t	11,432	76.8	1,268	12,699
t+1	12,504	75.9	1,122	13,626
t+2	12,606	75.5	1,221	13,827
t+3	12,547	77.1	908	13,455
t+4	12,149	77.3	719	12,868
t+5	12,099	77.8	748	12,847

주: 2019년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산출한 값이다.

자료: 김동진(2022),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 퇴직연금의 현황과 개편방안, 2022년 사회정책연합 학술대회 발표자료.

이에 따르면 퇴직금 수령 시점(t) 이후에 해당 자산이 주택 구입이나 임차보증금으로 전환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다만, 퇴직금 수령 후에 주택 구입, 주거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다소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령 전 3년, 수령 후 5년 동안의 변화를 동시에 제시하였다. 먼저 퇴직금 수령 전후 주택자산의 변화를 보면, 퇴직금 수령 3년 전에 약 1억 원이었던 주택자산은 퇴직금 수령 t시점을 지나 t+3기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택자산의 변화는 주택자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퇴직금을 활용하여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퇴직금의 영향이 반영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자가보유율은 관찰 시작 시점인 t-3에 73.9%에서 시작하여 75.3%, 74.1%로 다소 올랐지만 등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택 구입 시점에서는 76.8%로 급증하였다. 그 이후 다시 증감이 반복되기는 하나 자가보유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주택 구입 시점 이후의 변화는 주택가격의 변동에 따른 변화일 수 있다. 반면, 임차보

증금은 퇴직금 수령 전에는 증가하는 모습인데, 이는 당시 주택가격과 임차보증금의 상승이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이해되고 퇴직금 수령 시점에서 임차보증금의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는 주택 구입에 따른 전·월세에 주거하는 비율이 줄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총주택자산은 주택자산의 증가, 임차보증금의 감소 효과가 합산된 것인데 주택자산의 영향이 커 전반적으로 주택자산의 추이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된다.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퇴직금 수령 전·후의 주거 관련 자산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퇴직금 수령 이후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우보다 주택 구입 등에 활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중간정산이나 이직 시 해지하는 것, 그리고 55세 이후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한 이후의 퇴직금자산은 주거자산과 관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은 패널 DID 분석 등을 통해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주요 선진국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경제적 곤란 등 긴급자금수요 발생에 국한하여 중도인출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보다 사유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중도인출 시 인출금액은 대부분 누진소득세를 적용받게 되므로 일시에 모든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즉, 우리나라는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세를 적용받는데, 공제율이 높아 실효세율은 높지 않 인출의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³⁸⁾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인 주택 구입은 다른 사유와 달리 향후 주택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퇴직급여와 주택연금의 연계성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즉, 퇴직급여에 의해 구입된 주택에 대해서는

38) 강성호, 류건식, 김동겸(2017)에 의하면, 현행 퇴직급여의 퇴직소득공제율은 50.3%로 추정되고 수령 시 (적립금 대비) 실효세율은 일시금 4.4%(연금 1.2%)여서 일시금 수령에 대한 부담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김대환(2022)에서도 25년 근무자의 일시금 수령 시 실효세율은, 퇴직급여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억 1.7%, 2억 4.0%, 3억 6.0% 수준으로 추정하였으며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향후 주택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도 현실적 대책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도인출보다 심각한 것은 이직 시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이든 퇴직금이든 이직 시 모두 IRP 계좌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퇴직소득세만 납부하면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다. 이때 퇴직소득세의 공제율이 높아 실효세율이 낮아 이직 시 대부분 해지함에 따라 퇴직연금의 연속성이 매우 취약하다.

2021년 기준 IRP 해지 인원은 86만 명, 해지 금액은 11조 7천 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를 해지율로 환산하면 이전 인원에 대비하여 94.7%, 이전 금액에 대비하여 66.3%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규모는 2021년 중도인출 규모 1조 9천 억 원과 비교할 때 약 6.2배라는 점에서 상당한 규모라고 하겠다. 따라서, 퇴직연금 자산의 누수는 엄밀히 말하면 중도인출이 아니라 이직 시 해지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만, 수급 연령이 55세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여 이직 시 해지도 중도인출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 이직 시 해지는 퇴직³⁹⁾이고, 중도인출⁴⁰⁾은 재직 중 회사에서 퇴직자산을 인출하는 행위여서 법적으로는 엄연히 구분된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약 6.7년(2019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생애근로기간 동안 4~5회의 이직이 예상되는데, 생애근로기간 동안 1번이라도 해지할 경우 그 누수 금액은 상당하다. 2021년 현재 1인당 이전 금액은 1,930만 원이며, 1인당 해지금액은 1,351만 원 수준으로 분석된다.

39) 퇴직급여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40) 퇴직급여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표 3-5〉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및 해지 현황

(단위: 명, 억 원, %)

구분	IRP 이전			IRP 해지		
	이전 인원	이전 금액		해지 인원	해지 금액	
2015	784,530	106,649 <1,359>		717,155 (91.4%)	94,699 (88.8%) <1,320>	
2016	788,389	106,801 <1,355>		739,807 (93.8%)	105,762 (99.0%) <1,430>	
2017	779,187	114,529 <1,470>		749,625 (96.2%)	100,726 (87.9%) <1,344>	
2018	836,944	124,825 <1,491>		845,943 (101.1%)	108,470 (86.9%) <1,282>	
2019	844,123	138,982 <1,646>		864,801 (102.5%)	112,463 (80.9%) <1,300>	
2020	858,203	151,670 <1,767>		842,821 (98.2%)	110,521 (72.9%) <1,311>	
2021	913,201	176,274 <1,930>		865,116 (94.7%)	116,888 (66.3%) <1,351>	

주: 1) < >안은 1인당 이전 및 해지금액(단위: 만 원)

2) ()안은 이전인원(금액) 대비 해지인원(금액) 기준 해지율(단위: %)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2018), 2017년 하반기 및 연간 퇴직연금통계, p. 21; 통계청 보도자료 (2019.12.27), 2018년 기준 퇴직연금통계, p. 21; 통계청 보도자료 (2021), 2020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p. 21; 통계청 보도자료 (2022), 2021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p. 21.

나. 운용 단계: 낮은 투자수익률,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2년 기준 336조 원으로 이 중 원리금 보장형(대기성 자금 포함)에 298.0조 원(88.7%)이 투자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원리금 보장형에 대한 투자로 투자수익률이 낮은 경향이 있지만, 2022년의 경우는 주시시장의 급락 등으로 실적배당형 수익이 낮아져 전체 수익률은 0.02%로 나타났다. 낮은 투자수익률의 또 다른 원인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와 기업 간의 짧은 계약기간으로 인해 장기투자(현실적으로 1년 정도 계약)의 어려움이 있어 구조적으로 투자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퇴직연금의 운용 단계의 주요 이슈로는 투자수익률이 낮고, 자본시장 변동성이 커 실적배당형에 대한 투자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는 법정화되어 있어 비용 부담은 고정적이다.

여기서는 퇴직연금의 적립금 추이를 먼저 살펴보고, 투자수익률과 자본시장 변동성 문제, 그리고 총비용 부담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퇴직연금 적립금 추이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말에 296조 원에 이른다. DB형이 172조 원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DC형은 76조 원으로 25.8%를 차지한다. 특징적인 것은 개인퇴직계좌인 IRP가 2017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IRP가 본인 부담에 의한 기여가 있지만 이직 시 IRP 계좌로 적립액을 이전해야 한다는 특성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3-6〉 퇴직연금 유형별 적립액 추이

(단위: 십억 원, 12월 말 기준)

연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RP)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기업형	개인형		
'05	6	39.3	6	37.4	4	0	16	-
'06	502	66.3	201	26.5	51	3	757	(741)
'07	1,828	66.3	703	25.5	132	93	2,755	(1,998)
'08	4,582	69.3	1,614	24.4	269	147	6,612	(3,857)
'09	10,052	71.7	2,983	21.3	376	613	14,025	(7,413)
'10	20,983	72.0	5,153	17.7	540	2,472	29,147	(15,122)
'11	37,539	75.2	8,107	16.2	609	3,661	49,917	(20,770)
'12	49,699	73.8	11,956	17.8	664	5,028	67,346	(17,429)
'13	60,657	72.0	16,911	20.1	694	6,037	84,300	(16,954)
'14	75,528	70.5	23,278	21.7	727	7,536	107,069	(22,769)
'15	86,336	68.3	28,427	22.5	766	10,872	126,400	(19,332)
'16	99,621	67.8	34,190	23.3	815	12,405	147,030	(20,630)
'17	110,890	65.8	41,397	24.6	865	15,282	168,435	(21,405)
'18	121,167	63.8	48,745	25.7	928	19,187	190,026	(21,591)
'19	138,025	62.4	56,792	25.7	994	25,400	221,210	(31,184)
'20	153,936	60.2	66,115	25.9	1,074	34,417	255,543	(34,332)
'21	171,528	58.0	76,398	25.8	1,160	46,501	295,587	(40,045)

주: ()안은 전년 대비 증가한 적립금(신규 보험료+운용수익)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연금금융실, 2017년 12월 말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누적적립금 규모(~2016년 6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4), 2018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2017년 이후)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4.6), 2019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경제통계 종합정리(엑셀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4.5.), 2020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2.4.17), 2021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이러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위해 GDP 대비 퇴직연금 적립금을 살펴보면, 네덜란드 165.5%, 호주 113.0%, 미국 127.0%, 캐나다 85.1%, 13개 연금 선진국(P13) 평균 84.4%, 우리나라 11%(2017년 말, GDP 약 1,500조 원)로 나타나고 있다.

〈표 3-7〉 GDP 대비 퇴직연금 적립금 비율 비교

국가	네덜란드	호주	미국	캐나다	P13 ¹⁾ 평균	한국 ²⁾
비율	165.5%	113.0%	127.0%	85.1%	84.4%	11%

주: 1) P13은 13개 연금 선진국을 지칭

2) 한국은 2017년 말 기준(GDP 약 1,500조 원)

3) 각국의 퇴직연금 도입 시점: 네덜란드(1952년), 호주(1992년), 미국(1875년), 캐나다(1966년)
 자료: 류건식, 강성호, 김동겸(2016),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p.22 〈표 II-5〉 인용.

둘째, 퇴직연금 투자수익률을 살펴보면, 2015년 이후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이 2% 내외로 나타나는데,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간수익률을 보면 2015년 2.15%, 2016년 1.58%, 2017년 1.88%, 2018년 1.01%, 2019년 2.25%, 2020년 2.58%, 2021년 2.00%, 2022년 0.02%로 최근에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표 3-8〉 퇴직연금 제도 유형별·운용방법별 연간수익률의 연도별 추이

(단위: %)

권역	연도	DB	DC/기업형 IRP	개인형 IRP	전체
전체	2018	1.46	0.44	△0.39	1.01
	2019	1.86	2.83	2.99	2.25
	2020	1.91	3.47	3.84	2.58
	2021	1.52	2.49	3.00	2.00
	2022	1.51	△1.21	△3.14	0.02
원리금 보장	2018	1.54	1.72	1.28	1.56
	2019	1.74	1.94	1.52	1.77
	2020	1.74	1.69	1.27	1.68
	2021	1.45	1.28	0.97	1.35
	2022	1.79	1.94	1.78	1.83
실적 배당형	2018	△0.25	△5.52	△5.38	△3.82
	2019	3.88	7.63	7.51	6.38
	2020	4.89	13.24	11.95	10.67
	2021	2.85	7.34	7.32	6.42
	2022	△5.08	△16.92	△16.27	△14.20

주: 1) 총비용 차감 후 적립금 가중평균 수익률이며, 원리금 보장에는 대기성 자금 포함

2) △는 '-'를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6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4), 2018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4.6), 2019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4.5.), 2020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2.4.17), 2021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3.7.26.), 2022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5년, 10년 장기수익률을 살펴보면, 먼저 5년 수익률(총비용 차감 후, 연 환산)은 2021년 1.96%에서 2022년 1.51%로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연간 수익률에 비해 급락 수준은 아니다. 10년 수익률은 2021년 2.39%에서 2022년 1.93%로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3-9〉 퇴직연금 제도 유형별·운용방법별 장기수익률 현황

(단위: %, %p)

연도	구 분	DB	DC, 기업형 IRP	개인형 IRP	전체
2016	5년	2.77	3.06	2.64	2.83
	8년	3.55	4.04	3.68	3.68
2017	5년	2.39	2.31	2.67	2.27
	9년	3.29	3.20	3.53	3.18
2018	5년	1.91	1.97	1.46	1.88
	10년	3.11	3.53	3.09	3.22
2019	5년	1.75	1.92	1.51	1.76
	10년	2.75	3.00	2.75	2.81
2020	5년	1.70	2.14	1.92	1.85
	10년	2.48	2.76	2.55	2.56
2021	5년	1.67	2.37	2.36	1.96
	10년	2.22	2.73	2.49	2.39
2022	5년	1.63	1.52	1.13	1.51
	10년	1.96	2.05	1.67	1.93

주: 해당 연도 기준 과거 5년, 10년 동안의 수수료 차감 후 연 환산 수익률이며, 원리금 보장형에는 대기성 자금 포함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6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4), 2018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4.6), 2019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4.5.), 2020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2.4.17), 2021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3.7.26.), 2022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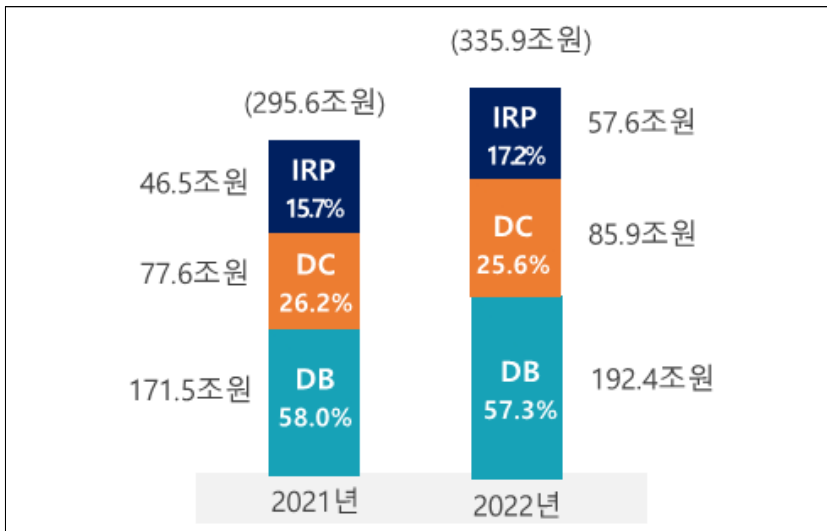
셋째, 자본시장 변동성 문제로 실적배당형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실적배당형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나 2022년 기준 11.3%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는데, 이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투자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전체 퇴직연금 자산 대비 실적배당 투자 비율은 2017년 8.4%, 2018년 9.7%, 2019년 10.4%, 2020년 10.7%, 2021년 13.6%, 2022년 11.3%로 나타났으며, 주식시장이 활황이던 2021년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2년 다시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난다. 한편, MZ세대를 중심으로 투자성향 변화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증가할 것으로 추측되나, 실제 실적배당형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게 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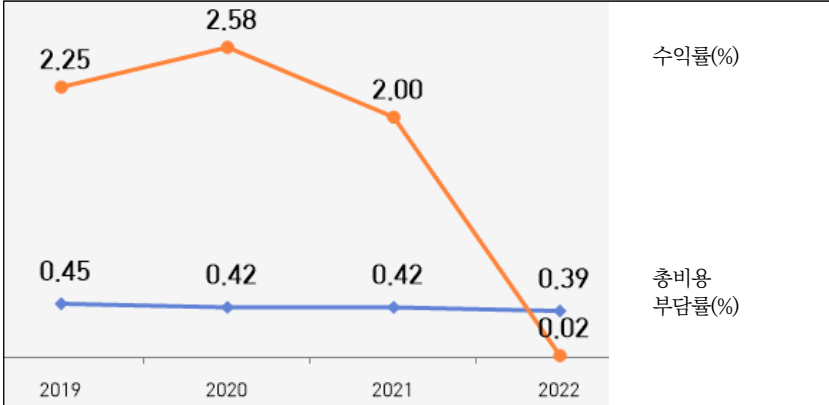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국가별 주가 추이를 비교해 보면, 미국, 호주 등 그동안 자본시장의 실적이 좋았던 국가들의 실제 주가 지수는 수십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우리나라의 주가는 박스권에 갇혀 있어 투자자의 시장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적배당형에 대한 투자도 많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 3-1] 퇴직연금 제도별 적립금 현황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그림 3-2] 퇴직연금 수익률 및 총비용부담률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넷째, 퇴직연금 수수료 등 비용 문제에 관한 것이다. 퇴직연금 총비용 부담은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와 펀드 비용(펀드보수⁴¹⁾(판매·운용·수탁·사무관리), 펀드판매 수수료⁴²⁾)를 합산한 값이다.⁴³⁾ 여기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펀드 수수료만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적립금, 투자금 대비 일정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

2022년 기준 퇴직연금 총비용부담률⁴⁴⁾은 적립금 대비 0.392%로 나타난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0.49%, 2016년 0.45%, 2017년 0.45%, 2018년 0.47%, 2019년 0.45%, 2020년 0.422%, 2021년 0.417%, 2022년 0.392%로 0.4~0.5% 범위에서 감소 추세를 띠는 것으로 이해된다.

41) 펀드보수(fee): 판매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서비스 제공 대가, 지속성)

42) 펀드판매 수수료(commission): 판매 행위에 대한 대가(매매 행위 대가, 일회성)

43) 보수(fee) 수수료

44) 연간 총비용(=운용관리 수수료+자산관리 수수료+펀드 총비용) ÷ 기말적립금

〈표 3-10〉 퇴직연금 제도 유형별 총비용 부담률 현황

(단위: %)

연 도	DB	DC, 기업형 IRP	개인형 IRP	전 체
2015	0.46	0.62	0.40	0.49
2016	0.38	0.62	0.46	0.45
2017	0.40	0.58	0.44	0.45
2018	0.41	0.60	0.46	0.47
2019	0.40	0.57	0.42	0.45
2020	0.367	0.564	0.394	0.422
2021	0.344	0.573	0.430	0.417
2022	0.319	0.550	0.396	0.392

주: 적립금 가중평균값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17.5.3), 2016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금융감독원 보도자료(18.3.22), 2017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4.8), 2018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현황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4.6), 2019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현황 통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4.5.), 2020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현황 통계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4.17), 2021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3.7.26.), 2022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2022년 기준 총비용부담을 운용관리 수수료·자산관리 수수료·펀드 비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각각 0.145%, 0.166%, 0.081%이다. 여기서 운용관리 수수료·자산관리 수수료는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나, 펀드 비용은 펀드 투자를 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절대액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3-11〉 퇴직연금의 총비용 부담률 현황

(단위: %, %p)

구 분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펀드 비용	전 체
2022년	0.145	0.166	0.081	0.392
2021년	0.158	0.174	0.085	0.417
증감	△0.013 (8.2% ↓)	△0.008 (4.6% ↓)	△0.004 (4.7% ↓)	△0.025 (6.0% ↓)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7.23.), 2022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무엇보다 주식시장 변동 등에 따라 실적배당형의 수익률도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자산운용 환경은 단기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식시장 변동성을 고려하면 펀드 같은 실적배당형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다. 개별 투자에 대한 한계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5년 동안 주가변동율을 보면 2018년 $\Delta 17.3\%$, 2019년 7.7% , 2020년 30.8% , 2021년 3.6% , 2022년 $\Delta 24.9\%$ 로 나타나고 있다.

2012~2013년 기준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은 2.6% 로 OECD 평균 9.9% 에 비해 $7.3\%p$ 낮다는 점은 퇴직연금 투자상품이 원리금 보장형 선호로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선진국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투자수익률과 비교할 때도 상당한 수익률 격차는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표 3-12〉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의 기금운용수익률 비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국민연금	10.37	2.31	6.99	4.19	5.25	4.57	4.69	7.28	-0.92	11.31	5.6
공무원연금	8.24	1.39	3.06	3.28	3.35	3.79	3.72	7.05	-1.70	9.3	4.1
사학연금	10.77	1.66	6.62	3.99	2.63	3.83	3.91	9.19	-2.45	10.94	5.1
퇴직연금	5.03	4.09	4.65	3.73	3.04	2.15	1.58	1.88	1.01	2.25	2.9

자료: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고용노동부; 남재우(2023),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 운용규제 완화뉴노멀 대응 전략, 3차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 금투협회/자본시장연구원

이로 인해 퇴직연금 지배구조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계약형만 허용되고 있는데, 선진국의 주요 유형인 기금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형 도입을 통해 현 퇴직연금 수익구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자본시장 발전 정도, 금융업권 간 이해관계 등 시장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신중론으로 인해 기금형 도입은 지연되고 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중퇴기금이 2022년에 시행되었는데, 이는 기금형으로 운영되는 제도여서 실제로는 기금형의 도입이 시작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준기금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적립금운용위원회도 2022년 4월에 이미 시행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300인 이상 DB사업장을 대상으로 적립금운용계획서(IPS)를 작성하여 기금형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계약형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2023년 7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디폴트옵션 제도도 적극적 투자를 위한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기금형 운영할 때 위원회 설치 등 고정비용의 증가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행 IDC형(개인 운용)과 같이 개별 운용지시 체계만 있을 경우 기금형 운용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집합투자가 가능하도록 CDC형의 병행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 지급 단계: 일시금 선호 및 연금화에 불리한 환경 조성

퇴직연금 지급 단계의 주요 이슈는 일시금을 선호하고 연금화를 하게 될 경우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첫째,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되고 있다. 소위 연금퍼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연금퍼즐이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일시금보다 유리함에도 현실적으로 연금 수령보다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제도 유형이 DC이거나, 연금가격 산정의 불공정성, 유산상속, 의료비 지출, 비유동성, 인플레이 위험, 교육비, 자녀 결혼, 주거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연금퍼즐 현상이 존재한다고 보는 몇몇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lickman, M. and Kuehneman, G.(2006)는 퇴직연금제도 유형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DC형 제도는 근본적으로

연금퍼즐 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우(2013)는 건강 문제로 인한 의료비 지출 과다가 예상될 경우 종신연금 선택이 유동성 부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용 지출이 연금 형태의 수급을 선호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보았다. 나혜림·최현자(2014)는 연금 가입을 기피하는 것을 연금퍼즐로 정의하는데, 이는 수급 시점에 연금 대신 일시금 선호를 의미하는 일반적 연금퍼즐 현상과 다르게 보는 견해이다.

〈표 3-13〉 연금퍼즐 및 연금화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 주요 선행연구

연구자	연금퍼즐 원인
Glickman, M. and Kuehneman, G.(2006)	가입된 제도 유형(DC)
Olivia et al.(1999) Milevsky and Young(2007) 김지희(2012)	연금가격 산정의 불공정성 (연금상품 관련 사업비 과다 책정, 사망률 과대 추정으로 인한 비용 전가 등)
Friedman and Washawsky(1990) Michaelides and Inkmann (2012) Lockwood(2012) Ameriks et al.(2011)	유산상속
Pang and Warshawsky(2010) Poterba, Venti and Wise (2011) Ameriks et al.(2011) 이경우(2013) ¹⁾	의료비용
Mitchell (2008) Pang and Warshawsky(2010)	연금의 비유동성
Pang and Warshawsky(2010)	인플레이션 위험
Brown and Nijman(2011)	적립금의 통제 및 자산운용 권한 부재
Greenwald and Associates(1999) ²⁾ 나혜림·최현자(2014) ³⁾	교육비, 자녀 결혼, 주거비
기타	소득, 자산, 가구구성 형태 등

주: 1) 이경우(2013)는 건강 문제로 인한 의료비 지출 과다가 예상될 경우 종신연금 선택이 유동성 부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수급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2) Morgan and Eckert, 2004, p.4(나혜림·최현자, 2014 재인용)

3) 나혜림·최현자(2014)는 연금 가입을 기피하는 것을 연금퍼즐로 정의하고 있어 수급 시점에서 연금 대신 일시금 선호를 의미하는 일반적 연금퍼즐 현상과 다르게 보고 있음.

자료: 최경진(2015); 류건식, 강성호(2016), 퇴직연금 연금선택 실태와 연금화 결정요인 분석. 연금연구 제6권 제2호.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만 55세 이상 퇴직급여 대상자 중 일시금 선택 비율은 92.9%로 연금 수령 비율은 7.1%에 그치고 있다. 연금 수령 비율(계좌 기준)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9%(2017년), 2.1%(2018년), 3.3%(2020년), 4.3%(2021년), 7.1%(2022년)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다.⁴⁵⁾ 물론 퇴직연금제도가 아직 성숙되지 않아 연금 수령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가능하나 제도 도입 18년을 경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낮다고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 현상은 앞에서 살펴보듯이 수급 직전 시점까지 쌓인 소액의 적립금이 주요 원인으로 이해된다. 현재 55세 이상자의 일시금 평균 수령액은 2천 5백만 원인데, 이는 연금화를 유인하기 매우 부족한 금액이다. 55세 전후에 자녀 교육비, 자녀 결혼비 등이 지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의 일시금 선택 가능성은 노후자산으로 이어지지 않을 유인을 더욱 증가시킨다.

〈표 3-14〉 퇴직급여 유형별 수령 현황(2022년 기준)

(단위: 좌, 억 원, %)

구 분	연금 수령		일시금 수령		합 계	
		비 중		비 중		비 중
계좌 수(A)	32,566	7.1	424,902	92.9	457,468	100.0
금액(B)	50,639	32.6	104,474	67.4	155,113	100.0
계좌당 금액(B/A)	1.55	-	0.25	-	0.34	-

자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2023.7.16). 2022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bbsView.do?bbs_seq=20230701526 에서 2023.7.20. 인출.

45)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2023.7.16). 2022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bbsView.do?bbs_seq=20230701526 에서 2023.7.20. 인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수령 주기가 매우 짧다는 점인데, 대부분 10년 이하의 연금 수령 기간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하겠다. 이러한 이유에는 종신연금을 수령할 만큼 적립금이 많지 않거나 미래 물가상승률 등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종신연금을 꺼리는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연금화할 경우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는 최근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부과체계가 변화했는데 이에 따라 연금화 전환 시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2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에 연금소득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유관 제도의 변화도 퇴직연금 연금화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 사실 이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경우 연금소득의 50%를 건강보험 부과 대상 소득으로 넣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⁴⁶⁾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따라 사적연금 소득까지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하게 되면 연금수급자 중 2,000만 원 이상 소득자는 훨씬 많아질 것이고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연금생활자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지위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납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의미이다. 당연히 소득이 증가하면 건보료 부담도 지는 것이 타당하지만, 사적연금제도와 같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수급 시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도 운영의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46) 성혜영, 정창률, 전승훈, 강성호(2022), 연금수급자의 사회보험 및 조세부담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표 3-15〉 연금소득관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내용과 근거법령

구분	주요 내용	법령
보험료 면제 기준	부과소득 이하 소득자(피부양자)	
부과소득 기준	보수월액, 소득월액(종합소득 형태, 연금소득포함)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건보법 \$70; \$71; \$72
연금소득 정의 및 포괄범위	공·사적연금소득(소득세법 \$20의 3 수용) : 연금계좌 내 퇴직소득을 연금소득으로 적용	건보법령 \$41; \$42
보험료 공제 여부	규정 없음	
분리과세 여부	분리 부과 기준이 없어 모든 연금소득은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연금계좌 내 퇴직소득도 연금 수령 시 부과 대상 가능) : *연금소득은 관행적으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개편 논의에 따라 부과 가능	-
이연퇴직소득세 할인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퇴직소득 과세	퇴직소득(퇴직금)은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	건보법령 \$33

자료: 성혜영·정창률·전승훈·강성호(2022), 연금수급자의 사회보험 및 조세부담 연구, 국민연금 연구원, p. 127. 재구성

연금소득세를 적용할 경우와 비교할 때 분리과세 기준이 없어 연금계좌 내 퇴직소득도 연금 수령 시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충분히 검토한 후 부과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즉, 소득세 부과에 있어 퇴직소득(퇴직급여가 원천인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고, 종합소득세에서는 제외함에 따른 과부담의 문제가 없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부과에 있어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퇴직소득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건강보험료를 추가하여 부담하게 되는 구조이다.

라. 세제지원 등: 세제지원의 비일관성으로 연금제도 운영 비효율

여기서는 퇴직연금제도를 둘러싼 환경 요소로 연금세제에 대해 살펴본다. 연금세제 지원과 관련한 주요 이슈는 세제 혜택이 적고, 퇴직연금 전환 및 연금화 유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첫째, 연금세제 혜택 수준이 낮다는 점이다. 이는 납입액에 대한 공제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⁴⁷⁾에 따라 세제 혜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된다. 이는 퇴직급여분(사용자 부담)이 아니라 개인형 IRP와 DC형의 본인 기여분에 적용되는 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낮다는 지적이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 본인 기여분(IRP 납입액⁴⁸⁾)과 연금저축의 납부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세액공제 대상 금액 상한은 2015년 이후 연간 700만 원, 2020년부터 5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서는 연간 900만 원(200만 원 추가)까지 추가로 가입 가능하였고,⁴⁹⁾ 2023년부터는 모든 가입자에 대해 연간 900만 원으로 확대하였다. 대상 금액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지방세 포함 시 13.2%)⁵⁰⁾가 적용되어 세액공제 혜택은 최대 연간 108만 원(900만 원×12%)이다.

이러한 연금세제의 특징을 변천 과정을 통해 정리해 보면, 세액공제로 전환, 공제한도 확대, 연금화 강화 등을 위한 연금세제 개편으로 정리할 수 있다. 세제 원칙을 세액공제로 전환한 이후 공제한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으며, 퇴직소득 정률공제 축소 및 폐지, 분리과세 대상 조정 및 한도 확대, 연금세율 인하 및 차등 적용, 연금화 강화 등의 조치가 있었다. 이는 근로자 납입분에 대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한편, 퇴직급여 부담 주체인

47) 2014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됨

48) 퇴직연금 본인 기여금은 DC 및 IRP에 납부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IRP납입액'으로 정의함

49) 50세 이상 가입자는 2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납부 가능해 최대 600만 원(IRP 포함 시 900만 원)이 연금세제 공제 대상 금액이 됨(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9.7.25.), 2019년 세법개정안; 강성호·류건식(2019), 2019년 연금세제 개편의 내용 및 평가, KiRi리포트 포커스, 보험연구원)

50)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인 15%(지방세 포함 시 16.5%)가 적용됨

사용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적립액 손비 한도의 축소 및 폐지 등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 사외적립, 즉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조치와 관련된다고 하겠다.

〈표 3-16〉 우리나라 사적연금 세제의 주요 변천 내용

구분	내용	법률 근거
공제한도 확대 및 세액공제로 전환 (퇴직연금 + 연금저축)	연 300만 원→400만 원(2011년)→700만 원(2015년) →700만 원+ α (2020년) : 2014년 세액공제(13.2%)로 전환 : α 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환금, 50세 이상 추가 세액공제를 뜻함	소득세법 59의 3, 조특법 86의 4
퇴직소득 정률공제 축소 및 폐지	퇴직소득 금액의 45%→40%(2011년~) →퇴직소득 수준별 차등 공제 ⁵¹⁾ (35~100%, 2014년~) →퇴직소득 정률공제 폐지(2016년~) ⁵²⁾	소득세법 48 ①
분리과세 대상 조정 및 한도 확대	대상: 공적연금+사적연금→사적연금(2013년~) 한도: 연 600만 원→1,200만 원(2013년~)	소득세법 14 ③
연금세율 인하 및 차등 적용	사적연금 5%→연령 및 유형별 3~5%(2013년~) : 일반적/70세 이전 5%, 중신연금/70대 4%, 퇴직소득/80 세 이후 3%	소득세법 129 ①
연금화 강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 경감(2015년~)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초과 시 40%를 경감(20년~)	소득세법 129 ①
퇴직급여 적립액 손비한도 변화 (사용자)	퇴직급여 충당금(사내유보) : 퇴직급여 추계액의 30%(2010년)→매년 5%씩 축소(2011년~) ※ 2016년부터는 0% (손급산입 불허)	법인령 60 ②
	퇴직연금 보험료(사외적립) DC: 보험료 전액 손비 인정 DB: 법인령 제44조의 2 ④ 참조	법인세법 28, 법인령 44의 2

주: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 법인령은 '법인세법 시행령'을 의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연금세제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보험료(납부액) 대비 연금세제 혜택 수준을 살펴보면, OECD는 약 26%이
고⁵³⁾ 우리나라는 DB형 17%, DC형 14%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51) 근속연수와 환산급여에 따른 소득공제(소득세법 48 ① 1, 2호)

52) <http://retirement.miraeasset.com/contents/view.do?idx=11075>

〈표 3-17〉 OECD 주요국의 사적연금 운영 단계별 세제 혜택

(단위: %)

국가	제도 유형	과세체계	세제 혜택			
			납입	운용	인출	합계
호주	적격 퇴직연금	ttE	22%	15%	0%	37%
칠레	퇴직연금(의무)	EET + 매칭	5%	7%	-1%	11%
독일	Pension funds	EET	26%	14%	-20%	20%
	Riester 연금	EET + 보조금	14%	14%	-9%	19%
일본	기업형 DB 제도	EEt	31%	15%	-21%	24%
	기업형 DC 제도	EEt	31%	15%	-19%	26%
	개인형 DC 제도	EEt	31%	16%	-16%	31%
한국	DB형 퇴직연금	EEt	18%	17%	-17%	17%
	DC형 퇴직연금	tEt(세액공제)	16%	17%	-18%	14%
멕시코	퇴직연금(의무)	tEt + 매칭 + 보조금	33%	18%	0%	51%
	퇴직연금	EEt	22%	18%	0%	40%
네덜란드	DB형 퇴직연금	EET	48%	26%	-42%	32%
	DC형 퇴직연금	EET	49%	24%	-41%	32%
뉴질랜드	퇴직연금	ttE	1%	2%	0%	3%
	KiwiSaver	ttE + 매칭	12%	-1%	0%	11%
스웨덴	퇴직연금(준의무)	EtT	44%	4%	-35%	13%
스위스	퇴직연금(의무)	EET	31%	18%	-18%	31%
영국	DB형 퇴직연금	EET	31%	26%	-28%	30%
	DC형 퇴직연금	EET	31%	26%	-23%	34%
	자동가입형	EET + 매칭	46%	25%	-23%	48%
미국	401(k) 제도	EET + 세액공제	25%	21%	-22%	24%
	IRA	EET + 세액공제	25%	22%	-21%	26%
	Roth IRA	TEE + 세액공제	0%	22%	0%	22%
전체			26%	17%	-16%	26%

주: 1) 보험료 대비 세제 혜택 비율임

2) 전체는 단계별 세제 혜택의 비율을 단순 평균한 값임

자료: OECD(2016), Pensions Outlook, p. 63; 강성호, 류건식, 김동겸(2017)을 참고하여 재정리

53) OECD(2016), Pensions Outlook; 강성호, 류건식, 김동겸(2017)을 참고하여 정리하되, 26%는 OECD 국가 중 제시된 통계의 단순평균 값으로 산출함

둘째, 퇴직연금 전환 유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퇴직연금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 퇴직급여법은 보수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퇴직금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사업장으로 전환 시 사외적립에 따른 기회비용의 증가로 퇴직연금제도 전환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영세사업장의 경우가 더욱 그렇다고 하겠다. 여기서 기회비용의 의미는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퇴직금 사업장)은 해당 퇴직급여를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퇴직연금 사업장으로 전환하게 되면 퇴직급여를 사외적립하여야 하므로 그만큼 사내 운영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 운영을 위해 다른 곳에서 자금을 융통해 와야 하는데, 영세사업장일수록 기회비용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환비용에 대해 영세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이 없다는 점이 퇴직연금 전환을 더디게 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연금화 유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퇴직소득 공제율이 높아 퇴직소득세 부담이 낮아 일시금으로 수령할 유인이 높다는 것을 들 수 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퇴직급여의 총합산액은 39조 원(1인당 1,604만 원)이고, 여기에 적용되는 퇴직소득 공제는 19조 7,950억 원(1인당 807만 원)으로 퇴직소득 공제율은 50.3%로 추정된다. 퇴직소득 공제로 인해 실제 퇴직급여의 49.7%인 19조 5,650억 원(1인당 797만 원)만 과세 대상 소득(과세표준소득)이 되므로 퇴직소득세는 1조 7,340억 원(1인당 71만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퇴직소득세 산출과 관련하여 유의사항으로 실제 산출은 개인별로 산출되어 합산하는 방식이 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와 차이가 있다.

〈표 3-18〉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

(단위: 십억 원, %)

퇴직 급여(A)	퇴직 소득 공제(B)	퇴직 소득 공제율 (B/A)	과세표준소득 (A-B)	퇴직소득세 (결정세액, C)	실효 퇴직소득세율	
					퇴직급여 대비 (C/A)	과세표준 대비 (C/(A-B))
39,360 (1,604만 원)	19,795 (807만 원)	50.3%	19,565 (797만 원)	1,734 (71만 원)	4.4	8.9

주: () 안은 1인당 수준임

자료: 2016년 국세통계연보 (4-4-2.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현황Ⅱ(퇴직급여액, 과세표준)); 보험연구원, 2017.

마. 제도 간 연계: 공·사 연금제도 간 다층적 연계성 미흡

여기서는 퇴직연금제도를 둘러싼 환경 요소인 제도 간 연계에 대해 살펴본다. 이와 관련한 주요 이슈는 적정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목표 수준과 역할 분담이 설정되지 않고, 제도 간 연계성도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는 물론 퇴직연금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 다층 노후소득체계 전반에 걸친 연계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즉,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제도가 형식적으로 갖추어져 있지만 실질적 연계성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의 연금개혁 과정을 보면 공적연금은 기본적 보장, 사적연금은 적정 보장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인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리스터연금(2001년), 스웨덴의 프리미엄연금(1998년), 영국의 NEST 퇴직연금제도(2012년)의 도입은 공적연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적연금제도의 연계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 3-3] 선진국의 공적연금 개혁과 사적연금 역할 강화

주요국의 공적연금 개혁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
• 연금급여수준 축소,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 * 연금급여수준 축소: 독일 70% → 53%, 일본 70% → 59% * 수급개시연령 조정: 미(84년, 65→67세), 독(07년, 65→67세), 일('00년, 60→65세) • 구조개혁: 기존제도의 틀 전환 * 스웨덴: "기초연금+소득보충연금" 폐지 후 명목확정기여방식의 소득보충연금 전환('98) * 칠레 등 남미국가: 공적연금 민영화 추진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보장제도의 강화 * 영국: 연금크레딧, 독일: 노인·장애인 전용 기초보장제도, 스웨덴: 최저보충연금제도	• 세제지원형 사적연금 도입 * 독일: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 * 스웨덴: 프리미엄연금 • 사적연금 가입의무화 * 영국의 NEST 연금제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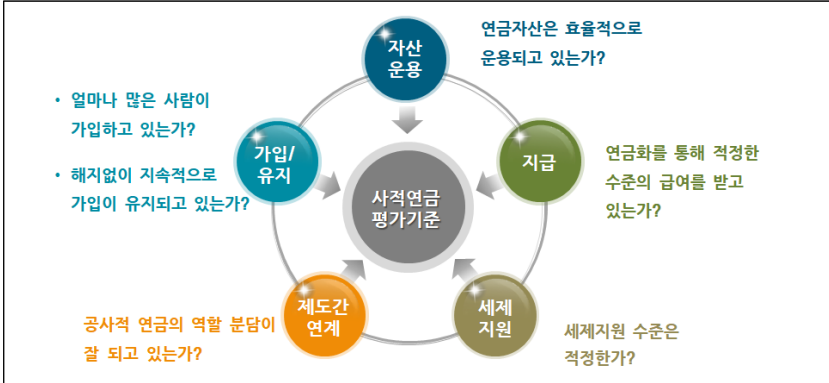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연금학회 공동세미나(2023)

연금제도 간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부처별로 별개로 운영하고 있는 공·사연금제도를 종합적으로 통제할 기구가 부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연금포털사이트를 통해 개인 자산의 연금자산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금자산 과부족의 문제를 전제적으로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노후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에는 한계가 있다.

바. 평가기준

현행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서 제도적 및 환경적 요소로 구분하여 5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제도적 요소의 평가는 제도 운영과정에 평가로 가입/유지, 자산운용, 지급 단계의 3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환경적 요소로는 세제지원, 제도 간 연계의 2가지 요소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 평가한다.

[그림 3-4] 퇴직연금 평가요소 및 평가기준



먼저, 제도적 요소에 대한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입/유지에 대한 평가 내용으로는 퇴직연금제도에서 포괄하려는 대상자가 제도 내로 얼마나 가입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며, 또한 이들 가입자가 제도에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산운용에 대한 평가는 적립된 퇴직/노후자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수익률에 대한 평가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급 단계에 대한 평가내용은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때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의 지급(연금화)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환경적 요소에 대한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제 지원에 대한 평가 내용으로는 주요 연금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러한 지원 수준이 퇴직연금의 가입 및 유지, 그리고 연금화에 적절한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끝으로 제도 간 연계에 대한 평가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등 다양한 노후소득보장제도들이 존재하는데 이들 연금제도 간의 역할 분담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2. 주택연금 현황 및 문제점

가. 소득보장 효과

주택연금은 다층연금 수급 사각지대 해소에 유용한 노후소득 마련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다수의 연구를 통해 높은 소득보장 효과가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문헌을 살펴보면, 백인걸·최경진(2020)은 주택연금 가입자의 소득보장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활용하였다. 여기서 소득대체율은 주택연금 가입 전 월 소득 대비 주택연금 월지급금의 비율이며 소득대체율을 산정하기 위해 2016~2018년 주택연금수요 실태조사의 주택연금 이용 가구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소득대체율 산정 결과 <표 3-19>와 같이 주택자산 5분위별 55~89%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에 비례하여 산정되므로 주택자산 분위가 높을수록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19> 주택자산 분위별 주택연금 소득대체율

(단위: 백만 원, %)

주택자산 분위	주택가격	주택연금 가입 이전 평균소득	주택연금의 평균 월지급금	주택연금 소득대체율
1분위	137	1.17	0.52	55
2분위	205	1.45	0.74	65
3분위	265	1.65	0.89	69
4분위	339	1.80	1.08	74
5분위	503	2.40	1.55	89
전체	290	1.69	0.96	70

자료: 백인걸·최경진(2020)

최경진·백인걸·한정림(2021)은 2019년 기준 만 65세(1954년생)에 해당하는 주택연금 가입자 1,92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중위) 월

지급금은 약 47만 원(약 40만 원)이며 개인별 소득대체율의 평균(중위값)은 약 26.2%(19.9%)로 나타났다. 1954년생 주택연금 가입자 1,921명 중 986명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력이 없거나 은퇴 전 생애평균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었다.

최경진·백인걸·한정림(2021)이 이용한 소득대체율의 정의는 백인걸·최경진(2020)과 달리 생애평균소득 대비 월지급금의 비율이다. 또한, 주택연금은 공·사적연금과 달리 가구 단위로 가입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소득대체율 산식에서 사용한 월지급금은 개인별 소득대체율 산정을 위해 부부 또는 공동명의 주택 소유 가구의 경우 월지급금의 50%를 반영하였다.

또한, 최경진·백인걸·한정림(2021)은 1954년생 주택연금 잠재 수요층의 주택연금 가입 시 예상되는 소득보장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잠재수요층 가입 시 예상되는 평균(중위) 월지급금은 약 74만 원(약 54만 원)이며 평균(중위) 소득대체율은 38.2%(28.4%)로 예상되었다.

다음으로 인구구조 고령화로 기초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노후소득 강화뿐만 아니라 근로 세대의 재정 부담 완화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감사원(2020)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택연금을 통한 소득보장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택연금을 활용한 소득보장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2019년 기준 사회보장정보원의 기초연금 수급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초연금 수급자 중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계층이 어느 정도이며, 이들이 실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예상되는 월지급금은 얼마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9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4,813,776명 중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인원은 약 55만 명(일반형: 143,963명, 우대형: 405,359명)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11.4%를 차지하였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평균 월지급금은 약 46만 원(일반형은 약 105만 원, 우대형은 25만 원)이며, 중위 기준은 약 29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그 밖에 강성호·김경아(2008)는 노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주택연금 소득보장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연금의 평균 연금소득대체율은 주택에 대한 담보 인정 비율에 따라 35.6~59.4%로 나타났다.

나. 소비 진작 효과

백인걸·최경진(2020)은 주택연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계소비성향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한계소비성향은 주택연금 이용 가구의 소득에 따른 총소비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소득원천별로 한계소비성향을 분석한 결과, 주택연금은 0.96, 근로사업소득 0.64, 공적연금은 0.76으로 주택연금이 근로사업소득, 공적연금보다 높은 한계소비성향을 가진 소득원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100만 원 발생한다면 이 중 96만 원이 소비로 이어지나,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동일한 금액에 대해 64만 원, 공적연금의 경우 76만 원만 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주택연금의 한계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이 종신까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주택연금을 통한 노후소득원 확보가 미래 소득 흐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어 월지급금의 대부분을 소비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높다. 반면,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연금과 같이 지속적인 미래 소득 흐름이 아닌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소득 단절 이후 소비활동의 평탄화를 위해 소득의 상당 부분은 저축 또는 투자되기 때문에 한계소비성향이 주택연금보다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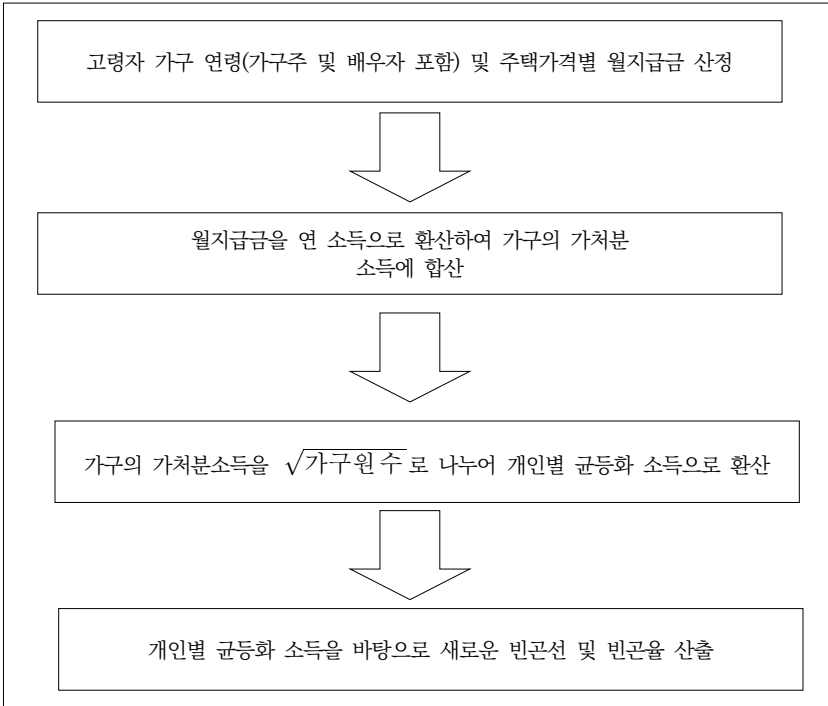
다. 노인빈곤 완화 효과

주택 등 실물자산은 소비재이면서 투자자산의 성격을 갖기에 이를 고려한 빈곤율 측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노후소득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령층은 공적연금 등을 통한 노후생활 영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 등 실물자산 구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Castles(1998)는 자가주택 거주 비율이 높으면 관대한 연금에 대한 필요가 줄어든다고 언급하였다. Kemeny(2005)도 노후소득이 부족한 국가의 고령자들은 주택을 장래 경제적 안정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삼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주택 등 실물자산 보유 비중이 높은 국가는 현재의 소득 중심의 노인빈곤율 산정 방식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미 OECD(2013)와 Stiglitz et al.(2009)은 소득 중심의 노인빈곤율 측정 방식의 문제점을 주장하였다. 특히, OECD(2014)는 현금소득만으로는 고령자의 빈곤 위험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다수의 학자들은 현금소득뿐만 아니라 가구가 보유한 자산도 포함하여 빈곤율을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Azpitarte 2012; Brandolini et al. 2010; Kuypers and Marx, 2018; Stiglitz et al. 2009).

Choi et al.(2022)은 우리나라 고령층은 자가주택 소유 비중이 높고 주택자산 유동화의 대표적인 수단이 주택연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주택자산을 포함한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을 산정하였다. 주택자산을 고려한 빈곤율 산정을 위해 [그림 3-5]와 같은 프로세스를 적용하였다.

[그림 3-5] 주택자산을 고려한 빈곤율 산출 프로세스



자료: 저자 작성

주택자산을 고려한 빈곤율 산정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고려한 빈곤선은 2017년 1,320만 원, 2018년 1,372만 원, 2019년 1,431만 원이었다. 또한, 이를 고려한 65세 이상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2017년 31.7%, 2018년 30.6%, 2019년 29.4%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연금 월지급금 반영 이전 대비 주택연금 월지급금 반영 후 65세 이상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약 10.9~11.1%p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자산을 보유한 고령층이 실제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노후 빈곤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3-20〉 주택연금 반영 전·후 빈곤선 및 상대적 노인빈곤율

(단위: 만 원, %, %p)

연도	주택연금 월지급금 반영 전		주택연금 월지급금 반영 후		차이	
	빈곤선	상대적 노인빈곤율	빈곤선	상대적 노인빈곤율	빈곤선	상대적 노인빈곤율
2017	1,275	42.6	1,320	31.7	45	10.9
2018	1,324	40.8	1,372	30.6	48	10.2
2019	1,378	40.5	1,431	29.4	53	11.1

자료: Choi et al.(2022).

주택연금의 빈곤율 개선 효과는 다른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성주·박선영·김유미(2015)는 재정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택연금의 노인빈곤율 완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 가구 전체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의 빈곤율 감소 효과를 산출하였다. 만약 주택연금 가입 대상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연평균 455만원의 소득이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30.4%에서 18.8%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장수 효과

주택연금 가입자의 소득보장 및 빈곤완화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연금 가입자는 일반 국민에 비해 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진(2021)은 주택연금 가입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정한 주택연금 경험 생명표와 국민 생명표를 비교한 결과, 주택연금 가입자의 기대여명이 전체 국민 대비 3.7~5.0세 높다고 밝혔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장수 효과는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는 가입자의 장수로 인한 대위변제손실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으나 가입자 측면에서는 주택연금이 가입자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3-21〉 주택연금 가입자와 일반국민의 기대여명 비교

(단위: 세)

연령 (연소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	일반국민	차이
55	39.6	34.6	5.0
60	34.7	29.7	5.0
65	29.7	25.0	4.7
70	24.7	20.3	4.6
75	20.1	15.8	4.3
80	15.5	11.8	3.7

자료: 최경진(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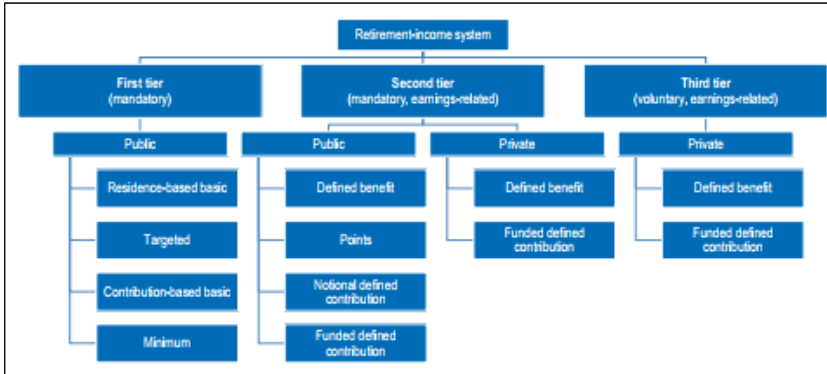
제2절 해외 사례

1. 노후소득보장 수준 비교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3층 노후소득보장의 측면에서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적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 또는 강제성 여부에 따라 사적연금이 보완적 역할을 하거나, 공적연금의 소득보장을 다소 낮추고 자발적인 사적연금 가입 활성화를 유도하기도 한다.

연금제도의 유형은 총 3층으로, 1층과 2층의 경우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을 망라한 강제적 연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3층에서 자발적 연금을 다루고 있다. 1층에서는 노인빈곤을 방지하기 위한 최저 생활수준을 충족시키는 연금제도 유형을, 2층에서는 소득비례연금을 포괄하고 있다.

[그림 3-6] 소득보장체계 공·사적 유형 분류(OECD 기준)



자료: OECD(2022), Pensions at a Glance 2021; OECD AND G20 INDICATORS, p.123.

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과 강제적 또는 준강제적인 사적연금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도 유형이 DB인 국가는 공적연금에서는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20개국, 강제적 사적연금에서는 스위스를 포함한 2개국이 적용하고 있다.

제도 유형이 DC인 국가는 강제적 사적연금에서만 호주를 포함한 12개국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그 외 명목계정과 포인트를 사용하고 있는 일부 국가가 있다. 강제가입 제도 중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적연금(DB형 위주)으로, 일부 국가에서 사적연금(DC형 위주)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강제적 사적연금 및 자발적 사적연금제도는 활성화되지 않는데,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오스트리아 등은 공적연금만으로 소득대체율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등의 경우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강제적용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통해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22〉 OECD 소득보장체계에서 총소득대체율 비교(평균소득자 기준)

(단위: %)

구분		강제가입			자발적 가입(다)	총 소득대체율 (가+나+다)
		공적연금 (가)	사적연금 (나)	소계 (가+나)		
공적연금 만 적용	Austria	74.1		74.1		74.1
	Columbia	74.8		74.8		74.8
	Costa Rica	60.1		76.8		76.8
	Czech Republic	49.0		49.0		49.0
	Finland	56.6		56.6		56.6
	France	60.2		60.2		60.2
	Greece	72.6		72.6		72.6
	Hungary	62.5		62.5		62.5
	Italy	74.6		74.6		74.6
	Korea	31.2		31.2		31.2
	Latvia	43.4		43.4		43.4
	Luxemburg	76.6		76.6		76.6
	Poland	30.6		30.6		30.6
	Portugal	74.9		74.9		74.9
	Slovak Republic	53.1		53.1		53.1
	Slovenia	42.0		42.0		42.0
	Spain	73.9		73.9		73.9
	Turkey	73.3		73.3		73.3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강제) 적용	Australia	0.0	31.3	31.3		31.3
	Chile	0.0	31.2	31.2		31.2
	Costa Rica	60.1	11.8	71.9		71.9
	Denmark	29.5	50.5	80.0		80.0
	Iceland	0.0	51.8	51.8		51.8
	Netherlands	29.2	40.5	69.7		69.7
	Norway	39.4	6.6	46.0		46.0
	Sweden	41.3	12.0	53.3		53.3
	Switzerland	22.1	22.1	22.1		44.1
	United Kingdom	21.6	27.4	49.0		49.0

구분		강제가입			자발적 가입(다)	총 소득대체율 (가+나+다)
		공적연금 (가)	사적연금 (나)	소계 (가+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강제, 자발) 모두 적용	Belgium	43.4		43.4	8.7	52.2
	Canada	38.8		38.8	24.5	63.3
	Estopia	27.9		27.9	12.4	52.5
	Germany	41.5		41.5	14.1	55.7
	Ireland	29.7		29.7	30.5	60.2
	Israel	10.2	31.3	41.5	15.0	56.5
	Japan	32.4		32.4	23.1	55.4
	Lithuania	19.7		19.7	15.6	35.3
	Mexico	15.2	46.0	61.2	17.3	78.5
	New Zealand	39.8		39.8	20.8	60.6
	United States	39.2		39.2	42.1	81.3
OECD 평균		42.2		51.8		57.6

주: 1) 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서로 이질적이고 해당 국가의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한계가 있음

2) 호주, 칠레, 아이슬란드의 경우 평균소득 기준으로는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0'이지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제도가 있음

자료: OECD(2022), Pensions at a Glance 2022, p.141. 인용하여 재작성

OECD에서 2015년에 분석한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소득대체율 분석은 국민연금만을 분석한 것으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제외하고 있다(OECD, 2015). 소득대체율 분석 결과, 평균소득자의 총소득대체율은 약 39.3%, 연금자산은 약 7.2배⁵⁴⁾(여자의 경우 약 8.4배)로 나타난다. 국민연금 분석에 적용된 가정은 가입기간 40년, 명목 소득대체율은 2028년에 신규로 가입한다고 가정함에 따라 40년 가입 시 40%로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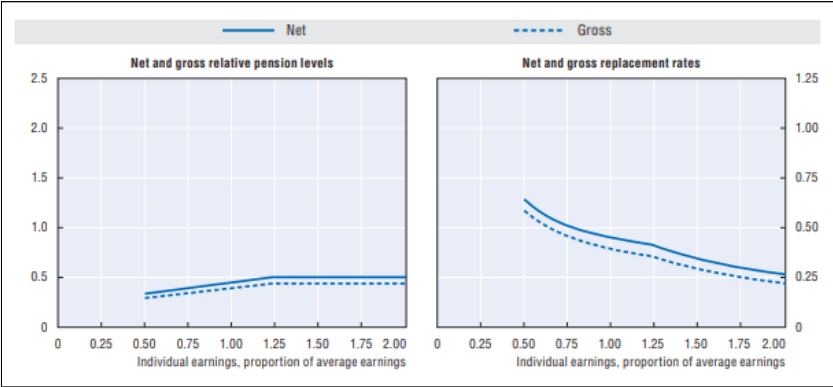
54) 개인소득(1배)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뜻함.

〈표 3-23〉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OECD 분석 결과)

구분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0
총 상대적 연금수준 (% 평균 총소득 대비)		29.3	34.3	39.3	43.9	43.9	43.9
순 상대적 연금수준 (% 평균 순소득 대비)		33.7	39.4	45.0	50.2	50.2	50.2
총소득대체율 (% 개인 총소득 대비)		58.6	45.7	39.3	29.3	22.0	14.6
순 소득대체율 (% 개인 순 소득 대비)		64.3	50.9	45.0	34.4	26.5	18.6
총연금자산 (배)	남성	10.7	8.4	7.2	5.3	4.0	2.7
	여성	12.6	9.8	8.4	6.3	4.7	3.1
순연금자산 (배)	남성	10.7	8.3	7.1	5.3	4.0	2.6
	여성	12.5	9.8	8.4	6.2	4.7	3.1

주: 1) 연금수준과 소득대체율은 남성 기준임
2) 상대적 연금수준에서 평균 총소득은 2014년 기준으로 약 3,980만 원임
자료: OECD(2015a), Pensions at a Glance 2015, p.323. 인용하여 재작성

〔그림 3-7〕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자료: OECD(2015a), Pensions at a Glance 2015, p.323. 인용하여 재작성

2. 고령화와 연금개혁

퇴직연금은 국가마다 도입 배경이 다르고,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상이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일괄적인 국제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슈별로 정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슈별로 정리하기에 앞서 선진국의 연금개혁 과정을 보면, 고령화 단계와 상관관계가 높고 또한 고령화 단계별로 개혁 내용에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령화율이 14% 이하이던 고령화 사회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까지 세계 경제는 활황기를, 연금제도는 확장기를 맞는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는 상대적으로 젊은 사회여서 공적연금만으로도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고 여겼던 터여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았다. 그런데 고령화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한 1980년대는 세계 경제의 침체, 급속한 고령화 등을 경험하면서 공적연금의 재정 문제가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고령사회에서는 공적연금의 민영화, 퇴직연금의 활성화(보조금, 세제 혜택) 등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의 강화로 나타난다. 이후 고령사회의 연금재정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고령화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일본, 독일 등). 이들 국가들은 고령사회의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유지하면서 재정적 여력을 고려하여 선별적 노후소득보장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24〉 고령화 단계별 공적 연금제도 변화 특성

구분	시기	주요 내용
고령화 사회 (고령화율 7~14%)	2차 세계대전 ~1970년대 (우리나라: 2000~2016)	- 공적연금 중심 노후소득보장 팽창기 • 공적연금 적용 대상 확대(자영자 포함한 전 국민) • 기초연금 도입 등 연금 수급 대상 확대 • 연금급여와 보험료 동시 인상
고령사회 (고령화율 14~20%)	1970년대~현재 (우리나라: 2017~) 1970년대 오일쇼크 등	- 공적연금 급여 완화 및 사적연금 활성화 등 조정기 • 세계 경기침체와 급속한 고령화로 1980년대 공적연금 재정 문제가 심화 • 공적연금의 민영화, 사적연금 활성화(보조금, 세제 혜택) 등 • 연금 수령 시기 연장, 연금급여 축소, 보험료 인상, 자동조정 장치 도입 등
초고령사회 (고령화율 20% 초과)	현재 2개 국가 해당 일본(2006~), 독일(2010~)	- 고령사회의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유지하되, 재정적 여력을 고려하여 선별적 노후소득보장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예상됨

주: OECD(2021), Pensions at a Glance 등을 참고하여 정리
2022년 사회복지정책협회의 발표자료

OECD 국가들의 연금개혁 과정에서 퇴직연금제도의 역할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왔는지에 대해 적용/가입의 강제성, 자산운용의 특성/효율성, 급여의 연금화의 세 가지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적용/가입의 강제성: 자동가입

OECD(2021)는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을 강제 혹은 준강제형(Mandatory/Quasi-mandatory), 자동가입(Auto-Enrollment), 임의가입(Voluntary)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유형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중복되어 운영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총 38개 국가에서 퇴직연금제도(retirement savings plans)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제 혹은 준강제형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17개⁵⁵⁾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하고

55) 해당 국가로는 호주,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한국, 라트비아,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이며, 비OECD 국가인 러시아를 포함하면 18개 국가임(OECD(2021), p. 207)

있는 국가는 9개⁵⁶⁾ 임의가입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사업장 혹은 개인 단위로 대부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영국, 뉴질랜드 등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모든 사용자가 퇴직연금 제공 의무를 가지며,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자동가입된다. 다만 이들 국가들은 Opt-Out 제도가 있어 사후적으로 퇴직연금에서 탈퇴할 수 있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영국의 Opt-Out 선택 비율은 약 12%로 보고되고 있다.⁵⁸⁾ 미국의 경우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 자동가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는 401(k) 등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⁵⁹⁾ 캐나다의 PRPP 퇴직연금은 multi-employer DC형으로 사용자와 자영자도 참여할 수 있으며, PRPP를 선택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Opt-Out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등록된다. PRPP는 2012년에 연방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며 캐나다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강제성(강제/준강제, 자동) 사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21개국 정도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사적연금제도 가입률은 생산가능인구 기준으로 70.2%로 조사되고 있다. 호주 75.2%, 덴마크 91.9%(ATP), 네덜란드 88%, 뉴질랜드 78.5 %, 스웨덴 100%, 우리나라 17.0%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제성을 띠고 있음에도 비율이 낮은 국가가 있는 이유는 자영자, 비경활자 등 생산가능인구에서 제외되는 다른 요인들 때문으로 이해된다. 물론 임의가입을 포함한 퇴직연금제도 가입률은 62.1%라는 점에서 강제가입이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률을 제고해 왔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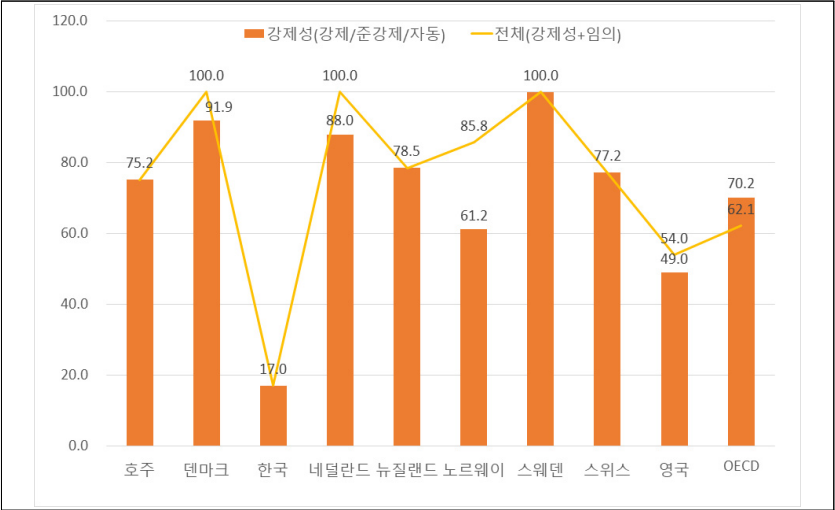
56)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폴란드, 튀르키예, 영국, 미국임

57) OECD(2018), Pensions Outlook 2018, p. 148.

58) 고용노동부-근로복지연구원. (2020). 2019 해외 퇴직연금제도 조사보고서. p.52.

59) 정원석, 김세중(2018).

[그림 3-8] 주요국의 강제성 사적연금 가입 현황



주: 1) 강제성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OECD 21개 국가 중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제시함(단 OECD 전체는 3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함)
2) 한국은 퇴직연금만 반영됨(퇴직금, 개인연금 미반영)
자료: OECD(2021), Pensions at a Glance 2021, p. 207.

〈표 3-25〉 주요국의 퇴직연금 강제성 및 보험료(기여금) 현황

국가	강제 가입 유무	보험 료율	현황
호주	강제	9.5%	- 사용자 전액 부담: 1992년 5%, 1998년 7%, 2002년 9%, 2013.7~2014.6 9.25%, 2014.7~2020년 9.5%, 2021년 10%, 2023년 11% 2025년 12% - 근로자 추가 기여 가능 ¹⁾ * 자영업자는 가입이 강제되지 않지만 조세혜택을 주어서 가입 유도
영국	자동 가입	8%	사용자 최소 3%, 근로자 4%, 정부 1% ²⁾
이탈 리아	자동 가입	6.91%	사용자 6.91%, 근로자는 자발적
뉴질 랜드	자동 가입	6%	18~64세의 신규 근로자 (사용자 최소 3%, 근로자 3%)
미국	자동 가입	자율	연간 납입액의 15% 지원(6UTM 한도) 1년 이상 근무한 21세 이상 피용자
칠레 ³⁾	자동 가입	10%	자영업자도 2008년 연대연금 도입으로 가입 의무화됨 ⁴⁾
일본	임의	자율	- 적격 퇴직연금제도는 2012년 3월 31일자로 폐지, 임의가입 형태로 전환됨 - 개인형(iDeCo) 및 기업형 DC 제도: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되며, 기업부담 원칙(기업형)+가입자 매칭기여 가능
한국	강제 (선택)	8.3% 이상	- 사용자 부담 8.3% 이상, 본인 추가 기여 가능(적격 IRP)

주: 1) 사용자 기여율 조정 스케줄은 홍범교, 박수진, 정경화(2013) 참조

2) 소득공제 방식으로 지원(김원식, 김재현, (2015).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과 재정 효과 분석: 정책방향. 한국재정학회 나성린 의원 공동주최 정책세미나. p.24)

3) 강제가입제도 있는 경우로 강제/준강제 가입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임금근로자 여부에 달려 있음. 즉, 자영업자의 경우 임의가입이거나 대부분 준강제형임.

4) 국민연금연구원. (2012). 해외 공·사연금제도 II; 아메리카권(칠레편).

자료: Nina Paklina(2014); 강성호, 류건식, 김동겸(2017), p.61; OECD(2018), Pensions Outlook 2018, p.148을 재구성

나. 자산운용의 특성/효율성: 최저보증수익, CDC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하여 퇴직연금 자산운용 과정의 특징은 최저보증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다. 일본, 스위스 등은 사적연금 자산운용 과정에서 최소 투자수익률을 보증하는 사례가 있다.⁶⁰⁾

정창률(2018)⁶¹⁾에 따르면, 스위스는 DC 방식의 경우에도 DB와 마찬가지로 수급권을 보장해주는 Guarantee fund를 운영하고(Stewart (2007)⁶²⁾) 이로 인해 최저수익률⁶³⁾(mimimum interest rate) 보장을 통해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⁶⁴⁾

스위스 퇴직연금의 최저수익률은 2011년 2.0%에서 2017년 1%로 하락하고 있기는 하지만 2023년까지 1%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수급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1년 기준 스위스 퇴직연금의 평균 투자수익률은 8.06%로 높아 최저수익률 보증에 대한 부담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⁶⁵⁾

퇴직연금 운용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로 집합적 확정기여형제도 (Collective Defined Contribution, CDC)의 시행과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는 금융시장에서 개인의 투자행위를 기본으로

60) 성주호, 류성경, 손성동, 권혁, 최윤희(2014), 송홍선(2022)

61) 정창률 (2018).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의 쟁점 및 개선방안 검토: 가입자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정책, 25(3), 151-174.

62) Stewart, F. (2007). Benefit Security Pension Fund Guarantee Schemes, OECD Working Papers on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No.5, OECD Publishing.

63) 스위스 퇴직연금법(BVG) 제15조 제2호~제3호

64) Federal Social Insurance Office, "Meaning and objectives of occupational pension funds".

<https://www.bsv.admin.ch/bsv/en/home/social-insurance/bv/grundlagen-und-gesetze/grundlagen/sinn-und-zweck.html> 2023. 7.20.

65) UBS Switzerland, "Occupational pensions: understanding pension funds".

<https://www.ubs.com/ch/en/private/pension/information/magazine/2022/understand-the-pension-fund.html> 2023. 7.20.

하므로 개별적 확정기여형제도(Individual Defined Contribution, CDC)가 일반적이다. CDC 제도는 퇴직연금 시장이 DB 제도에서 DC 제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개인이 운용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DB와 DC의 요소가 결합된 혼합형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CDC 제도는 퇴직연금 자산을 집합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개인의 투자 부담 없고, 가입자 간에 장수위험을 공유할 수 있고 장기적인 투자 전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투자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 또한 투자 과정에 규모의 경제 등으로 인해 투자 비용이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제기되고 있다.⁶⁶⁾

CDC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로는 네덜란드, 덴마크, 캐나다, 영국이 있으며, 영국은 2021년 연금제도법을 통해 CDC 제도를 도입하였고, 2023년 4월 영국의 연금감독 기구인 TPR(The Pensions Regulator)이 CDC 퇴직연금제도인 RMCPP(Royal Mail Collective Pension Plan)을 승인함에 따라 승인되었다.

〈표 3-26〉 DB형, DC형, CDC형 퇴직연금제도의 특징 및 차이

유형	목적	적립금 운용 방식	퇴직소득 보장 여부
DB	퇴직소득	공동	보장 ; 고용주가 위험 부담
DC	퇴직 시 저축 잔액(인출하거나 연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	개인	비보장 ; 개인이 위험 부담
CDC	퇴직소득	공동	비보장 ; 모든 가입자가 위험 공유

자료: Charles et al.(2021) 심수연(2023), 영국의 집합적 확정기여형(CDC) 퇴직연금제도 시행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66) James, M.D., 2022, Pensions: Collective Defined Contribution (CDC) schemes.

다. 급여의 연금화: 강제연금화

1) 연금화 강화 정책⁶⁷⁾

미국, 영국 등은 일시금 수령 및 조기인출 시 중과세 혹은 패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연금 수령을 유인한다. 미국은 일시금 수령에 대한 비중에 제한이 없고 59.5세 이전에 조기 인출할 수 있지만 조기 인출 시 10%의 패널티가 적용되고 정상 인출 시에도 누진소득세를 적용함으로써 일시금 수령 시 중과세가 적용된다. 이러한 미국의 과세체계를 살펴보면, 미국 국세청(IRS)은 매년 적용되는 세율을 발표하고 있으며, 퇴직연금(401(k)) 및 개인퇴직계좌(전통형 IRA)에서 인출된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 미국의 2022년 소득세율(income tax brackets)은 소득 구간별로 구분되어 10%, 12%, 22%, 24%, 32%, 35%, 37%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 소득구간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른데, 가구 유형은 싱글(Single),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MFJ), 부부개별(Married Filing Separately, MFS), 세대주(Head of Household, HoH), 미망인(Qualifying Widow, QW)으로 구분된다.⁶⁸⁾

미국 등 주요국의 퇴직연금 소득은 우리나라와 같이 분리과세⁶⁹⁾ 되지 않고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므로 구조적으로 일시금 인출에 대한 세 부담이 커 자동적으로 연금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림 3-9]에서 미국의 DC형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 비중을 보면 퇴직연령에 다다르고 적립금(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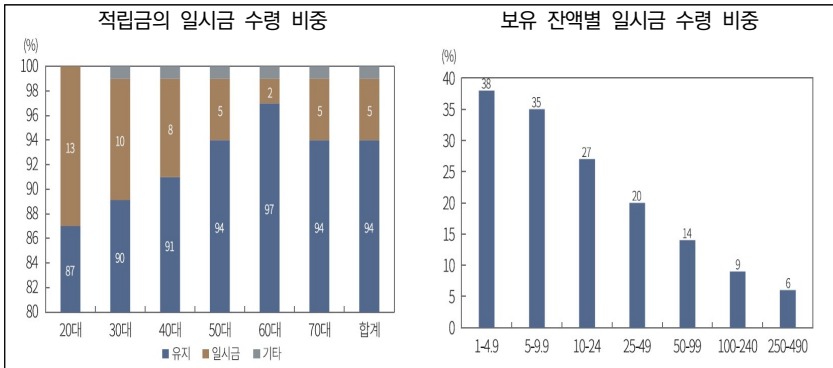
67) 강성호·이소양(2022), 주요국 퇴직연금의 연금화 정책과 시사점, 리키리포트, 보험연구원.

68) <https://www.creditkarma.com/tax/i/what-is-taxable-income#what-is-taxable-income>

69)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기준은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됨

좌 보유 잔액) 비중이 높을수록 일시금 수령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⁷⁰⁾ 이를 통해 볼 때 적립금이 많은 중고령층은 조세체계 등에 의해 일시금보다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3-9] 미국 DC형 퇴직연금 수급 현황



주: 1) 적립금의 연령층별 연금자산 잔액 기준 분배

2) 보유 잔액별 수령 비중의 X축은 퇴직연금 개인 계좌 보유 잔액 구간이며, 단위는 천 달러임.

자료: Vanguard(2020), 송홍선(2022) 재인용

영국은 2015년 이전에 강제 연금화 국가였으나 의무연금화 제도를 폐지(pension freedom)하고 미국과 유사하게 퇴직일시금에 누진소득세를 적용하는 형태로 일시금 수령 시 중과세가 되는 구조이다. 영국 금융감독청(FCA)⁷¹⁾에 따르면 계좌 수 기준으로 의무연금화 제도 폐지 이후인 2016년 4월~9월에 일시금 수령 비중이 56%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20년 10월~2021년 3월 54.9%). 영국은 의무연금화 제도 폐지 후에도 금액 기준 일시금 인출 비율은 10.9%여서 의무연금화 폐지로 적립금이 적은 수급자를 중심으로 일시금 수령

70) 송홍선(2022), DC형 퇴직연금의 노후안전망 역할 강화 연구, 자본시장연구원.

71) FCA, Retirement income market data 2020/21. (<https://www.fca.org.uk/data/retirement-income-market-data-2020-21>)

이 증가한 면은 있으나 누진세제 효과로 전체 일시금 수령은 실제로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25% 이상에 대해 누진적 종합소득세율⁷²⁾이 과세됨으로써 일시금 수령이 억제되고 또한 55세 이전에 수령하는 경우 55%의 소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조기수령 또한 통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⁷³⁾⁷⁴⁾

〈표 3-27〉에서 영국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령 형태를 보면, 계좌 기준으로 일시금 인출이 50%를 넘지만, 금액 기준으로 보면 정기인출이 7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적립금 계좌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일시금을 인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정 이상의 계좌에서는 초과 인출에 따른 누진세 부담을 피해 일정 수준까지 인출하고 투자하는 정기인출이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72) 영국은 연금소득을 포함한 과세 대상 소득(1만 2,570파운드 이상)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며 2022년 4월~2023년 4월 20~45%의 세율로 비율로 과세됨(영국 소득세율, <https://www.gov.uk/income-tax-rates>)

73) Money Farm, "Can I withdraw my pension before turning 55?", <https://blog.moneyfarm.com/en/pensions/can-i-withdraw-my-pension-before-55> 2023.7.20.

74) Money Advisor, "When Can I Take My Personal Pension?", <https://www.onlinemoneyadvisor.co.uk/pensions/personal-pensions/personal-pension-withdraw> 2023.7.20.

〈표 3-27〉 영국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령 형태

(단위: 천 개, 억 파운드)

구분		2018. 10 ~2019. 3	2019. 4~9	2019. 10 ~2020. 3	2020. 4~9	2020. 10 ~2021. 3
연금 수령	계좌	36(11.4)	38(10.8)	31(9.8)	29(9.9)	32(10.3)
	금액	22(11.2)	23(11.0)	18(9.8)	19(11.7)	22(10.4)
정기 인출	계좌	98(31.0)	102(28.5)	95(30.1)	75(25.8)	91(29.7)
	금액	136(70.0)	147(69.9)	135(71.6)	114(68.9)	145(69.6)
수시 인출	계좌	13(4.2)	15(4.3)	16(5.1)	13(4.5)	15(5.0)
	금액	14(7.2)	15(7.3)	14(7.4)	11(6.9)	19(9.1)
일시금 인출	계좌	169(53.4)	201(56.4)	174(55.0)	173(59.8)	168(54.9)
	금액	22(11.5)	25(11.8)	21(11.1)	21(12.5)	23(10.9)
합계	계좌	316(100.0)	356(100.0)	316(100.0)	290(100.0)	306(100.0)
	금액	194(100.0)	210(100.0)	188(100.0)	165(100.0)	209(100.0)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수령 계좌와 금액 기준 비중을 의미함

자료: 영국 금융감독청(FCA), Retirement income market data 2020/21.

(https://www.fca.org.uk /data/retirement-income-market-data-2020-21)

스위스도 퇴직연금 소득에 대해 누진소득세를 적용하는 형태여서 일시금 수령 시 높은 과세 부담을 지게 된다. 즉, 스위스의 근로자가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적용되는 한계세율은 29.2%(스위스 남부도시, 벨린초나 기준)이다.⁷⁵⁾ 특정 사유에 한해 적립금의 중간 인출을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택 구매, 개인사업자가 되는 경우, 스위스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네덜란드, 스위스 등은 강제적 혹은 원칙적으로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고 있다.⁷⁶⁾⁷⁷⁾ 네덜란드는 의무연금화 제도를

75) 스위스 소득세율 <https://finpension.ch/en/capital-withdrawal-tax-compared/> 2023.4.20.76) 네덜란드 퇴직연금제도, Lexology, "Q&A: occupational pension schemes in Netherlands"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db50b81a-b62a-40f8-ad3f-b9e28f5f2462> 2023.4.20.)

77) 각국의 사적연금 연금화 관련 내용은 oxera(2014), The Retirement Income Market(p.2, p.19, p.56); OECD(2015b), "Stocktaking of the Tax Treatment of Funded Private Pension Plans in OECD and EU Countries"(p.14) 참조함.

통해 수급자의 100%가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한다. 네덜란드의 퇴직연금 가입자는 68세부터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68세 이전에 수급하게 될 경우 조기수령 1년마다 7%씩 퇴직연금의 급여액이 감소된다. 스위스는 퇴직연금 수급 시 원칙적으로 연금 형태의 수령을 하도록 하는 준강제형 연금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스위스 퇴직연금의 연금 수령액 수준은 적립금 규모와 연금 최소 전환율(Umwandlungssatz)⁷⁸⁾ (2022년 6.8%)에 따라 결정되는데, 적립금이 20만 스위스프랑인 수급자는 연간 1만 3,600스위스프랑(월 1,133스위스프랑)⁷⁹⁾을 수령하게 된다. 한편 일시금 수령을 원할 경우 은퇴 시점 3년 전에 그 의사를 밝힘으로써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⁸⁰⁾ 현재 스위스 퇴직연금의 연금 수령 비중은 7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표 3-28〉 스위스 퇴직연금의 연금 수령 및 일시금 수령 비중

(단위: 백만 스위스프랑,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금 수령	금액	28,781	29,502	30,164	30,801	31,515
	비중	79.0	78.2	77.1	75.6	74.2
일시금 수령	금액	7,664	8,228	8,981	9,915	10,949
	비중	21.0	21.8	22.9	24.4	25.8
합계	금액	36,445	37,730	39,145	40,716	42,464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스위스연방사회보험청(FSIO).

[https://www.bsv.admin.ch/bsv/en/home/social-insurance/bv/statistik.html#acc
ordion 1669082241705 2023.8.1](https://www.bsv.admin.ch/bsv/en/home/social-insurance/bv/statistik.html#accordion 1669082241705 2023.8.1)

78) 스위스 정부가 은퇴자의 기대여명과 시장금리 활용하여 산출하며, 적립금에서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연간 최소 전환 비율을 의미함.

79) 적립금(20만 프랑)×연금전환율(6.8%)=연간 1만 3,600스위스프랑(월 1,133스위스프랑)

80) 일본의 퇴직연금도 연금 형태로 지급하다가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일시금 지급 숙려제도를 두고 있음.

연금지급 방식과 연금상품의 다양성 등을 통해 노후자금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퇴직연금 지급방식을 연금 수령, 정기인출(Drawdown),⁸¹⁾ 수시인출(UFPLS),⁸²⁾ 일시금 형태와 같이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긴급자금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연금 자유화 이후에도 일시금에 편중되지 않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영국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령 형태별 인출 비중을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0년 10월~2021년 3월에 정기인출은 69.6%, 일시금은 10.9%, 연금 수령은 10.4%, 수시인출은 9.1% 순으로 나타난다. 미국은 2022년 퇴직연금(401(k))의 디폴트옵션 상품에 연금상품을 편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조치는 운용 단계에서도 은퇴 후 소득 불안정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⁸³⁾ 동 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 기여금의 50%까지 연금상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퇴직연금 수령 시 연금 형태로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전후후박형(High-low Income Streams) 연금 지급을 가능하도록 했다.⁸⁴⁾ 전후후박형 연금은 공적연금 수령 개시 전에 은퇴할 경우 공적연금 수령 개시 시점(68세)까지 연금액을 많이 수령하고 이후 적게 수령할 수 있으며, 공적연금 개시 이후에 퇴직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도 최초 5년에서 10년까지는 연금액을 많이 수령하고 이후에 적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81) 정기인출은 매달 또는 매년 일정 금액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적립금의 25%는 비과세로 인출이 가능하고 나머지 적립금은 주식, 채권 등 자산에 투자되어 운용됨.

82) 수시인출은 한 번에 적립금의 25%를 인출이 불가능하나 인출 시마다 인출금액의 25%는 비과세로 인출이 가능한 방식으로 2015년 연금개혁 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됨.

83) CNBC, Annuities could soon qualify as a default investment in 401(k) plans. <https://www.cnbc.com/2022/03/09/annuities-could-soon-qualify-as-a-default-investment-in-401k-plans.html> 2023.8.1.

84) 김세중·김유미(2017),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보험연구원.

2) 사후적 완화(Opt-Out)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사적재산이므로 공적연금처럼 강제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세제나 보조금 같은 유인을 통해 연금 수령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형태의 수령을 원치 않거나 목돈이 필요할 경우를 위해 Opt-Out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연금화 제도를 둔 경우는 대부분 Opt-Out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입 단계에서 자동 가입제도에 대해 Opt-Out 제도를 두는 것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미국의 DC형 퇴직연금제도는 일시금 지급이 기본이나 2002년 기준 DC형 제도의 38%가 연금 옵션을 제공한 바 있으나, 연금을 선택한 비중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DB형에서는 연금지급이 기본이나 48% 정도는 일시금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일시금 선택 비중이 10%(연금화 90%)로 나타났다. 이는 사적연금 수급 시점에서 일시금을 허용하지 않게 되면 연금으로 수급하게 되는 경향이 강할 것임을 의미하므로 연금 수급을 원칙으로 하는 Opt-Out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다. 연금화와 노인빈곤 관계

국제사회에서 퇴직연금의 연금화 정책은 사적연금 급여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OECD 평균을 기준으로 GDP 대비 사적연금 급여 비중을 보면 1.2%(1990), 1.4%(2000), 1.4%(2010), 1.5%(201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우리나라 사적연금 급여 비중이 0.02%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연금 미성숙도를 알 수 있다. 이를 GDP 대비 사적연금의 자산 비중으로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GDP 대비 37.2% 수준(우리나라 7.3%, 2014)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29〉 주요국의 GDP 대비 사적연금 급여 수준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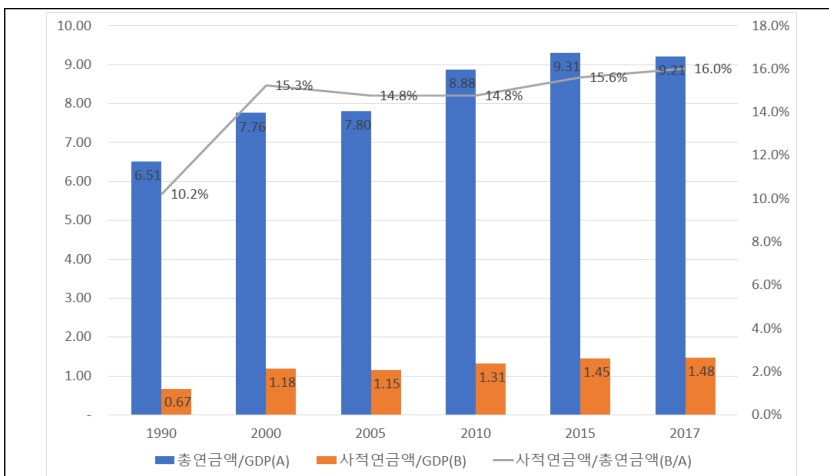
국가	GDP 대비 사적연금 급여 수준			
	1990	2000	2010	2015
영국	0.1%	0.4%	0.6%	0.7%
독일	0.7	0.7	0.8	0.8
미국	2.6%	3.6%	4.4%	5.2%
스웨덴	1.2%	1.7%	2.3%	2.9%
OECD 평균	0.7%	1.2%	1.4%	1.5%

주: 독일의 경우 2009년 이후부터는 초고령사회임.

자료: OECD(2019), Pensions at a Glance 2019, p.201.을 참조하여 재작성.

이러한 사적연금의 급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선진국들의 노인빈곤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적연금액의 공적연금 대비 비중은 1990년 10.2% → 2000년 15.3% → 2017년 16.0%로 증가하여 왔다.

[그림 3-10] OECD 국가의 사적연금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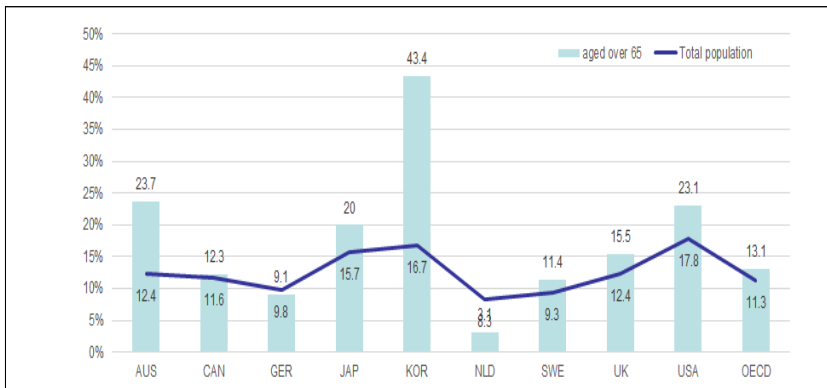


주: 총연금액은 공적연금액과 사적연금액을 합산한 것임(노령 및 유족연금을 포함).

자료: OECD(2021), Pension at a Glance 2021.

이는 공적연금이 축소된 만큼 사적연금을 확대하여 전체 노후소득보장을 보충하여 이로 인해 노인빈곤율이 감소한 것으로 이해된다. 2018년 OECD의 노인빈곤율은 15.3%(전체 12.0%)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나라 43.4%(전체 16.7%)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독일, 네덜란드의 경우 노인빈곤율이 전체 빈곤율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림 3-11] OECD 주요국의 노인빈곤(2018년)



주: OECD는 36개국의 평균임.

자료: OECD(2021), Pension at a Glance 2021.

3. 연금개혁과 퇴직연금 활용

가.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령화 과정에서 공적연금 재정 문제의 발생은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유도해 왔으며, 또한 준공적연금화를 추진한 사례들도 있다. 호주의 경우는 준공적연금화라기보다는 공적연금으로 이해할 수 있고, 네덜란드 등도 마찬가지로 이해된다.

OECD(2022)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보험료율과의 관계를 보면, 소득대체율은 우리나라에 비해 높으나 퇴직연금의 수준이 상당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공적연금 개혁 과정에서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이 커져왔고 보험료율의 증가를 통해 재정 안정화를 보완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30〉 다층 노후소득보장 소득대체율(보험료율) 국제 비교¹⁾

(단위: %)

국가명	공적연금(1층)			퇴직연금(2층) ²⁾	합계(1층+2층) ²⁾
호주					
캐나다	38.8	(10.5)	〈3.7〉	24.5*	63.3
덴마크	29.5	(12.8)	〈2.3〉	50.5	80.0
독일	41.5	(18.6)	〈2.2〉	14.1*	55.6
일본	32.4	(18.3)	〈1.8〉	23.1*	55.5
네덜란드	29.2	(25.1)	〈1.2〉	40.5	69.7
스웨덴	41.3	(22.3)	〈1.9〉	12.0	53.3
스위스	22.1	(17.0)	〈1.3〉	22.1	44.2
영국	21.6	-		27.4	49.0
미국	39.2	(10.6)	〈3.7〉	42.1*	81.3
OECD	42.2	(18.2)	〈2.3〉	15.4*	57.6
한국	31.2	(9.0)	〈3.5〉	• 25년 가입 8.3% (40년 가입 13.3%) • 25년 가입+추납 시 10~16%	• 25년 가입 39.5% (40년 가입 44.5%) • 25년 가입+추납 시 41.2~47.2%

주: 1) 각 국가의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추정한 소득대체율임.

2)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은 '강성호(2023),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키리리포트 제570호' 추정치를 인용함.

3) *는 OECD(2022)에서 정의하는 자발적 사적연금(voluntary private pension)을 포함함

4) () 안은 공적연금 보험료율(Effective rate on average earnings)

5) < > 는 보험료율 대비 소득대체율의 상대비(소득대체율/보험료율)

자료: OECD(2022), Pension at Glance 2021, p.141.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를 통해 재정 중립적 노후소득보장을 추진해 왔다면, 공적연금은 재정 안정화를 위해 개혁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 공적연금 재정 안정화 장치로 자동조정장치를 생각할 수 있다. 자동조정장치 특징은 급여 수준 및 수급연령을 기대여명에 연동시키나, 연금 수급자 수와 기여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급여 수준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도입국가는 스웨덴(1998), 덴마크,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2003), 일본(2004), 독일(2004) 등 20개 정도이다. 자동조정장치 유형은 적립식 확정기여형(9개국), 명목 확정기여형(5개국), 기대여명 급여 연동형(3개국), 재정균형 급여조정형(8개국), 기대여명 수급연령 조정형(6개국)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연금개혁의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수록 공적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표 3-31〉 OECD 회원국의 연금급여 자동조정장치(의무적 연금 기준)

유형	적용 국가
적립식 확정기여형 (9개국)	호주, 칠레, 덴마크,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라트비아, 멕시코, 노르웨이, 스웨덴, 슬로바키아*
명목 확정기여형 (5개국)	이탈리아, 라트비아,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기대여명 급여 연동 (3개국)	핀란드, 일본, 스페인
재정균형 급여조정 (8개국)	에스토니아, 독일, 일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기대여명 수급연령 조정 (6개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이태리, 네덜란드, 포르투갈

주: 1) 자동조정장치의 유형은 성격에 따른 구분으로 중복 유형이 가능함

2) 슬로바키아는 적립식 확정기여형, 자동가입제, 자발적 연금제도를 번갈아 사용함
 자료: OECD(2019), Pension at a Glance 2019, p.40. 평균소득자 소득대체율 기준; 주은선·오건호·이은주(2019), 공적연금 발전방안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나. 영세사업장 지원

이러한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은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과도 관련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사용자지원 IRA 제도가 있다. 미국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1978년 도입된 SEP IRA와 1996년에 도입된 SIMPLE IRA 등이 있는데, 여기에 가입하고 있는 영세사업장에 대해 지원한다. SEP IRA의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인 기여를 허용하지 않는 반면(순수 자영자만 대상), SIMPLE IRA 제도는 10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분담하여 납입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추가적인 납입이 가능하다. 그 지원 수준을 보면 제도 설정 및 관리, 근로자 교육 등 도입 초기 운영비용의 50%에 한해 연간 최대 \$500 한도로 3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⁸⁵⁾ 연소득 규모가 \$5,000 이상인 근로자가 100명 이하이며, 신규로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용자에게 한정하여 지원한다.

4. 주택연금의 주요국 개혁 동향

가. 미국

미국은 정부 주택도시개발부(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의 역모기지제도인 HECM(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이 1987년 시범사업을 거쳐 1989년에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였다. HECM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공적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대출 잔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HUD 산하기관인 연방주택청(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FHA)에서 초과 대출금액에 대한 손실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연방주택청은 HECM의 대출잔액이 대출한도의 98% 수준에 도달할 경우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양수한다. 이러한 공적 보증을 위한 재원으로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보증료 수입(초기보증료 및 연 보증료)과 연금대출채권을 유동화하는 방안이 있다.

85)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 Retirement Plans Startup Costs Tax Credit

보증료 수입은 MMI(Mutual Mortgage Insurance)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결손이 예상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 출연이 가능하다. 또한, 연금대출 채권의 유동화는 2007년부터 시행되었는데 GNMA(Government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에서 지급 보증하는 HMBS(HECM Mortgage Backed Securities)를 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HMBS는 민간의 발행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HECM 대출채권을 양수하여 발행된다. HMBS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니매(Government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GNMA)가 지급보증을 하고 있다. HMBS 발행기관은 HECM 대출잔액이 대출한도의 98%에 도달한 경우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한 후 청산한다.

HECM의 가입 대상은 62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이다. 미국 HECM은 우리나라와 달리 다주택 보유 및 주택가격의 제한은 없으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출한도가 존재한다. 대출한도는 2009년 \$417,000에서 \$625,000로 대폭 상향한 이후 매년 상향 조정된 결과 2022년 기준 \$970,800이다.

〈표 3-32〉 미국 HECM 요약

구분	내용
가입연령	62세 이상(주택소유자 기준)
주택요건	주택가격 및 보유 수 제한 없음
대출한도	\$970,800(2022년 기준)
소득요건	재산세 및 재해보험료 납부 능력 판단을 위한 재산 수준 평가
지급방식	① 종신지급(Tenure): 사망 시까지 월지급금을 지급 ② 확정기간 지급(Term): 확정기간 동안 월지급금을 지급 ③ 수시인출(Line of Credit): 대출한도 내에서 수시로 목돈을 인출하는 방식 ④ 종신휘합(Modified Tenure): 종신 월지급금과 수시 인출의 결합 방식 ⑤ 확정기간혼합(Modified Term): 확정기간 월지급금과 수시 인출의 결합 방식 ⑥ 일시목돈인출(Single Disbursement): 최초 일시금 인출 후 추가 인출은 불가
대출상환	담보주택에 거주하는 동안은 대출 상환 없음 대출 종료 시 주택 처분을 통해 대출 상환하고, 잔여금액은 상속인에게 반환

자료: 미국 HUD(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ttps://www.hud.gov>

대출 비용과 관련하여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가입 시 발생하는 초기 비용이 높다. 먼저, 가입자는 취급 수수료, 상담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신용평가 수수료를 신청 시에 지불해야 한다. 특히, HECM 가입 전에 HUD에서 승인한 별도의 상담기관과 상담 후에 상담인증서를 발급받아야 가입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관리 수수료, 연보증료, 대출이자에 주기적으로 발생하지만 역모기지 이용기간 동안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대출잔액에 가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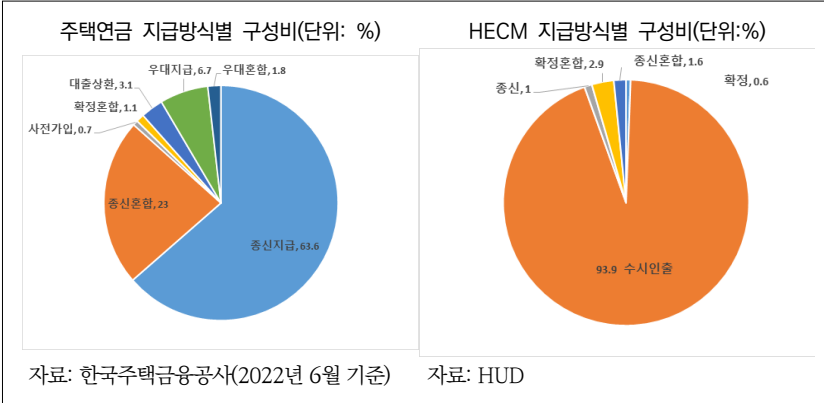
〈표 3-33〉 미국 주택연금 HECM 대출 비용

구 분		내 용
초기 비용	취급 수수료	• 주택가격 ≤ \$200,000: 주택가격 × 2% • 주택가격 > \$200,000 : \$200,000 × 2% + 초과분 × 1% (최대 \$6,000)
	상담 수수료	• 1건당 약 \$125
	감정평가 수수료	• 약 \$300 ~ \$750 (평균 \$450)
	신용평가 수수료	• 약 \$20 ~ \$25
	기타비용	• 등기비용: 주마다 다름 (약 \$150 ~ \$500) • 조사비용: 약 \$250 (최대 \$400) • 권원보험, 검사비용 등 ⇨ 총 \$1,000 ~ \$2,000
계속 비용	보증료율	초기보증료 • 초기 인출 비율에 따라 $MCA^* \times 0.5\%$ 또는 2.0% * $MCA(\text{Maximum Claim Amount, 최대 청구가능금액}) = \text{Min}(\text{주택평가금액, } \$970,800)$
		연보증료 • 대출 잔액 × 0.5%
	기타	관리 수수료 • 대출이자에 포함(약 $0.3 \sim 1.44\%$) • 연 변동금리 시 월 \$30 한도, 월 변동금리 시 월 \$35 한도
		대출이자 • 변동금리: CMT/SOFR + 마진 • 고정금리: CMT(10y) + 마진

자료: 미국 HUD(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ttps://www.hud.go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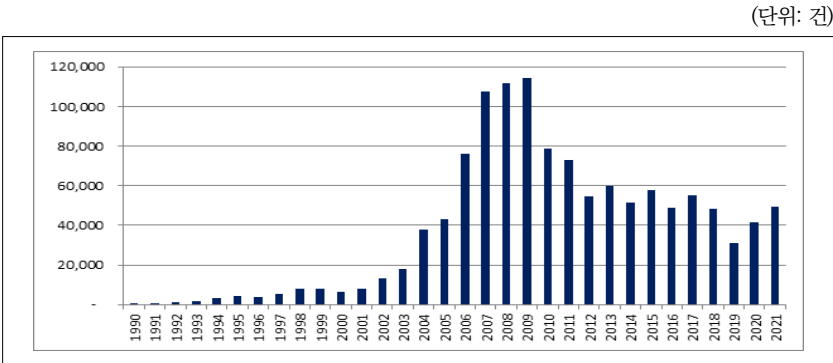
우리나라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설계된 반면, 미국은 고령층의 목돈 수요에 대비한 측면이 존재한다. 실제로 미국의 공적 역모기지의 지급방식 비중을 살펴보면, 수시인출금(Line of credit)의 비중이 무려 96.5%(2021년 기준)인데 비해, 종신 월지급금은 0.4%, 종신 혼합형은 1.6%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림 3-12] 우리나라와 미국의 역모기지 지급방식 구성비



HECM의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대 중반 저금리 및 주택시장 호황의 영향으로 급격히 증가한 결과 2009년 공급량은 11만 4,692건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공급량은 크게 하락하였다. 이후 최근 5년간은 연평균 약 4만 건을 공급하였으며, 2022년 기준 누적 가입 건수는 약 127만 건을 기록하였다.

[그림 3-13] 미국 HECM 공급 추이



나. 홍콩

홍콩은 2011년부터 홍콩모기지유한공사(Hong Kong Housing Authority, HKMC)의 보증을 통해 역모기지제도인 RMP(Reverse Mortgage program)이 시행되었다. 홍콩의 RMP는 미국의 HECM, 우리나라의 주택연금 등을 벤치마킹하여 시작되었기에 전반적인 운영구조가 우리나라 및 미국과 유사하다.

가입 대상은 55세 이상 주택소유자(부부가 아니어도 동시 가입이 가능하며 최대 3명까지 가입이 가능함)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주택가격 및 주택보유 수의 제한이 없다.

〈표 3-34〉 홍콩 RMP 제도 개요

구 분	도입 초기(2011.7월)	개정 후(2012.9월)
가입연령	60세 이상 주택소유자 (부부 아닌 경우에도 동시 가입이 가능)	• 55세 이상 주택소유자 (부부 아닌 경우에도 동시 가입이 가능) • 토지 미정리된 경우는 60세 이상
대상 주택	• 주택가격, 주택보유 수 제한 없음 • 건축연한 50년 이하 • 최대 인정한도 HK\$8m(약 11억 원)	• 주택가격, 주택보유 수 제한 없음 • 건축연한 50년 이하 • 최대 인정한도 HK\$25m(약 38억 원) (주택가격에 따라 인정 비율 차등)
일시금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	대출한도의 90% (90% 인출 시 월지급금 없음)
지급방식	① 종신지급(Tenure): 사망 시점까지 월지급금 지급 ② 확정지급(Term): 정해진 기간 동안 월지급금 지급(10년, 15년, 20년) ③ 종신흡합(Modified Tenure): 종신지급과 수시인출의 혼합 ④ 확정혼합(Modified Term): 확정지급과 수시인출의 혼합	
보증료 체계	•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0.28%(4년 차부터 7년간 납부로 총 1.96%) : 단 약정철회기간(6개월) 이후 해지 시 미납보증료 전액 추징 • 연 보증료: 대출 잔액의 1.25%	
적용금리	•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선택 : 변동금리는 Hong Kong 우대금리(Prime rate) - 250bp : 고정금리는 25년간 연 4% 적용 후 변동금리 적용	

자료: 홍콩 HKMC(Hong Kong Mortgage Corporation) <https://www.hkmc.com.hk>

가입자는 가입 후 언제든지 중도 상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가 없다.

홍콩 RMP는 가입 요건에 주택가격 제한이 존재하지 않지만, 월지급금 결정 시 주택가격 인정 한도를 최대 HK\$25m 이내에서 적용하고 있다. 동시에 대상 주택의 건축 연한은 50년 이하가 원칙이다. 만약, 이를 초과한 경우 개별적 검사를 통해 가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관련 검사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한다.

〈표 3-35〉 홍콩 주택가격 인정 한도

주택가격	주택가격 인정한도
≤ HK\$8m	주택가격의 100%(최대 HK\$8m)
HK\$8m 초과 시	$HK\$8m \times 100\% + HK\$8m \text{ 초과 분} \times 50\%$ (HK\$25m 한도)

자료: 홍콩 HKMC(Hong Kong Mortgage Corporation) <https://www.hkmc.com.hk>

지급방식은 확정기간 방식과 종신 방식으로 구분된다. 확정기간 방식에서 월지급금 수령기간은 10년, 15년, 2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월지급금 가입 후에도 다른 지급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가입자는 지급기간 및 대출금리 적용 방식을 선택한 후 그에 따른 월지급금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담보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수령기간이 짧으면서 가입 인원이 적고 고연령에 고정금리를 선택할수록 높은 월지급금 수령이 가능하다.

〈표 3-36〉 홍콩 RMP 가입연령·수령기간별 월지급금(주택가격 변동금리 적용 기준)

(단위: HK\$1m)

가입 연령	55세			60세			70세		
수령 기간	가입자 1명	가입자 2명	가입자 3명	가입자 1명	가입자 2명	가입자 3명	가입자 1명	가입자 2명	가입자 3명
10년	3,200	2,800	2,500	3,700	3,300	3,000	5,100	4,600	4,200
15년	2,400	2,150	1,900	2,800	2,500	2,250	3,800	3,500	3,200
20년	2,050	1,800	1,600	2,400	2,100	1,900	3,300	3,000	2,700
종신	1,650	1,450	1,250	2,000	1,800	1,550	3,100	2,800	2,400

자료: 홍콩 HKMC(Hong Kong Mortgage Corporation) <https://www.hkmc.com.hk>

〈표 3-37〉 홍콩 RMP 가입연령·수령기간별 월지급금(주택가격 고정금리 적용 기준)

(단위: HK\$1m)

가입 연령	55세			60세			70세		
수령 기간	가입자 1명	가입자 2명	가입자 3명	가입자 1명	가입자 2명	가입자 3명	가입자 1명	가입자 2명	가입자 3명
10년	3,520	3,080	2,750	4,070	3,630	3,300	5,610	5,060	4,620
15년	2,640	2,360	2,090	3,080	2,750	2,470	4,180	3,850	3,520
20년	2,250	1,980	1,760	2,640	2,310	2,090	3,630	3,300	2,970
종신	1,810	1,590	1,370	2,200	1,980	1,700	3,410	3,080	2,640

자료: 홍콩 HKMC(Hong Kong Mortgage Corporation) <https://www.hkmc.com.hk>

가입자는 월지급금 수령 전후로 다음과 같은 목돈 수요 발생 시 일시금을 인출할 수 있으나 일시금 인출 후에는 가입자의 월지급금이 조정된다.

- Refinancing 또는 다른 모기지의 상환
- 주택개량, 수리, 유지 보수
- 분묘 구입 및 장례비용
- 의료비용(해외에서 지출한 의료비 포함)
- 유산 관련 비용(유언장 작성 및 신탁설정 비용 등)

보증료 체계는 우리나라 및 미국과 동일하게 초기보험료와 연 보증료로 구분되며 가입자가 이용 기간에 지출하지 않고 대출잔액에 가산되어 계약 종료 시 정산된다. 초기보증료는 가입 시 주택가격의 1.96% 수준이나 가입 4년 차부터 10년 차까지 7년 분할로 적용된다. 즉, 매년 주택가격의 0.28%를 적용한다. 연 보증료는 총대출금액의 1.25%(연간 기준)를 적용한다. 그 밖에 가입자 비용은 기존 모기지를 상환하는 데 따른 법률 비용과 가입 시 상담비용이 존재하며 이들은 모두 보증료와 마찬가지로 RMP 대출 총액에 가산된다. 다만, 지급기간 변경 시에는 HK\$1,000의 취급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만약, 가입자가 가입 후 6개월 이내에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보증료가 반환된다. 다만, 중도해지 이전에 발생한 이자 금액과 중도해지와 관련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홍콩 RMP의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7월 제도출범 이후 2020년까지 누적 공급 건수는 총 4,418건이며, 2020년에만 신규 공급 건수가 약 664건을 기록하였다. 누적 가입자 수는 4,418명이며, 1인 가입자의 비중이 6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2인 가입자(35.3%), 3인 가입자(0.1%)의 순서로 나타났다. 평균 가입자 연령은 68세(55~103세), 평균 주택연수는 30년(1~61년)이며 평균 주택가격은 HK\$5.6m(HK\$0.4m~HK\$51m), 평균 월지급금은 HK\$16,100이다. 지급기간은 종신기간의 선택 비중이 48%로 가장 높으며 10년은 24%, 15년과 20년은 각각 15%와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홍콩의 공적 역모기지는 2011년 출시 이후 저조한 가입률을 개선하고자 2012년 11월부터 2016년까지 총 세 차례 제도 개선을 단행하였다.

1차 제도 개선(2012년 11월)에서는 다수의 고령층이 역모기지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조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이를 위해 가입 가능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조기 은퇴자나 60세 이하

배우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잠재 수요층을 넓히고자 하였다. 또한 담보 주택가격의 최대 인정한도를 HK\$8백만(약 12억 원)에서 HK\$15백만(약 23억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목돈이 필요한 고령층을 위하여 일시금 인출 한도를 대출한도의 50%에서 90%로 상향하였다. 단, 일시금 인출 용도를 모기지 상환, 주택수선 및 유지비, 의료비 등의 용도로 제한하여, 평생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라는 역모기지의 주목적을 퇴색시키지 않도록 하였다.

1차 제도 개선 이후에도 기대보다 가입자가 확대되지 않자 2015년 3월 HKMC는 추가적 가입 조건 완화를 통해 대출가능 금액의 확대와 역모기지 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시행하였다. 담보주택 대상 주택 수를 1주택 이상으로 확대하여 다주택자도 여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가입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대출자의 주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은행의 승인을 통해 담보주택 임대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최대 공동 대출자 인원을 2인에서 3인으로 변경하여, 일반적으로 부부 이외에 자녀까지 포함시켜 가입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역모기지의 담보물을 주택으로 한정하지 않고 생명보험과 연계하여 월지급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60세의 1인 대출자가 주택 1백만 홍콩달러과 함께 사망보험금(1백만 홍콩달러)을 담보로 연계 가입을 할 경우, 종신 월지급금은 월 HK\$ 2,000(약 30만 원)에서 월 HK\$ 3,520(약 52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2016년 10월에는 홍콩주택청(Hong Kong Housing Authority, HKHA)이 공급하는 주택(Subsidised Sale Flat, SSF)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역모기지 가입을 허용하였다. SSF는 홍콩주택청이 2012년 8월부터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할인된 가격에 분양하는 공공주택으로, 입주 시 받은 보조금 혜택(Land premium: 시장가격의 약 35~50%)을 완납하지 못해도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2019년 5월에는 생명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추가적 담보물로 활용 하던 역모기지 연계 옵션이 독립적인 역모기지 프로그램으로 확대된 생명보험 역모기지 프로그램(Policy Reverse Mortgage Program)이 출범하였다. 즉, HKMC는 생명보험계약상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월지급금 등을 산정하며, 은행 등 대출기관은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에 담보물인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대출잔액 상환에 이용한다. <표 3-38>은 생명보험 역모기지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다.

<표 3-38> 홍콩 생명보험 역모기지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가입 대상	60세 이상(파산 혹은 파산신청 중인 경우 신청 불가)
계약 수 제한	대출자는 하나의 PRMP 계약 허용
담보물	생명보험증권이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의 총액은 15백만 홍콩달러(약 22.3억원)로 제한
생명보험 증권	• 보험계약자(Policyholder)와 피보험자(Insured)가 동일해야 함 • 홍콩정부가 공인한 보험사의 계약이어야 함 • 생명보험금에 보험사에 의한 제약·공제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함 • 투자상품의 수익과 사망보험금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야 함 • 사망보험금이 일시에 지불되어야 함 • 보장금액이 전액 불입되어야 함 • 양도 가능하며 수취인 변경에 제약이 없어야 함
지급방식	• 종신지급: 사망 시점까지 대출금 지급 • 확정지급: 정해진 기간 동안 대출금 지급(10, 15, 20년) • 일시지급: 특정 목적만 가능(집수리 및 유지비용 충당, 의료비 등)
이자 방식	• 변동금리: 연간 홍콩우대금리(Hong Kong Prime rate)-2.5% • 고정금리: 연간 4.0%(가입 후 25년), 변동금리와 동일(25년 이후)

자료: 홍콩 HKMC(Hong Kong Mortgage Corporation) <https://www.hkmc.com.hk>

다. 싱가포르

미국, 홍콩 등의 공적 역모기지는 우리나라 주택연금과 상당히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으나 싱가포르는 특수한 주택시장 환경과 더불어 역모기

지와 연금제정이 직접 연계되는 등의 고유한 제도적 특성을 갖고 있다. 싱가포르의 토지국유화 제도를 토대로 국가 주도의 자가보유 정책을 추진해왔다. 싱가포르의 경우 주택공급이 주로 주택개발청(Housing & Development Board, HDB)을 통해 99년 장기임대 형태로 제공된다. 2020년 기준 싱가포르 HDB 공공주택 거주 비율은 79%, 자가보유율은 88% 수준이다.

싱가포르 역모기지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된다. 공공부문은 2009년 주택개발청 주도로 도입한 LBS(Lease Buyback Scheme)이며, 민간부문은 2021년 민간 주택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인 DBS에서 출시한 EIL(Home Equity Income Loan)가 있다. 운영 주체는 다르지만 두 제도 모두 중앙연금 기금(Central Provident Fund, CPF)의 퇴직계정(Retirement Account, RA)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3-39〉 싱가포르 민간 역모기지지와 공적 역모기지지의 비교 요약

구분	공적 Lease Buyback Scheme(LBS)	민간 Home Equity Income Loan
거래방식	매각	담보제공
이용방식	매각대금을 중앙연금 기금 은퇴 계정에 적립(최소 금액 \$99,400)하여 종신연금 수령	대출금을 중앙연금 기금 은퇴 계정에 적립(최소금액 \$99,400)하여 종신연금 수령
종신 거주	매각 후 해당 주택에 최대 35년간 거주를 보장	대출기간은 최대 30년(단, 부부 기준 연소자 기준 연령이 95세 시점까지)
노후생활보장	종신연금(CPF LIFE) 수령액 상향을 통한 노후생활자금 보완	

자료: 싱가포르 HDB(Housing & Development Board)
<https://www.hdb.gov.sg/cs/infoweb/homepage>

구체적으로 LBS는 가구의 월 소득이 S\$14,000 이하인 1주택 보유 65세 이상 고령자가 적용 대상으로 가입 전에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잔여 임대기간은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표 3-40〉 싱가포르 HDB의 Lease Buyback Scheme 주요 특징

구분	주요 요건
나이/시민권	65세 이상/최소한 한 명의 소유자는 시민권자
주택유형	모든 HDB 공공주택 (단기임대, HUDC*, Executive Condominium(EC*) units 제외) * HUDC와 EC는 HDB의 일반 주택보다 넓은 면적과 편의시설을 제공
주택보유 수	본건 1주택자
소득	월 가구소득 S\$14,000 이하
거주기간 / 잔여 임대기간	가입 전 해당 주택에 최소 5년 이상 거주 / 최소 20년 이상

자료: 싱가포르 HDB(Housing & Development Board)
<https://www.hdb.gov.sg/cs/infoweb/homepage>

노후소득 형성을 위해 HDB 공급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LBS를 통해 잔여 임대기간을 HDB에 판매하고 그 대가를 적립식 사회보장제도인 Central Provident Fund(CPF)의 은퇴 계좌(Retirement Account, RA)에 적립해야 한다. LBS 매각대금을 CPF RA에 적립하는데 납입금액에 비례하여 현금보너스를 지급(2S\$당 1S\$를 지급)함으로써 LBS 수요 및 CPF의 은퇴 계좌 적립을 유도하고 있다. 만약, 임대가 조기 종료(Premature Termination)될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HDB에 반환하거나 잔여기간의 임대가치를 환불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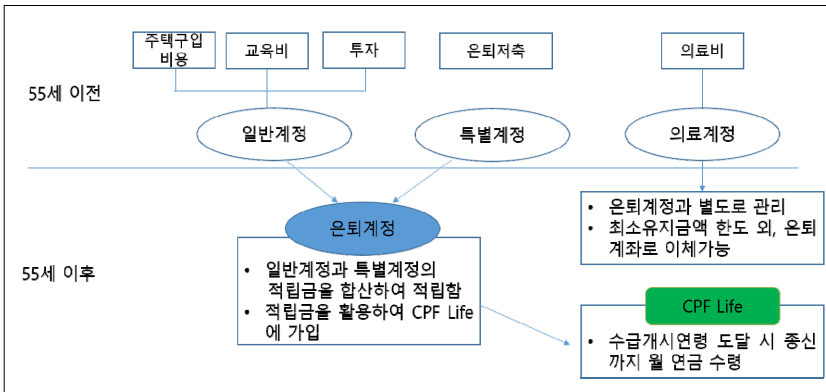
반대로 이용자가 임대 기간 이상으로 오래 생존하는 경우에는 건강상태, 재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와 가족의 적절한 주거 공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가 임대기간 내에 사망할 경우, 아래의 2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

- ① 배우자와 가족이 임대 잔여기간 동안 거주하는 방법
- ② HDB에 아파트를 반환하고 잔여 임대 가치를 상환받는 방법

CPF RA에 적립된 금액은 CPF Life를 통해 55세 이후 가입자의 종신 연금 재원으로 활용된다. 가입자가 CPF Life에 의한 종신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급 6개월 전 CPF RA에 최소금액 S\$99,400(2023년 기준)이 적립되어야 한다.

참고로 싱가포르의 CPF는 가입자에게 RA 이외에도 일반계정(Ordinary Account, OA), 특별계정(Special Account, SA), 의료저축계정(Medisave Account, MA) 등을 제공한다. OA는 주택 구입, 투자, 생명보험, 교육자금 등의 용도로 활용된다. SA는 주로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은퇴 관련 금융상품 투자 포함)을 위해 활용된다. MA는 의료비용을 충당하며 RA는 OA와 SA로부터 적립된 금액을 CPF LIFE annuity scheme을 통한 연금 수령을 위해 55세에 생성한다.

[그림 3-14] 싱가포르 CPF 계좌의 구성



자료: 국토연구원(2023)의 내용을 일부 수정

LBS는 2009년 시행된 이래 2013년, 2015년, 2019년 세 차례 제도 변화를 거쳤다. 2013년 1차 개정은 LBS를 통한 매각대금의 개인 소유 상한을 상향 조정하였다. 개정 이전에는 S\$5,000까지 개인이 소유할 수 있

있고 잔여금액은 의무적으로 CPF에 적립해야만 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최대 S\$100,000로 상향되었다. 이후 2015년 단행된 2차 제도 변화는 가입 대상 주택의 범위를 확장하고 소득 요건이 완화되었다. 2차 제도 변화에 의해 HDB 공급 주택의 35%에서 75%로 LBS의 가입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에 더해 기존에는 가입 가능 소득이 S\$3000(약 260만 원)에서 개정 후에는 S\$10,000(약 860만 원)로 소득요건이 완화되었다. 2019년 시행된 3차 개정에서는 HDB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이 LBS의 가입 대상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소득 기준은 S\$14,000로 상향되었다.

〈표 3-41〉 싱가포르 LBS 제도 변화

구분	대상 주택	소득요건	CPF 입금액	LBS 현금보너스
0차	-	-	최대 S\$5,000 제외한 금액	-
1차 2013.03	-	S\$3,000 (300만 원)	최대 S\$100,000 제외한 금액	S\$20,000 (약 1,980만 원)상향
2차 2015.04	방 4개의 HDB 공급주택	S\$10,000 (990만 원)	상동	방 4개 가입자: 가구원 수당 S\$10,000
3차 2019.01	모든 HDB 공급주택	S\$12,000 (1,190만 원)	상동	방 5개 가입자: 가구원 수당 S\$5,000 (약 430만 원)
현재 2022.01	상동	S\$14,000 (1,380만 원)	상동	최대 S\$30,000 (약 2,960만 원)

자료: 백인걸·고제현(2019),

싱가포르 HDB(Housing & Development Board)

<https://www.hdb.gov.sg/cs/infoweb/homepage>

한편, 민간 부문의 경우 1997년 이후 NTUC income와 OCBS bank에서 공급하였으나 실적 부진으로 2009년 이후 판매가 중단되었다가, 이후 2021년에 민간 금융기관인 싱가포르 개발은행(DBS)에서 중앙연금 기금(Central Provident Fund, 이후 CPF)과 연계하여 채출시하였다. 현행 DBS의 Home Equity Income Loan 담보대출이 없는 민간 주택을

담보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Home Equity Income Loan을 통한 대출금을 CPF 퇴직 계정에 적립하여, 종신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대출기간은 30년(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95세가 되는 시점까지 가능)으로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액 및 미지급이자를 상환하는 형태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택연금과 일부 유사하나, 대출 종료 시 대출금액이 담보주택 가격을 초과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이 소구권을 행사하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표 3-42〉 싱가포르 Home Equity Income Loan의 주요 특징

구분	주요 요건
나이	65세 ~ 79세
시민권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담보주택 요건	대출이 없는 민간 주거용 부동산
대출기간	최대 30년(이용자가 95세가 될 때까지)
최대 대출금액	CPF(Enhanced Retirement Sum) 충전 한도

자료: 싱가포르 DBS Bank <https://www.dbs.com.sg/index/default.page>

라. 일본

일본은 민간 역모기지와 공적 역모기지가 공존하는 형태이다. 일본의 민간 역모기지는 1980년대 중반부터 공급되었으나 실적이 미미하였고, 2012년 이후 일본 정부에서 역모기지 활성화를 추진하여 취급 은행이 증가하였다. 2017년 기준 약 45개 금융회사에서 민간 역모기지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이 중 도쿄스타뱅크의 예금담보 역모기지 상품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50%로 추정되는데 2015년 11월 기준 약 4,700건이 공급되었다.

민간 역모기지를 금융기관들은 엄격한 가입조건을 적용하여 역모기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 소재지(수도권 중심) 제한, 주

택가격 하한(예. 단독주택 가격 6,000엔 이상), 안정적인 수입과 금융자산 보유 조건, 매월 이자상환 요구, 담보가치 재평가 후 일시 상환 요구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까다로운 가입조건은 역모기지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공적 역모기지는 1981년 운영되기 시작되어, 2003년 중앙정부의 ‘장기 생활지원자금 대출 제도’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역모기지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 역모기지 역시 주택가격 제한(1,500만 엔 이상), 담보가치 재평가 후 상환 요구 등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실적이 저조하였다. 실제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공적 역모기지 공급 건수는 약 2,720건에 불과하였다.

공적 역모기지제도 중 ‘고령자 변제특례제도’는 주택금융지원기구(이하 기구)가 승인한 보증기관(고령자주택재단)의 보증을 바탕으로 기구에서 직접 대출하는 형태의 역모기지제도이다. 대출 조건은 만 60세 이상의 주택수선, 재건축 등 주택 리모델링 자금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이후에 이용자는 매월 이자를 상환하다 사망 시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구조이며, 수입 대비 상환부담률은 연 수입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체로 35% 또는 40%를 적용한다.

또한, 일본 주택금융공사(Japan Housing Finance Agency, JHF)의 역모기지 보증은 민간 은행의 역모기지 대출에 공적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로 2009년 도입되었다. 2018년 1월 기준 32개 금융기관이 취급 중이며, 중소은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용 조건은 만 60세 이상에 주택 건설·구입·리모델링, 고령자 전용 주택 입주 일시금, 대출 상환 등으로 용도가 제한되며, 대출 용도별로 대출한도가 상이하다. 또한, 주택 소재지(수도권 중심) 제한, 단독주택만 담보 인정 등 주택과 관련된 가입요건의 제한이 강하다. 대출상환 방식은 매월 이자를 상환하는 형태인 이자상환 방식과 이자가 대출금에 포함되어 계약 종료 시점에 일시 상환하는 형태인 잔액

합산 방식으로 구분된다. 상환부담률은 이자상환 방식의 경우 연 수입이 400만 엔 이상인 경우 35%, 400만 엔 미만의 경우 40%가 적용된다.

공적 역모기지지는 주택가격 하한은 없으나, 민간 역모기지지와 마찬가지로 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제약, 주택 소재지 제한, 담보물의 지속적 재평가 등과 같이 금융회사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약을 두고 있다.

마. 영국

영국은 민간 역모기지 형태의 주택지분 유동화(Equity release) 시장이 형성되었다. 주택지분 유동화 방식은 크게 평생주택담보대출(Lifetime Mortgage)과 주택매각 방식(Home Reversion Plan)이 존재한다. 주택지분 유동화 상품은 민간보험회사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

평생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없이 대출을 통해 노후생활비를 지급받고, 사망이나 장기 요양소 입소 등 대출 종료 사유 발생 시 원리금을 상환하는 상품이다. 대출금 지급방식은 정기적인 금액인출(Regular Income, 2019년 이후 선택 가능)과 수시인출(drawdown plans), 일시인출(lump sum plans) 방식이 존재한다. 여기서 수시인출방식은 인출한도 내에서 필요시 자유롭게 인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아래의 표는 2022년 하반기 평생주택담보대출 신규 이용자에 대한 대표적 특성을 보여준다.

〈표 3-43〉 영국 평생주택담보대출 신규 이용자의 특성

구분	Lump sum Lifetime mortgage	Draw down Lifetime mortgage
가입자 연령	68.4세	68.8세
담보주택 가치	428,482	454,931
대출이율	5.14%	4.82%
대출금액	131,299	일시 인출금 £85,785를 포함하여 £135,047
LTV(Loan To Value)	30.6%	29.7%

자료: 영국 Equity Release Council. <https://www.equityreleasecouncil.com/>

반면, 주택매각 방식은 주택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Reversion company에 시장가격보다 할인하여 매각한 금액을 일시금 또는 종신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상품이다. 여기서 주택지분 매각대금은 비과세 금액이다. 또한, 주택지분 비율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중도에 증가시킬 수도 있으며 종신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가입자의 사망 등으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주택을 시장에 매각하여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주택 매각대금을 배분한다. 이는 계약 이후 주택가격 변화에 따른 위험을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매각하는 지분 비율이 사전에 확정되기 때문에 상속 등 다른 목적의 지출을 위한 자산배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국의 경우 민간 역모기지 형태이지만, 자산유동화 상품 판매 후 발생할 수 있는 주택가격 하락에 의한 주택가격 초과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역모기지 가입자의 상황이 면제되는 유한책임대출(No negative equity guarantee) 조항이 존재한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4장

노후소득보장 전망 및 분석 결과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전망 결과

제4장 노후소득보장 전망 및 분석 결과

제1절 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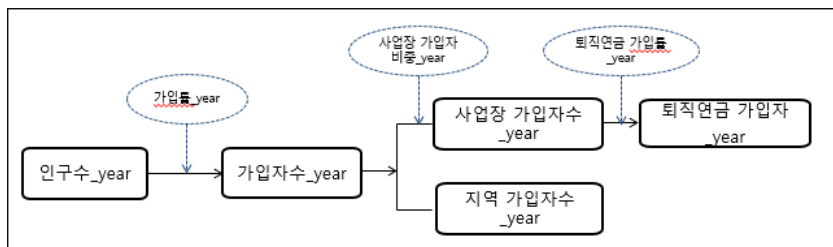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 장기적인 노후 소득수준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불확실한 미래의 전망을 위해서는 가정 설정이 필연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의 장기재정전망 가정과 모형을 준용하여 접근해 보고자 한다.

1. 분석 개요

노후보장 수준 분석을 위한 모델링은 인구로부터 가입자를 산출하고 가입종별 비중을 통해 가입종별 가입자와 퇴직연금 가입자를 구분하는데, 가입자 수 전망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방법론을 토대로 한다.

가입자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국민연금 가입률을 통해 결정되고, 경제활동인구는 인구수 대비 경제활동참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데, 가입자는 인구 대비 국민연금 가입률로부터 산출한다.

[그림 4-1] 노후소득보장 수준 분석 개요



2. 국민연금

가. 국민연금 재정계산

연금제도는 가입에서 연금 수급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에 걸쳐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현황에서 확인해 본 당장의 재정 상태가 양호함에 안심할 것이 아니라 생애 주기를 고려할 수 있는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재정 상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저부담·고급여 등 수급 부담 구조의 불균형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주기적인 재정계산을 통해 미래의 재정 상태를 사전에 미리 점검하고 개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개혁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1998년에 법 개정을 통해 도입⁸⁶⁾되었는데, 2003년에 재정계산을 최초로 시행하였고 2008년에는 2차, 2013년 3차, 2018년 4차 재정계산을 각각 시행하였다.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르면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전망과 연금 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장기재정전망의 주요 결과로는 재정 추이의 관점에서 수입과 지출에 관계되는 현금 흐름에 따른 적립기금 추이를 살

86) 제4조(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급여액 조정) ① 이 법에 따른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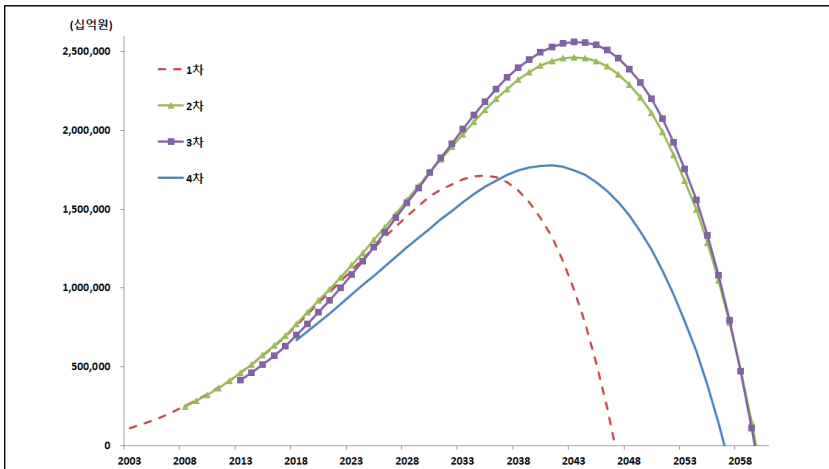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급여액,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 유지,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퍼보는 한편, 재정수지구조의 관점에서 부과방식 비용률⁸⁷⁾을 살펴보고 있다.

적립기금 추이는 국민연금제도가 좀 더 성숙하여 연금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여, 급여지출 규모가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입을 합한 규모를 상회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그 이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3년 1차 재정계산에서는 204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2007년 급여 삭감에 의한 연금개혁의 영향으로 2~4차 재정계산 결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정점이 높아졌고, 기금소진 시점도 다소 뒤로 미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저부담 고급여의 영향으로 향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4차 재정계산의 결과에 따르면, 적립기금 규모는 2041년까지 지속적으로 커지고 그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57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2] 1~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적립기금 규모 전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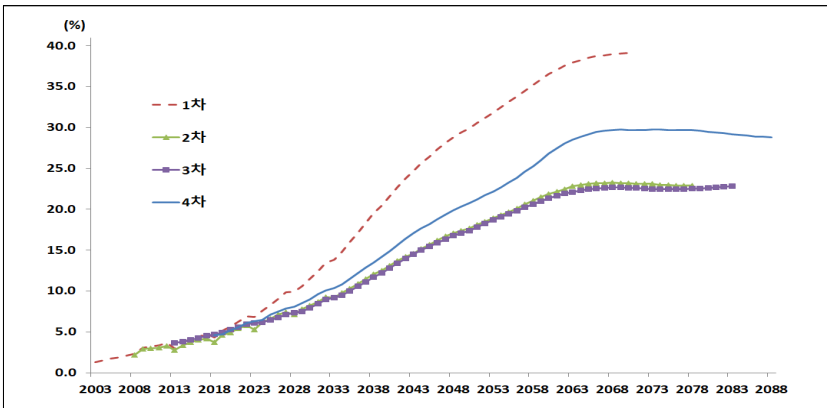


자료: 1~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전망 결과 참고하여 재작성.

87) 부과방식 비용률은 전체 보험료 부과대상소득 대비 전체 급여지출의 비율로 정의되는데, 연금 보험료로만 급여지출을 충당해야 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임.

부과방식 비용을 또한 제도 초기의 영향으로 전망 초반에는 현행 보험료를 9%보다 낮은 수준에서 출발하지만, 연금 수급자 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장기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3년 1차 재정계산에서는 장기적으로 거의 40% 이르던 수준이 2~4차 재정계산에서는 2007년 급여 삭감에 의한 연금개혁의 영향으로 그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지속되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의 영향으로 여전히 현행 보험료를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8년 4차 재정계산에서의 결과에 따르면, 부과방식 비용률은 장기적으로 현행 보험료를 9%의 3배 이상이 되는 29%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3] 1~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부과방식 비용률 전망 비교



자료: 1~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전망 결과 참고하여 재작성.

최근에 실시된 2023년 5차 재정계산 결과는 2023년 3월 말에 발표했다. 5차 재정계산의 전망 결과⁸⁸⁾에 따르면, 적립기금 소진 시기는 이전의 재정계산보다 빨라진 2055년, 그 이후 장기적인 부과방식 비용률은 더 높아져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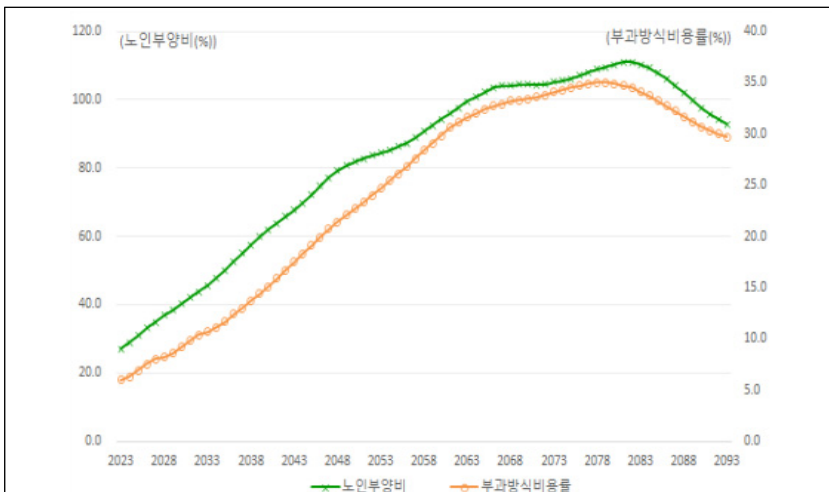
88)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2023.3.30.)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결과 설명 자료 인용 및 작성

기금소진은 2055년, 2041년부터 재정수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어, 5년 전 4차 재정계산에 비해 기금소진 기점은 2년, 수지 적자 전환은 1년 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3년 제5차 재정계산 결과에서는 향후에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의 부과방식 비용을 전망하였다. 부과방식 비용률은 매년 발생하는 급여지출을 기금투자 수익을 제외한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으로만 부담한다는 전제하에서 필요한 보험료율로 해석할 수 있다.

2030년에는 현재의 보험료율 수준인 9%를 넘어서고, 2040년대 후반에는 20%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60년에는 현재의 보험료율 9%의 3배인 27%를 넘어서고 이후에도 증가 추세를 유지하여 2070년 33.4%, 2080년에는 34.9%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80년대 이후에는 인구구조가 상대적으로 안정 추세를 유지하면서 그 이후의 비용률은 이전에 비해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4]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부과방식 비용률 전망



자료: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2023.3.30.)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결과 설명자료

나. 전망 전제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에서의 가정 부분은 크게 인구 가정, 거시경제 가정, 제도변수 가정의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5차 재정계산에서 사용된 가정들을 살펴보고 이를 전망에 활용하고자 한다.

1) 인구 가정

인구 가정은 기본적으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2023년 5차 재정계산에서 사용된 인구 가정은 2021년에 발표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로, 출산, 사망, 국제이동에 의한 인구변동 요인별 가정을 인구균형 방정식(demographic balancing equation)에 적용하는 조성법(cohort component method)에 의한 전망 결과이다. 합계출산율 가정은 2023년 0.73명에서 0.7명까지 하락한 이후 반등⁸⁹⁾해 2030년 0.96명, 2046년 이후 1.21명 수준으로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사망 요인에 해당하는 기대수명은 2023년 84.3세에서 2070년 91.2세까지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국제 순이동은 2023년 4만 3천 명에서 2030년 4만 6천 명으로 증가하고, 2070년에는 4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89) 통계청에서는 코로나19로 연기된 혼인 회복, 2차 에코세대(출생아 수 70만 명대)인 91년생의 30대 진입 등에 의한 반등을 예상함.

〈표 4-1〉 분석을 위한 인구변동 요인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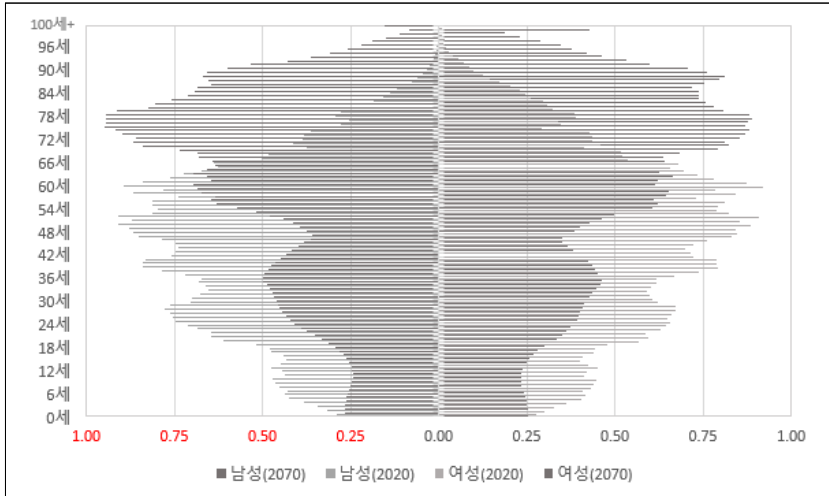
구분	2023	2030	2040	2050	2060	2070
합계출산율 (명)	0.73	0.96	1.19	1.21		
기대수명 (세)	84.3	85.7	87.4	88.9	90.1	91.2
국제 순이동 (천 명)	43	46	46	43	43	40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보도자료. (2021. 12. 9).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415453&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rch&sTarget=title&sTxt=%EC%9D%B8%EA%B5%AC%EC%B6%94%EA%B3%84 에서 2021. 12. 15. 인출.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초저출산 등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총인구수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2021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이후 인구수가 점차 줄어들어 2030년에는 약 5,120만 명으로 나타난다. 2070년은 3,766만 명 수준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1979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2019년 특별인구 장래추계에 비해 고령화 진행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고령화 정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4-5]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년과 2070년 비교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보도자료, (2021. 12. 9).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415453&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rc&h&sTarget=title&sTxt=%EC%9D%B8%EA%B5%AC%EC%B6%94%EA%B3%84 에서 2021. 12. 15. 인출.

2) 거시경제변수 가정

경제변수 가정은 인구 가정에서의 장래인구추계를 기반으로 전망된 결과를 사용하는데, 경제전망에서는 장기적인 경제성장률 전망과 일관성을 유지 하면서 국민연금 재정전망에 주요 외생변수로 활용되는 물가상승률, 임금 상승률 및 금리를 연도별로 전망하고 있다. 5차 재정계산에서 전망된 결과에 따르면, 실질경제성장률은 2023~2030년 연평균 1.9%에서 2031~2040년 1.3%, 2041~2050년 0.7%로 둔화되고 그 이후에는 0.2~0.4%의 완만한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실질임금상승률은 2023~2030년 연평균 1.9%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2060년대 이후에는 1.5~1.6%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전망되었고, 실질금리는 2023~2040년 연평

균 1.4%에서 2041~2050년 1.3%로 소폭 하락하고 그 이후에는 1.2%로 전망되었다. 물가상승률은 2023년 3.2%에서 그 이후에는 물가안정 목표 수준인 2.0%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핵심 연령층인 30~54세의 경우 남자는 2030년까지 정체 내지 소폭 감소하나 2031년 이후 인구 감소로 노동력 증가 유인이 발생함에 따라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전망하였고, 여성은 30~44세는 꾸준히 상승하고, 45~59세는 2040년까지는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일정하게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4-2〉 분석을 위한 경제변수 가정

(단위: %)

구분	'23~'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93	기간 평균
실질 경제성장률	1.9	1.3	0.7	0.4	0.2	0.2	0.3	0.7
실질 임금상승률	1.9	1.9	1.8	1.7	1.6	1.6	1.5	1.7
실질금리	1.4	1.4	1.3	1.2	1.2	1.2	1.2	1.3
물가상승률	2.2	2.0	2.0	2.0	2.0	2.0	2.0	2.0
경제활동 참가율	62.5	60.3	57.6	54.9	53.9	53.2	53.4	56.2

주: 1) 제시된 경제변수 가정은 해당 기간의 단순평균이며, 기간평균은 '23~'93년의 평균임.

2)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뜻함.

자료: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 시산결과 설명자료(2023. 1)

적립기금 추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금투자수익률 가정은 거시경제 전망에 기초하여 주식, 채권, 대체투자의 자산군별 기대수익률을 산출하고 자산군별 자산배분 비중을 가중하여 전체 기금투자수익률을 가정하였다. 자산배분 비중은 향후 5년(2023~2027년)은 중기자산배분을 반영하고 그 이후의 자산배분은 중기 자산배분상의 2027년 자산군별 비중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기금운용에 따르는 직간접적인

운용비용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의한 기금투자수익률 수준은 전체 재정전망기간 중 연평균 4.5% 수준이다.

〈표 4-3〉 분석을 위한 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 가정

(단위: %)

구분	'23~'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93	기간 평균
기금투자 수익률	4.9	4.6	4.5	4.5	4.4	4.4	4.5	4.5

주: 제시된 경제변수 가정은 해당 기간의 단순평균이며, 기간평균은 '23~'93년의 평균임.

자료: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 시산결과 설명자료(2023. 1)

3) 제도변수 가정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에 있어서 제도변수는 국민연금 가입률, 지역가입자 비중, 납부예외자 비율, 지역가입자 징수율, 지역가입자 소득수준의 5가지 변수가 사용된다. 5차 재정계산에서는 이러한 제도변수들은 관련 실적자료에 기초한 통계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2040년까지 전망하고, 그 이후에는 통계적 방법론에서 산출되는 2040년의 전망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표 4-4〉 분석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변수 가정

(단위: %)

구분	'41~'50	'51~'60	'61~'70	'71~'80	'81~'93	기간 평균
국민연금 가입률	92.6	93.5	93.8	93.9	94.1	94.0
지역가입자 비중	31.4	30.9	27.9	25.5	23.6	24.6
납부예외자 비율	40.0	39.2	38.0	36.3	34.3	35.1
지역가입자 징수율	72.1	73.9	75.9	76.8	77.7	77.2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46.0	46.7	46.4	46.1	46.0	46.0

주: 제시된 가정변수는 해당 기간의 단순평균이며, 기간평균은 '23~'93년의 평균임.

자료: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 시산결과 설명자료(2023. 1)

3. 퇴직연금

국민연금 전망에서와 마찬가지로 퇴직연금의 전망에서도 미래에 대한 적절한 가정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퇴직연금 현황에 따르면, 현재 퇴직연금제도의 현실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퇴직연금 급여에 의한 노후소득 수준은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이 될 수 없다. 근로자의 가입률 수준은 50%대 초반에 머물러 있고,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대부분은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급여를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현황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가정하기보다는 국민연금 제도에서의 강제적인 성격을 반영했을 때 다소 유의미한 퇴직연금제도에 의한 노후 소득수준을 언급할 수 있다.⁹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퇴직연금제도에 의한 노후 소득수준을 전망하기 위해서 우선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모형에서의 사업장가입자 부분을 준용하여 접근해 보고자 한다.

2023년부터 18~59세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모두 퇴직연금 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60세 이전까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수준에 퇴직연금 보험료율로 8.33%⁹¹⁾를 적용하여 퇴직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납부된 퇴직연금 보험료는 5차 재정계산에서 가정된 임금상승률 수준을 운용수익률로 가정하여 발생한 기금운용 수익을 누적하여 적립한다. 이렇게 적립된 퇴직연금 적립액은 65세 시점에서 연금으로 수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른 보험 수리적 과정에 의한 연금액을 산출하여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수급⁹²⁾하는 것으로 가정한

90) 관계부처에서 도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들을 퇴직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취지를 보다 잘 구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향후에는 보다 높은 퇴직연금 가입률과 보다 높은 연금 수령 비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91) 이는 DB형 제도에서의 급여 수준에 해당하는 근속 연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또는 DC형 제도에서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을 고려

92) 현재 퇴직급여의 연금 수령 비중을 감안하면 이 또한 비현실적인 가정일 수 있는데, 퇴직

다. 이러한 가정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상한 등에 의한 차이나 퇴직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과의 차이 등에 있어서 실제 퇴직연금제도의 제반 여건과 다소 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모형이 평균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용 가능한 가정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퇴직연금 적립금의 기금운용 수익을 위한 운용수익률 가정을 5차 재정계산에서의 임금상승률 수준으로 가정한 것은 현재의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을 고려할 때 다소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적립된 퇴직연금액을 연금화할 때 사용할 이자율의 일관성을 고려한 선택으로, 이와 관련한 보험 수리적 산식은 다음과 같다.⁹³⁾

$$B = V_0 \cdot \ddot{a}_x^{-1}$$

$$\ddot{a}_x = \sum_{t=0}^{w-x-1} {}_t p_x \cdot (1 + R_t)^{-t}$$

여기서 B 는 매년 수급하게 되는 퇴직연금액, V_0 는 65세 시점에서 연금화할 퇴직연금 적립액, ${}_t p_x$ 는 생존확률, R_t 는 t 시점의 이자율, w 는 한계 연령이다.

퇴직연금제도에 의한 수급률은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모형에서 사업장가입자 부분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 사업장가입자로만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갖는 노령연금 수급자 규모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노령연금 수급자 규모 중에

연금제도 활성화와 더불어 공무원연금제도에서의 관련 현황을 참고하면 장기적으로 연금 수령 비중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2023 인사혁신통계연보에 의하면, 공무원연금에서 1982년 연금 선택률이 32.6%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연금 선택률이 90~95%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인사혁신처. (2023). 2023 인사혁신통계연보, p.91, <https://www.mpm.go.kr/mpm/ebook/2023stat/ecatalog5.html>에서 2023.8.2. 인출)

93) 실제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정하지 않음

서 가입기간별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는 규모를 산출해 보기 위해서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가입기간별로 가능한 모든 경우는 다음과 같다.

$$\sum_{d \geq 10} \sum_{d_w \geq 0} {}^d C_{d_w} \text{prob}(W)^{d_w} \times \text{prob}(R)^{d-d_w}$$

여기서 d 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가입기간, d_w 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한 기간, ${}_d C_{d_w}$ 는 d 중에서 d_w 인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조합 기호, $\text{prob}(W)$ 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확률, $\text{prob}(R)$ 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확률이다. 이번에는 동일한 기호를 사용해서 사업장가입자로만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sum_{d \geq 10} \sum_{d_w \geq 10} {}^d C_{d_w} \text{prob}(W)^{d_w} \times \text{prob}(R)^{d-d_w}$$

그러면 퇴직연금 수급자 규모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규모에 사업장가입자로 10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표현을 전체에 해당하는 경우로 나눈 비율을 적용한 규모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text{prob}(W)$ 와 $\text{prob}(R)$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볼 수 있다.

$$\text{prob}(W) = (1 - \text{지역가입자비중}) \times \text{사업장가입자징수율}$$

$$\text{prob}(R) = \text{지역가입자비중} \times (1 - \text{납부예외자비율}) \times \text{지역가입자징수율}$$

사업장 가입률, 사업장가입자 징수율, 지역가입자 비중, 납부예외자 비율, 지역가입자 징수율은 앞의 국민연금 전망 관련해서 제도변수 가정 부

분에서의 변수별 기간평균 값을 활용하면, $prob(W)$ 와 $prob(R)$ 의 값을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볼 수 있다.

$$prob(W) = (1 - 0.246) \times 0.985 = 0.75$$

$$prob(R) = 0.25 \times (1 - 0.65) \times 0.77 = 0.13$$

이러한 과정으로 퇴직연금 수급자 규모를 산정해 보면, 노령연금 수급자의 99.4%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적으로 노령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은 퇴직연금 수급자가 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국민연금에서 상당수의 가입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고 있고, 지역가입자는 납부예외자 등으로 더욱 줄어드는 상황과 지역가입자의 낮은 징수율을 추가하여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이다.

제2절 전망 결과

1. 국민연금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기본가정에 의하면 적립기금은 2055년에 소진되고, 장기적인 부과방식 비용률은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계산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한 장기적인 국민연금 제도 운영을 위한 전체적인 재정에 대한 전망 결과로, 본 절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노후 소득수준 전망과 같이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에서 전체적인 재정을 전망하기 위해서 연도별, 성별, 연령별로 전망되는 급여지출 중에서 노령연금 급여에 초점을 맞추

어 출생연도별 국민연금에 의한 노후 소득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연금 급여에는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연금, 유족연금 및 일시금 급여가 있지만, 앞의 현황자료에서도 확인하였듯이, 노령연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노후소득의 취지에도 가장 부합하기 때문에, 노령연금 급여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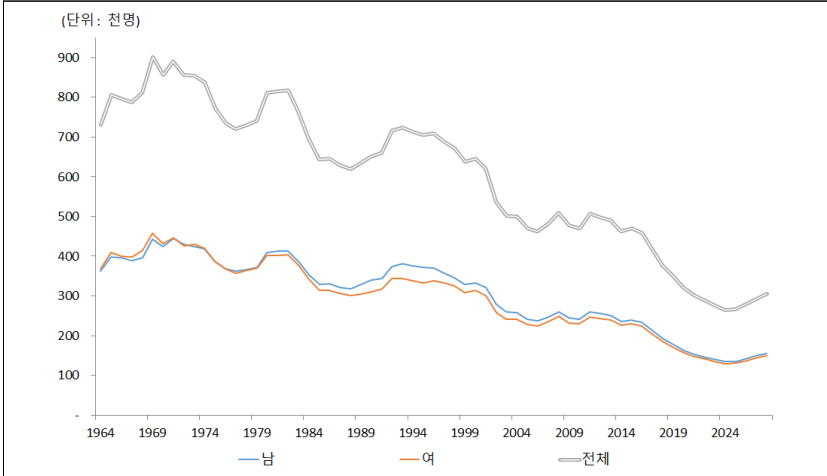
국민연금 급여에서 노령연금은 연령 요건과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만족하면 수급 가능하다. 연령 요건과 관련하여, 제도 도입 당시에는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0세였지만,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5년마다 수급개시 연령이 1세씩 상향 조정되어 2033년부터는 지급개시 연령이 65세가 된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지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세 이전에 수급 개시가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연금액 감액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출생코호트별로 65세 시점의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을 전망하여 노후 소득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에서 살펴보는 출생연도는 5차 재정계산의 재정추계 기간인 2023년부터 2093년 사이에 18~59세의 가입 대상이 되며, 해당 재정추계기간에 65세에 진입하는 1964년생부터 2028년생까지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⁹⁴⁾

우선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의한 출생연도별 65세 시점의 인구수는 [그림 4-6]과 같다. 출생연도별 65세 인구수 추이는 최근의 저출산 세대로 갈수록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는 남녀 규모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지만 1990년생 전후로는 남자 65세의 규모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4) 1964년생의 경우 2023년에 59세로 해당 재정추계기간 중에 가입기간은 짧지만, 그 이전의 가입이력은 모형에 기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4-6] 출생코호트별 65세 인구수 전망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과(2021.12.09.)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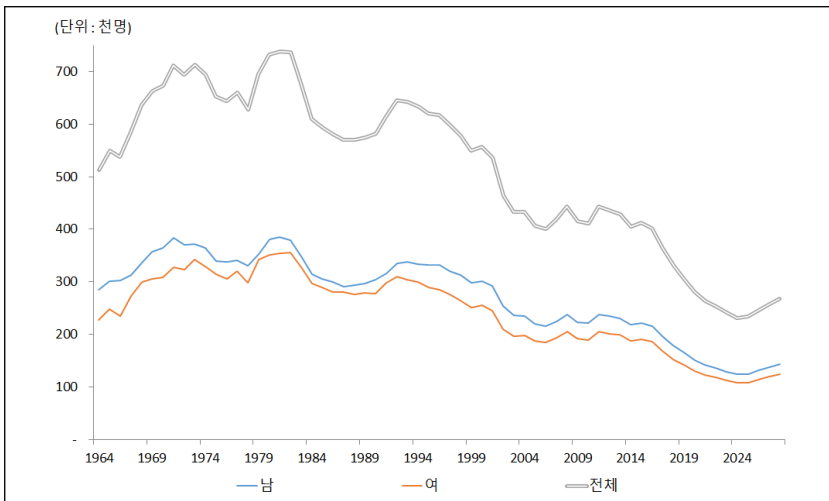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415453&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rc&h&sTarget=title&sTxt=%EC%9E%A5%EB%9E%98%EC%9D%B8%EA%B5%AC에서 인출하여 작성.

이러한 출생연도별 인구 추이를 반영하여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에서 전망되는 65세 시점에서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⁹⁵⁾ 전망 결과는 [그림 4-7]과 같다. 전체적인 개형은 65세 인구의 개형과 유사하지만,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차이로 인하여 남자 65세의 수급자 수가 여자 65세의 수급자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에서 남녀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에 기인하여 갈수록 그 차이는 좁혀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렇게 전망된 출생연도별 65세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65세 기준 인구로 나누어 노령연금 수급률 개념으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남자의 경우는 약

95) 분석에서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출산이나 군복무 크레딧에 의한 노령연금 수급자, 공적연금 연계에 의한 노령연금 수급자,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중복 급여 조정에 의한 부분들은 제외하였으며, 이후에 이어지는 노령연금 급여액에도 이러한 부분들은 포함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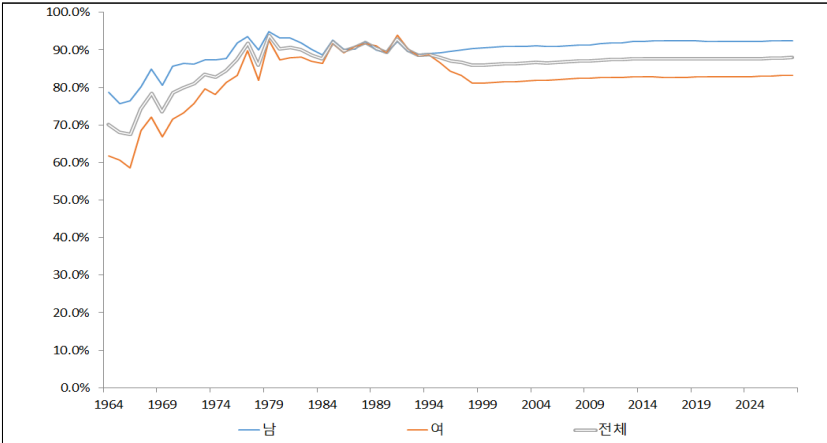
90% 초반대 수준을 유지한다. 여자의 경우에는 1990년생 즈음에서 정점을 찍고 다소 감소하여 2000년생 즈음부터 80% 초반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남녀 간의 차이는 노동시장 여건 차이에 의한 가입기간과 소득수준 차이가 노령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쳐 유족연금에 의한 중복급여 선택 시 여자의 경우 유족연금 선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모형에 반영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림 4-7] 출생코호트별 65세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수 전망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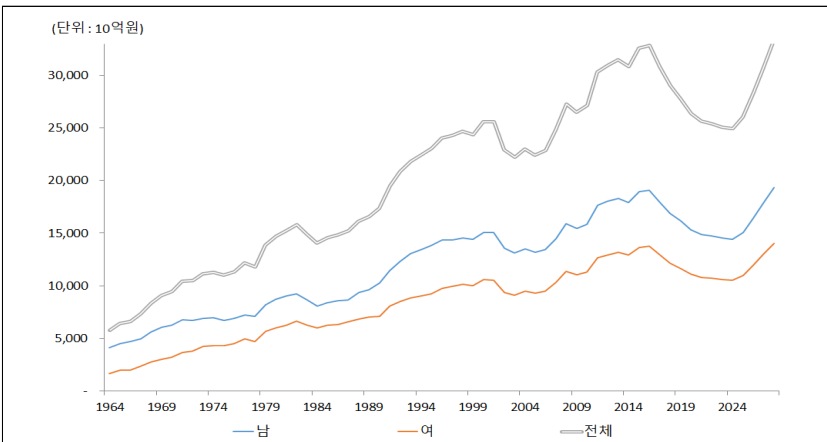
[그림 4-8] 출생코호트별 65세 인구수 대비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 비율 전망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9]는 출생연도별로 65세 시점의 노령연금 전체 급여액 전망 결과로, 남녀 수급자 수 차이 등에 기인하여 전체 급여액에서도 남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림 4-9] 출생코호트별 65세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전체 급여액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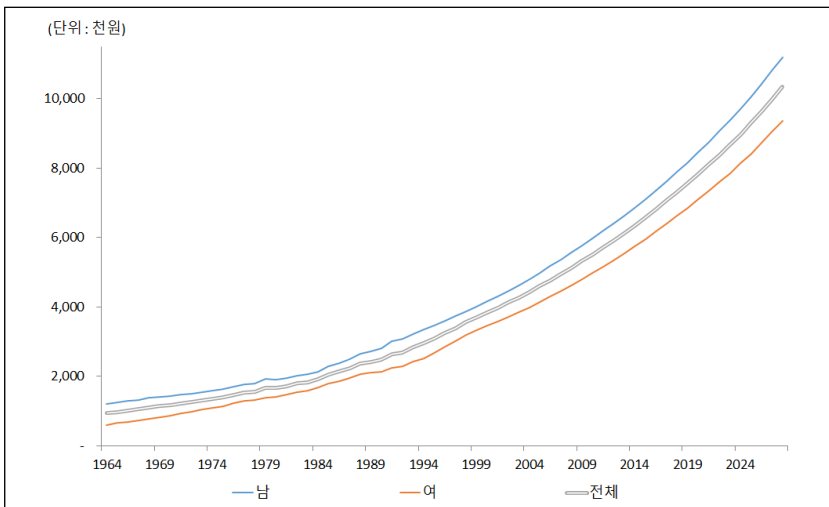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10]은 출생연도별로 65세 기준 월평균 노령연금 급여액인데, 이는 앞에서 제시한 출생연도별 65세 시점의 노령연금 전체 급여액 전망 결과를 출생연도별 65세 시점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로 나눈 것이다. 여기서도 남녀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갈수록 급여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급여액이 증가하는 것은 동일 시점으로 현재 가치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후세대로 갈수록 노후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세대별 노후 소득수준에 대한 비교를 위해서 출생연도별 65세 시점에서의 A값으로 출생연도별 65세 시점에서의 월평균 노령연금 급여액을 나눈 결과를 살펴보았다([그림 4-11] 참조). 일반적으로는 할인율을 선택하여 현재 가치화된 결과로 비교하는데, A값을 통해서 비교하면 할인율은 임금상승률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으며, 출생연도별로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에 해당하는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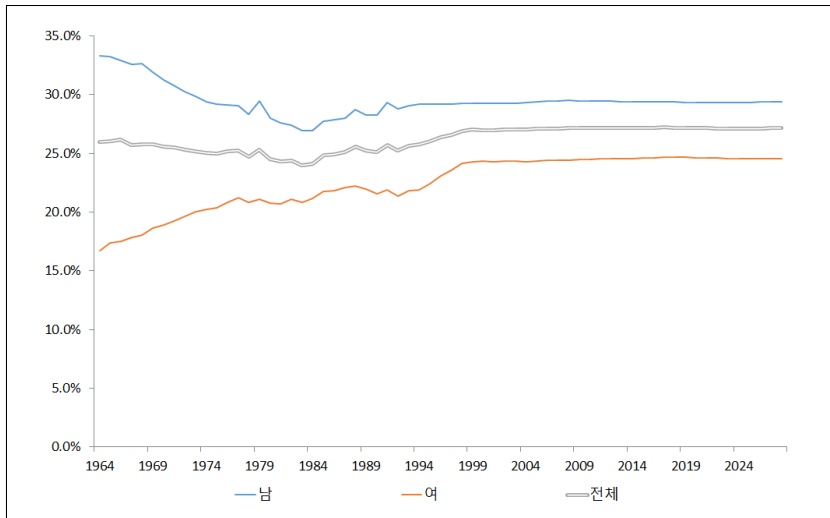
[그림 4-10] 출생코호트별 65세의 국민연금 월평균 노령연금 급여액 전망



자료: 저자 작성

이에 기초하면 여전히 남녀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의 출생연도 세대에서는 남자는 약 30%, 여자는 약 25%에서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2028년 이후 소득대체율이 고정되는 것이 이들 세대가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시기가 맞물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초기 세대에 있어서 남자는 후세대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여자는 초기 세대가 후세대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남자의 경우 초기 세대가 국민연금제도 초기의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여자의 경우에는 제도 초기의 높은 소득대체율 수준보다 노동시장에서의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의 영향으로 가입기간 자체가 짧고, 후세대로 갈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서 가입기간 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림 4-11] 출생코호트별 A값 대비 국민연금 월평균 노령연금액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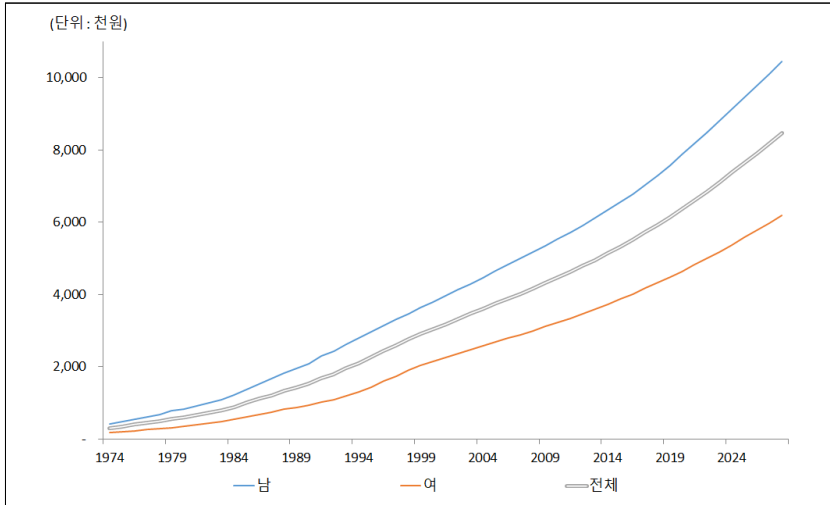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가. 퇴직연금

국민연금에서와 마찬가지로, 출생연도별로 퇴직연금 급여액을 65세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퇴직연금의 연금액은 국민연금 급여 산식과 달리,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보험 수리적 계산에 의해 산정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적립액 규모에 따라서 연금액 수준이 달라지게 된다. 한편,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고려하면, 앞의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모형에서의 전망 시작이 2023년부터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의 퇴직연금 보험료 납입기간이 최소 10년이 가능한 1974년생부터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화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1974년생부터 2028년생까지의 퇴직연금 적립액을 연금화하여 산출한 월평균 퇴직연금 급여액⁹⁶⁾ 추이는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전망 결과와 유사하게 남녀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2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소득수준이 남녀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퇴직연금 적립액을 연금화하는 과정에서 남녀 간에 사망률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96) 앞서 제시된 연금화 산식에서 계산되는 퇴직연금액 B 는 연간액으로 이를 12개월로 추가로 나눈 금액임.

[그림 4-12] 출생코호트별 65세 퇴직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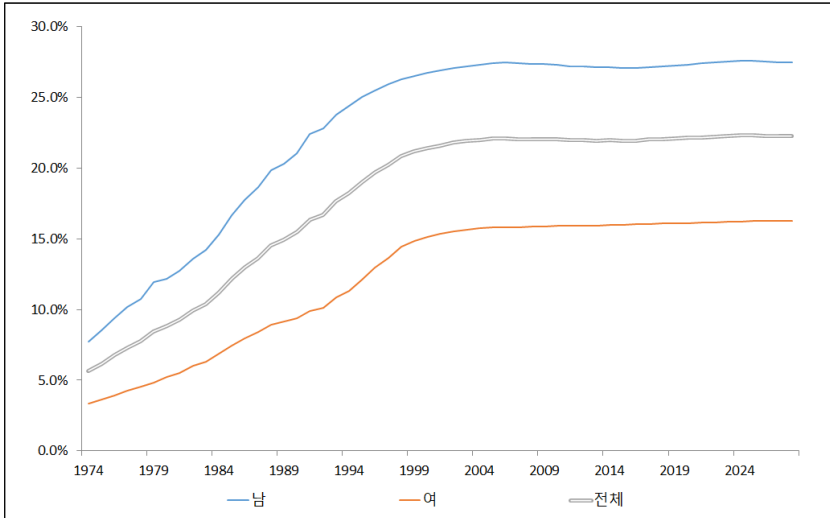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국민연금 전망 결과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서의 A값으로 나눈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4-13] 참조). 국민연금 전망 결과처럼 후세대의 경우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초기 세대에 있어서는 남녀 모두 그 수준이 일정 수준을 향해 점점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출생연도별로 퇴직연금에 가입 가능한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다가 2023년에 18세로 진입하는 세대 이후부터는 모두 동일한 가입기간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즉, 18세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59세까지 퇴직연금에 계속 가입한 것으로 가정한 것인데, 실제 노동시장에서의 이직이나 실직 등을 고려하면 다소 강한 가정이다. 따라서, 그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전망 결과에서의 일정 수준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⁹⁷⁾

97) 더 구체적인 수준에 대한 예시로, 장기적인 평균 가입기간을 25년 정도로 가정하면 제시된 수준의 약 60%(=25년/42년)로 가늠해 볼 수 있음.

[그림 4-13] 출생코호트별 A값 대비 출생연도별 월평균 퇴직연금 급여액 전망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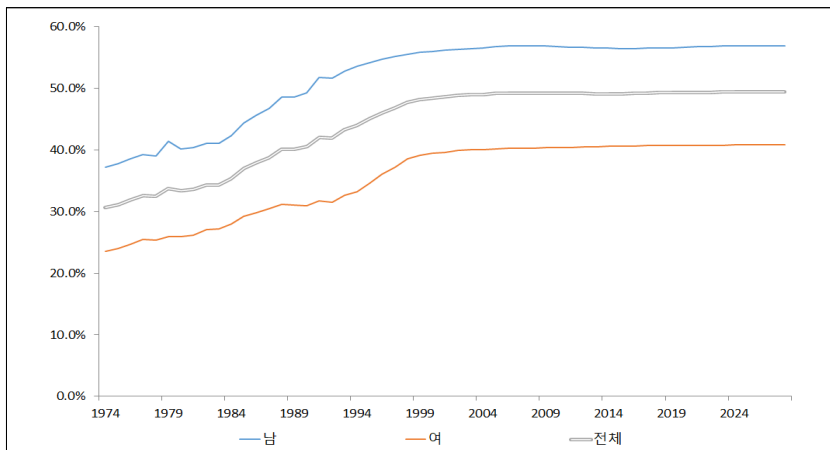
퇴직연금제도에 의한 수급률은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모형에서 사업장가입자 부분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 사업장가입자로만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갖는 노령연금 수급자 규모로 판단해 볼 수 있다.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모형에서 가입자는 크게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사업장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작다. 또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경우 납부예외자로 제외되는 부분과 실제 가입기간 증가로 이어지기 위한 지역가입자 징수율 또한 원천 징수되는 사업장가입자 징수율에 비해 더 낮기 때문에, 노령연금 수급자의 가입기간을 사업장가입에 의한 부분과 지역가입에 의한 부분으로 구분해 보고자 하면 대부분이 사업장가입자에 의한 가입기간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수급률 산정을 위한 퇴직연금 수급자 규모는 국민연금제도의 노령연금 수급자 규모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퇴직연금 가입을 강제가입이 전제되는 국민연금제도의 사업장가입자와 동일시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50% 초반대의 퇴직연금 가입률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 규모의 50% 수준이 퇴직연금 수급자 규모가 되어 퇴직연금 수급률 또한 국민연금 수급률의 5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국민연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에 의한 출생연도별 노후 소득수준을 종합해 보면, 국민연금 A값 대비로, 국민연금에 의한 노후 소득수준은 20% 중반 수준에 퇴직연금에 의한 노후 소득수준 20% 초반 수준을 더하여 약 50% 가까운 노후 소득수준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자의 경우는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에는 4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4] 출생코호트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동시 수급자의 A값 대비 월평균 급여액 전망



자료: 저자 작성

이러한 결과는 퇴직연금제도를 국민연금제도와 유사하게 강제성을 가 정하여 살펴본 것으로 결과 해석에 다소 유의가 필요하다. 즉, 국민연금은 강제 가입으로 인하여 제도 자체나 제반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는 한 전망 결과의 변동 여지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전망 결과의 변동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퇴직연금을 반영하여 제시된 수치 자체는 출생연도별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한 최대 수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연금 수급률과 관련해서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한 연금 수급률 또한 국민연금에 의한 수급률 수준이 최대 수준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엄밀하게는 국민연금제도와 달리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가입연령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에서의 18~59세 연령 이외의 퇴직연금 가입자 규모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5장

결론 및 정책과제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제2절 정책과제

제5장 결론 및 정책과제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국민연금과 퇴직 연금을 중심으로 주요 현황을 살펴보고,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의 기본 가정을 준용하여 출생연도별 노후 소득수준을 전망해 보았다.

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급자 및 전체적인 재정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에서의 가입 관련, 점진적이긴 하지만 도입률과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퇴직급여의 연금 수령 비중 또한 높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연금보다는 일시금 수령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망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전망은 기본적으로 재정계산에서의 기본 가정하에 전체적인 재정전망을 위한 세부적인 전망으로 이루어지는 성별, 연령별 단위의 가입과 수급에 대한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갖는 결과로 이해하는 데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퇴직연금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가정을 설정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설정된 가정들은 퇴직연금 현황의 수준과 다소 괴리가 있거나, 현행 제도의 DB, DC IRP 등의 구분을 따르지 않고 단순화하였다. 그러한 가정 설정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는 연금제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노후 대비에 충실하게 따랐을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 부분에서 제시된 노후 소득수준 전망 결과는 평균 소득수준의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를 충실히 따랐을 경우에 예상할 수 있는 노후 소득수준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퇴직연금의

수급률은 국민연금 수급률의 50% 수준에서 거의 10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언급하였는데, 하나의 대표성을 갖는 수준을 제시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이겠지만, 국민연금제도와 달리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이 강제성을 갖지 못하는 한계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한 노후 소득수준을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즉 국민연금은 강제가입에 의한 것으로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노동시장에서 평균적인 근로기간을 보냈을 경우 현재의 국민연금 급여 수준에 의하면 약 27%의 소득대체율을 예상할 수 있고, 퇴직연금을 추가로 가입하였을 경우 최대 50%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평균 소득자보다 낮은 소득수준의 가입자는 국민연금 부분에서 소득대체율이 다소 높아질 여지가 있고, 평균 소득자보다 높은 소득수준의 가입자인 경우에는 다소 소득대체율 수준이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노후에 평균적으로 50%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기대할 수 있다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매우 부족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은 국민연금의 경우 현 제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재정계산 결과에서 언급하였듯이 현 제도 및 현재 예상되는 인구구조에서는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는 현 제도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데, 별도의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앞에서 분석한 노후 소득수준을 기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부과방식 비용을 분해를 통한 접근에 기초하면, 부과방식 비용률은 노인부양비와 실질적인 평균 소득대체율에 비례한다. 따라서 인구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별도의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소득대체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퇴직 시까지 적립된 퇴직급여 적립액이 많을수록 연금액이 커지고 소득대체율이 높아질 수 있다. 개별 근로자별 소득수준에 의한 차이를 논외로 하면, 이에 대한 운용수익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현황에서와 같은 퇴직연금 운용수익률로는 더 넉넉한 노후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불확실한 미래를 예상 가능한 미래로 만들기 위해서는 위험 요인에 해당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의 입장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확실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투자의 관점에서와 같이 분산투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다층 체계의 연금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마라톤처럼 꾸준하게 연금을 지속해야 노후 소득수준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전반적인 연금제도를 관리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문제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적립되는 퇴직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 기관 입장에서의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뿐만 아니라, 연금제도의 본질적인 혜택이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제2절 정책과제

퇴직연금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전체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공·사적 연금제도는 전체 노후소득보장을 향해 효과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개선은 공적연금의 개혁 방향에 맞춰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적연금 개혁은 크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수개혁은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한 채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개혁의 내용은 주로 보험료를 인상, 급여조정 등으로 귀결된다. 모수개혁은 상대적으로 재정안정화, 현 노인계층의 빈곤 문제, 보험료 부담 증가 등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나 단기적 처방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연금 개혁을 논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따른다.

이에 반해 구조개혁은 현행 연금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연금제도 변경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 동 개혁 방식은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사적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고, 시장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 대표적 예로 스웨덴의 NDC 방식이나 영국의 기초연금으로 일원화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개혁은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화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 재정 문제를 긍정적으로 개혁해 갈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노후소득보장에서는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충적 제도의 도입 등이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적연금 개혁에 있어 어느 방법이 더 좋다고 단정 짓기는 불가능하다. 국가가 처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연금개혁 논의 과정을 보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방향을 두고 혼란에 처해 있는 것 같다. 구조개혁이 더 이상적인 개혁 과정이라고 하겠지만,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면 모수개혁을 추진한 후 상당한 기간을 설정하여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적 타개책으로 보인다. 지난 연금개혁 후 15년의 기간 동안 재정 불안적 요소가 너무 강해졌다는 점에서 조속히 연금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되 공·사적 연금제도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이 현실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바탕하에 퇴직연금의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퇴직연금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퇴직연금의 제도 요소와 환경적 요소로 구분하여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퇴직연금 제도적 요소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퇴직연금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 가입 의무

화, 제도 연속성 강화, 연금화 강화가 요구된다. 환경적 요소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세제지원, 제도 간 연계 강화가 요구된다.

가. 퇴직연금 제도 내실화

1) 퇴직연금 가입 및 유지 강화

퇴직연금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퇴직연금 가입 및 유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퇴직연금제도 일원화 혹은 자동 가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행 퇴직급여제도의 퇴직금을 없애고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혹은 퇴직연금을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에 퇴직금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현행 퇴직급여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를 개정하여, 미설정 시 퇴직연금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영국의 자동가입제도(예, Auto-Enrollment)와 같이 퇴직급여 대상자를 자동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되도록 유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퇴직급여의 재산권적 성격을 고려하여 이에 충돌되지 않도록 본인이 선택할 경우 탈퇴(Opt-Out)하여 퇴직금을 선택하는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것과 이직 시에 해지하는 것을 억제하여 제도 유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의 경우 중도인출 및 이직으로 인한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연속성 강화를 통한 유지를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가 주택 구입, 장기요양비용, 파산, 천재지변 등으로 제한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느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사망, 영구장애 등 심각한 재무적 문제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년 연령에 무관하게

이직 시 해지가 가능한 것을 55세(혹은 60세 정년)까지는 퇴직계좌(IRP 계좌)를 해지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긴급자금 필요시 담보대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수익률 및 지배구조 개선

원리금 보장 상품 중심의 투자, 퇴직연금 사업자와 기업 간의 짧은 계약기간에 따른 장기투자의 어려움 등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퇴직연금 지배구조 문제 이전에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평가 등 선진국형 자본시장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퇴직 연금의 해외 투자 가능성,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가능성 등 지배구조 외에 자본시장의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금형 도입은 퇴직연금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자본시장 발전 정도, 금융업권 간 이해관계 등 시장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금형인 중퇴기금과 준기금형인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고, 또한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디폴트옵션 제도의 성과 여부도 종합평가하여 일반적 기금형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3) 자동 연금 수령

지급 단계에서 특별한 의사 표현이 없을 시 원칙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자동 연금 수령’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사적연금의 종신 연금화를 의무화한 국가인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위스(Default Pension) 등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⁹⁸⁾ 현실적으로는 연금 수령 기준 조정⁹⁹⁾, 연금 지급방식 다양화¹⁰⁰⁾ 등을 통한 연금화 전환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애기간을 고려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의 71.4%¹⁰¹⁾가 퇴직연금을 중복으로 수급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퇴직연금이 단순히 현 근로자에만 국한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 제도로 이해된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림 5-1]을 보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충실히 가입(가입기간 30년)하는 것을 가정한 합산소득대체율은 21.2%¹⁰²⁾(퇴직 13.0%, 개인 8.2%)로 추정되고, 앞에서 분석한 25년 가입, 25년 수급 시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8.3%(추납 시 10~16%)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누수되는 적립액을 보전하고 자동 연금 수령이 제도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98) 각국의 사적연금의 연금화 관련 내용은 ‘oxera. The Retirement Income Market’ (p.2, p.19, p.56 참조); OECD(2015), Stocktaking of the Tax Treatment of Funded Private Pension Plans in OECD and EU Countries, Page 14; 류건식, 김동겸 (2015), OECD 국가의 퇴직금부 연금화 동향과 시사점, 테마진단, 보험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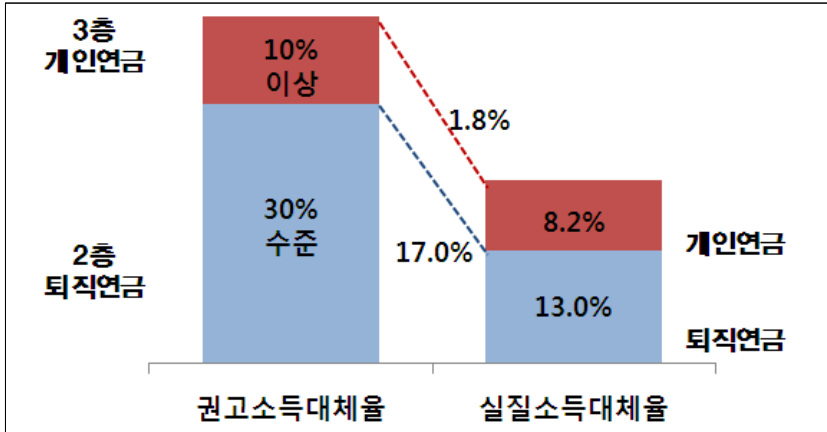
99) 정년 의무화 연령(60세)을 고려하여 55세에서 60세 이후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100) 영국의 소득인출형제, 일본의 일시금 지급 숙려 제도 등을 고려한 연금 지급방식 다양화도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음.

101) 근로활동기간 27.3년 중 임금근로 19.5년, 자영업 7.8년을 고려하면 퇴직연금 가입가능 기간의 비율은 71.4%임.

102) 실제 수익률에서 1%p 증가한 수익률이 가입기간 15년 동안 지속된다고 가정하였으며, OECD 등 국제기구 권고 사적연금 소득대체율(40%)과 비교하면 18.8% 차이가 남(류건식 2013).

[그림 5-1]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주: 1) 사적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은 2012년 기준(35년 가입, 시나리오 2 기준)

2)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수익률은 각 협회 홈페이지 참조

자료: 류건식(2013), “사적 연금의 역할과 정책 방향”, 「새정부의 연금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연금정책 세미나.

OECD(2022)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통해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소득보장 수준을 평가하면,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의 합산소득 대체율은 OECD 평균에 못 미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험료 수준이 낮아 재정 문제 해결 없이 노후의 소득보장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정 중립적인 노후소득보장 확대를 위해 퇴직연금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퇴직연금에 의한 소득보장 강화는 실업, 조기퇴직 등에 직면한 저소득층의 가입 유인 감소와 이로 인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등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유인하고, 차등적 기초연금을 통해 이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나. 연금제도를 둘러싼 환경 개선

1) 취약계층 중심 재정지원

연금세제(보조금 포함) 지원을 확대하여 적립 IRP 추가 납부를 유도하고 퇴직소득공제율을 낮추어 확보된 재정으로 저소득계층의 사적연금 가입 및 연금화 유인,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연금세제(보조금 포함) 지원을 통해 적립 IRP 추가 납부를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지원받은 계좌에서 인출이나 해지가 발생할 경우 지원 수준에 상응하는 해지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본인 기여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노후자산에서 누수되는 경향이 있는데, 세액공제금액을 IRP 퇴직연금계좌로 환류되도록 하는 (가칭) 계좌환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둘째, 현행 퇴직소득 공제율을 축소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저소득층의 퇴직연금의 가입 및 연금화 유도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퇴직연금 전환을 고려하는 영세사업장에 대해 전환 비용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려는 소규모 사업장¹⁰³⁾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 의무화 강화 시 영세사업장의 운영 부담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운영경비성 퇴직급여액에 상응하는 대출금리(예)를 지원하거나 수수료 및 보조금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103) 이와 관련하여, 소규모 사업장은 영세사업주가 많다는 점에서 사용자 부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류건식, 강성호, 김동겸(2017),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2) 공·사 연금제도 간의 연계성 제고

퇴직연금의 궁극적 목표가 노후소득보장 제고에 있다는 점에서 공적연금과 역할 분담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공적연금은 재정 안정화를 고려하여 기본적 노후소득보장에 초점을 두고,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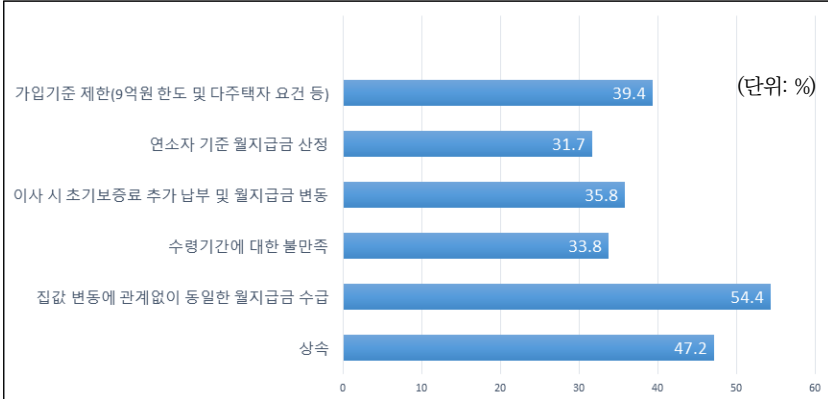
다. 주택연금제도의 발전 방향

1) 가입률 제고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역할 강화

주택연금은 짧은 기간에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1년 말 기준,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소유자 연령이 55세 이상인 주택 수 7,926,965호에서 주택연금의 누적 가입 건수는 92,011건으로 가입률은 1.16% 수준에 불과하다. 물론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 등으로 잠재 수요층이 변동되는 특성이 존재하지만, 주택연금이 다층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역할 및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입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주택연금 가입률에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2022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크게 상속과 월지급금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주택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동일한 월지급금 지급, 상속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5-2] 주택연금 비(非)가입 이유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ko/sub03/sub03_01_04.do 에서 2023.8.2. 인출

주택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는 상속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과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다층 연금제도로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월지급금 증액, 가입 대상 확대 및 세제 혜택 확대 등의 정책적 유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월지급금 증액을 위해서는 다음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먼저, 대출한도의 지속적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23년 10월부터 대출한도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인상되었으나 향후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대출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주택연금은 독신의 경우 독신 가입자의 연령을 연소자 기준 연령으로 부부 연령차는 4세를 적용한 연생 모형을 적용하여 월지급금을 산정하고 있다. 이는 독신 가입자에게는 보험수리적으로 공정한 월지급금에 비해 낮게 산정되는 효과가 존재한다. 따라서 독신 가입자에게는 단생 모형을 적용한 월지급금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

세 번째로 우대형 적용 대상 확대 및 우대지급률 상향이 필요하다. 현행 우대형 주택연금의 적용 대상은 시가 2억 원 미만 기초연금 수급자이다. 우대형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폐지하고 저가

주택 보유자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가주택 기준도 주택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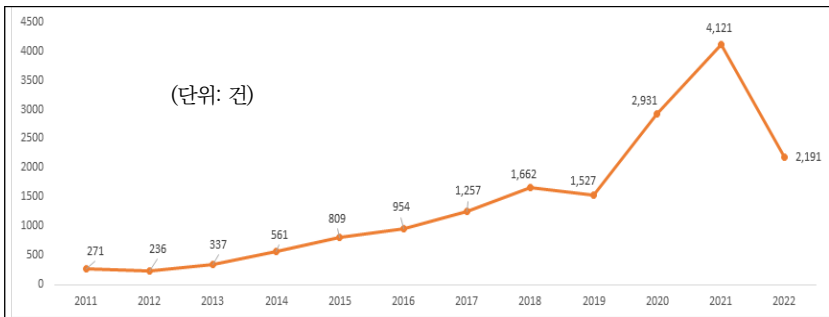
앞의 제도 개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 최근에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상향되었으나 궁극적으로 주택가격 상한은 폐지되어야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공적 보증의 역모기지제도를 운영하는 미국과 홍콩의 경우 주택가격에 대한 가입 상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택연금 가입 유인 제고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도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재산세 감면 대상(주택: 5억 원 한도)과 감면세율 확대(현재 주택연금의 경우 25%), 이자 비용 소득공제 금액 확대(현재 200만 원 한도)가 필요하다. 특히, 사적연금과 비교하여 주택연금의 세제 혜택은 상당히 미흡하다. 사적연금의 경우 올해부터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확대되었다. 반면, 주택연금의 경우 2007년 제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 전병목(2022)은 연금저축상품과 주택연금의 세제지원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조세 지원율(소득 대비 조세 지원액의 비율)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금저축상품의 경우 소득 100원당 11~15원(11~15%)의 조세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주택연금은 100원당 1.6~2.2원(즉, 1.6~2.2%)으로 나타나 주택연금의 조세 지원율이 연금저축상품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2) 중도해지 개선을 통한 유지율 제고

주택연금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기에 중도해지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연도별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를 살펴보면, 중도해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2020년과 2021년에 중도해지 건수가 2,931건과 4,121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3]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 추이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ko/sub03/sub03_01_04.do 에서 2023.8.2. 인출

주택가격 상승기에 중도해지가 늘어난 배경에는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위주의 가입자 편중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 폭이 높은 수도권 지역 가입자 입장에서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가입 시점에 결정되어 가입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해도 월지급금은 동일하므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주택연금 중도해지 후 재가입할 경우 더 높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점과 중도해지 시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1.5%)를 환급받을 수 없고 3년간 동일 주택으로 재가입할 수 없는 불리한 점 중에서 전자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

도해지는 보험해지와 마찬가지로 가입 후 초기(3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향이 크다. 고제현(2022)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가입 후 2년 이내 비중이 약 50%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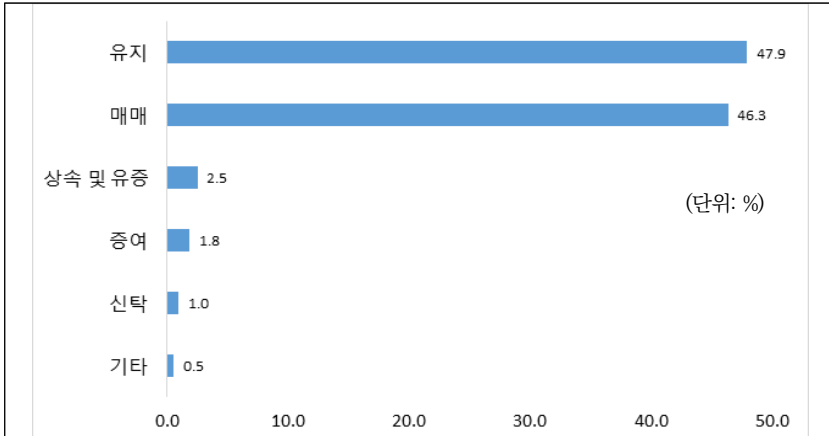
최경진·전희주(2021)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한 30,733건 중 사망해지 건수를 제외하고 2020년도에 중도해지했거나 2020년 말 기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총 29,960건을 대상으로 중도해지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의수준 5%하에서 주택연금 중도해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 변동금액이 ‘중도해지 시점 연령’ 다음으로 중도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변수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중도해지한 후에 취하는 일반적인 주요 행태는 다음과 같다.

- ① 자녀가 상환하거나 다른 생계 수단 마련으로 중도해지 후 유지하는 방안
- ② 중도해지 및 매각 후 다운사이징 하는 방안
- ③ 중도해지 및 매각 후 이사한 주택에서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방안

고제현(2022)에 따르면, 중도해지 후 매각은 중도해지 계약의 46.3%를 차지하였다.

[그림 5-4] 주택연금 중도해지 이후 해지자의 주택 활용유형 비중



주: 중도해지 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유지로 간주
 자료: 고제현(2022)

중도해지 완화를 위해서는 담보가치 상승이 일정 범위를 초과할 경우 이를 월지급금 인상에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계약 종료 후 유족에게 연금 총액에 대한 분할 상환 옵션을 부여하는 등 채무상환을 더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3) 수도권 지역 위주의 가입편중 해소

주택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는 비수도권 지역의 가입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2022년 말 기준 수도권 지역의 가입자 비중은 68.2%이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수도권 편중 현상은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으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지역별 상속 동기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이미 상속 동기는 다수의 국내·외 문헌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과 음(-)의 관계를 갖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유선종·구본영, 2005; 이선형·김영훈, 2009; 김정주·마승

렬, 2011; 안상모 외, 2013; 김신우·우윤석, 2016; 전희주, 2019; 여운경·양재환, 2021; Chou et al., 2006; Leviton, 2002, Nakajima and Telyukova, 2017). 상속 동기는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하는데 수도권 지역 고령가구는 소득이 높을수록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속 의향이 감소한다(유승동, 유경원, 오경현, 2013).

또한, 역모기지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도 가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Leviton, 2002; Davidoff et al., 2017). 우리나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주택연금 인식 정도에 차이가 존재한다. 최정환(2012)은 수도권 지역과 천안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역이 천안 지역에 비해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다음으로 지역 환경의 특성 및 주택시장 상황을 들 수 있다. 윤성진·김지선·김갑성(2015)은 비수도권 지역은 부동산 자산 구성상 주택보다 농지의 비율이 높고 주택 자산가치가 낮은 점이 주택연금 가입이 저조한 원인이라고 언급하였다. 임하나·신승우·노승한(2016)은, 지역별 주택연금 가입률 차이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실증 분석한 결과, 양(+)의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는 학력수준(대학 이상 가구주 비율)과 월지급금과 최소 노후생활비의 차이로 나타나는 반면, 음(-)의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는 지방소득세, 주택가격상승률, 고령가구 비율, 60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 1인당 생명보험 가입 건수, 주택금융공사 지사 및 시·군·구청의 거리로 나타났다.

고제현(2015)은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 주택가격과 주택가격 변동률의 차이, 금융기관 접근성 및 금융정보 수집의 차이, 상속 의향, 소득 구성, 인지도의 차이를 언급하였다. 특히 지역별 소득구성 차이와 관련하여 수도권 지역은 사적이전 비중이 낮은 점이 주택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지역별 주택연금 가입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정리하면, 상속 관련 인식의 차이, 주택시

장 상황, 교육 수준 및 인식 정도의 차이, 금융 접근성 및 정보의 차이, 소득 및 자산 구성의 차이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가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과의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주택연금 출범 이후 양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이 단행됐으나 이는 주로 비수도권 지역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한도 상향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이다.

또한, 신탁 방식 주택연금 중 보증금 있는 전월세 가입을 허용한 부분도 임대차 거래가 활발한 수도권 지역에 제도 개선 혜택이 높을 수밖에 없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다세대 단독가구 비중이 크고 주택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특성상 주택가격 평가는 주로 감정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 시 비수도권 가입자를 위한 감정평가 비용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노후 주택이 다수 존재하므로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 수선 및 유지를 위한 지원도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저가주택 비중이 높아 월지급금이 높지 않기에 우대형 주택연금 적용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 이외에 저가주택 보유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과 더불어 농지연금과의 유기적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퇴직연금과의 유기적 연계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의 경우 긴급한 목돈 수요 발생 시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표 5-1〉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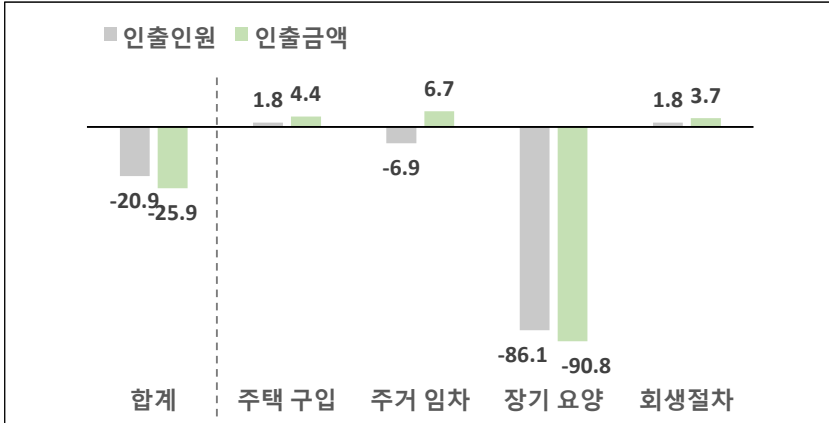
사유	상세 내용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동일 사업장 내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단, 개인형 IRP의 경우 횟수 제한이 없음)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본인 연간 임금 총액 12.5% 초과 의료비 부담 시) : 개인형 IRP의 경우 임금 총액 대비 의료비 부담금액 조건이 없음	요양 사유 확인 가능일 ~ 요양 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신청이 가능
개인회생/ 파산선고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진행 중에 신청
재난피해	재난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기 사유 중 주택 구입 목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1년 퇴직연금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1년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5만 5,000명, 인출금액은 1조 9,000억 원 수준이다. 중도인출 사유별로 살펴보면, 5만 5,000명 중 54.4%에 해당하는 3만 명이 주택 구입 목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하였으며 중도인출 금액은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이다. 전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과 금액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주택 구입 목적은 반대로 증가하였다.

[그림 5-5] 퇴직연금 인출 사유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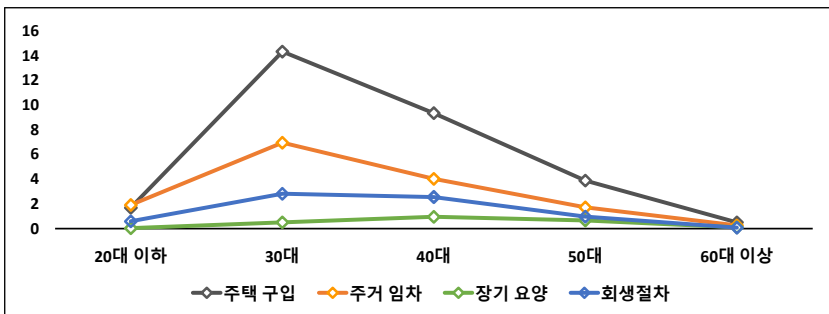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1)

연령대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림 5-6] 퇴직연금 인출 사유·연령대별 중도인출 인원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2021)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은 노후소득 강화를 명분으로 주택 구입을 포함한 중도인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구입 목적의 경우 향후 주택연금 등 다양한 주택자산 유동화를 통한 노후소득 마련 기회가 존재하므로 이를 다른 인출 사유와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 결국, 이는 생애소득 가설에 입각하여 자산축적 경로가 금융자산 또는 실물자산의 문제이며, 주택 마련은 혼인 및 출산율과도 연관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규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5) 취급비용 절감 및 고령 소비자 보호 강화

우리나라는 해외의 공적 역모기지와 비교하면 초기 비용은 낮은 편이나 현장 체감 수준은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담보 설정 및 감정평가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상당수 가입자는 첫 월지급금을 고스란히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최초 월지급금으로도 부족해 2, 3회 차까지 월지급금을 수령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방식보다 담보 설정 비용이 저렴한 신탁형 주택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신탁 방식 가입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정평가 비용 절감을 위해 페니매 같은 모기지 유동화 기관에서 활용하는 자동가치평가시스템을 개발한다면 상당 부분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부 가입자는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입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고령자는 가입 후에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고령자 본인이 의도했던 상황과 맞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불만족이 누적될 수 있다. 따라서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정보 비대칭 해소 관점의 소비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택연금 가입 전에 제도 홍보 및 금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주택연금 상담은 내부인력(주택연금 상담실장)

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 하락 시점에 주택연금 가입 문의 급증 시 상담인력 부족으로 고객 불만 및 불완전 판매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미국의 HECM과 같이 주택금융공사가 인증하는 외부 상담사 제도를 신설하여 수요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6) 제도 운영방식 보완

우리나라와 제도 운영 형태가 가장 유사한 미국과 홍콩의 공적 보증 역모기지는 중도해지 후 재가입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도해지 시 동일주택에 3년간 재가입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중도해지의 사유가 경제적 편익 취득을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므로 고객의 경제적 편익에 부합하면서 주택연금의 실질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중도해지 후 동일주택 재가입 금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홍콩은 초기보증료 분납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를 적극 검토하여 초기보증료에 대한 상대적 부담이 큰 우대형 주택연금부터 시범 도입하고 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홍콩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보험과 역모기지를 결합하여 주택연금의 수요를 촉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생명보험 역모기지의 영구조는 기본적으로 주택연금과 유사하나 아래 표와 같이 담보자산 및 가치 상승률 반영 여부, 수급자의 생존확률 적용 모형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표 5-2〉 주택연금과 생명보험 역모기지의 비교

구분	생명보험 역모기지	주택연금
담보자산	사망보험금	주택
월지급금 산정을 위한 주요 변수	이자율, 생존확률	주택가격상승률, 이자율, 생존확률
수급자의 생존확률 적용 모형	단생 모형	최후 생존자 연생 모형
주요 리스크	금리 리스크, 장수 리스크	주택가격 변동 리스크, 금리 리스크, 장수 리스크

담보자산의 성격 및 가입 대상의 차이점 등을 고려하면 생명보험 역모 기지가 주택연금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닌 주택연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감사원. (2020).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체계 실태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한국재정학회 용역보고서.
- 감사원. (2022).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
- 강성호, 김경아(2008). 역모기지활용에 따른 가구유형별 노후소득보장 및 빈곤 완화 효과 분석 - 거주주택 및 순자산의 역모기지 전환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4(3), pp. 171-198.
- 강성호·류건식·김동겸(2017).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보험연구원.
- 강성호, 류건식(2018), Markov 전환율을 활용한 자영업자 생애근로유형별 연금소득대체를 추정, 보험금융연구 제29권 제2호 pp.39~71.
- 강성호, 이소양(2022). 주요국 퇴직연금의 연금화 정책과 시사점, 리키리포트, 보험연구원.
- 강성호(2023). 퇴직연금 소득대체를 추정과 시사점, 키리리포트, 보험연구원.
- 강영선(2023), 사적연금제도의 본질과 다층보장체제하에서의 퇴직연금의 역할”, 한국연금학회 2023년 제1차 정책세미나.
-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연금팀 (2014. 8. 27.).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2020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보도자료.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OLD_4091556&menuNo=4010100 에서 2023.5.2. 인출.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2019.7.25).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1529&fileSn=1에서 2023.5.2. 인출.

- ____ (2022.7.21).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0354 에서 2023.5.2. 인출.
- 고용노동부. (2022).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 고용노동부·근로복지연구원. (2020). 2019 해외 퇴직연금제도 조사보고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 퇴직연금감독팀 (2021. 4. 5.). 2020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6240&menuNo=200218> 에서 2023.5.2. 인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2017.04.11). 7월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가능.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7587 에서 2023.5.2. 인출.
- ____ (2020.4.6.). 2019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854 에서 2023.5.2. 인출.
- ____ (2021.4.5.). 2020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107 에서 2023.5.2. 인출.
- ____ (2022.4.18.). 2021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436에서 2023.5.2. 인출.
- ____ (2023.7.16). 2022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고용노동부 보

도자료.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bbsView.do?bbs_seq=20230701526 에서 2023.8.2. 인출.

고용노동통계조사(2015). 2014년 사업체 노동실태현황 기준.

http://laborstat.moel.go.kr/hmp/tblInfo/TblInfoList.do?menuId=0010001100101104&leftMenuId=0010001100101vwCdVal=MT_ZTITLE&upListVal=118_901 에서 2023. 8.2 인출.

고재현. (2015). 주택연금 가입자 수도권 집중현상에 대한 고찰. 이슈 리포트. 주택금융연구원.

_____. (2022). 주택연금 중도해지 요인 분석 - 주택가격 변동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 주택금융연구원.

공무원연금공단(2017). 2016년 공무원연금 연차보고서.

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7752호 (2021).

구인회, 강성호, 박형준, 손병돈, 우해봉, 이원진, 최옥금, 함선유. (2021).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심층분석.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구인회, 이경희, 강성호, 우해봉, 남찬섭, 주은선 외 (2023). 포괄적 연금통계 작성방법 및 활용성 확대방안 연구. 통계청.

국민연금공단(2010). 2011년 국민연금 통계연보.

_____. (2013). 2012년 국민연금 통계연보.

_____. (2014). 2013년 국민연금 통계연보.

_____. (2015). 2014년 국민연금 통계연보.

_____. (2016). 2015년 국민연금 통계연보.

_____. (2017). 2016년 국민연금 통계연보.

_____. (2018). 2017년 국민연금 통계연보.

_____. (2019). 2018년 국민연금 통계연보.

_____. (2020). 2019년 국민연금 통계연보.

_____. (2021). 2020 국민연금 통계연보.

- _____ (2022). 2021년 국민연금 통계연보.
- _____ (2023). 2022년 국민연금 통계연보.
- _____ (2013). 국민연금 공표통계(2012년 12월 말 기준)
- _____ (2014). 국민연금 공표통계(2013년 12월 말 기준)
- _____ (2015). 국민연금 공표통계(2014년 12월 말 기준)
- _____ (2016). 국민연금 공표통계(2015년 12월 말 기준)
- _____ (2017). 국민연금 공표통계(2016년 12월 말 기준)
- _____ (2018). 국민연금 공표통계(2017년 12월 말 기준)
- _____ (2019). 국민연금 공표통계(2018년 12월 말 기준)
- _____ (2020). 국민연금 공표통계(2019년 12월 말 기준)
- _____ (2021). 국민연금 공표통계(2020년 12월 말 기준)
- _____ (2022). 국민연금 공표통계(2021년 12월 말 기준)
- _____ (2023). 국민연금 공표통계(2022년 12월 말 기준)
- _____ (2023).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 현황.
https://www.nps.or.kr/jsppage/fund/mcs/mcs_03_02.jsp 에서
2023. 4. 29. 인출.
- _____ (2023). 2022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적립 현황.
https://fund.nps.or.kr/jsppage/fund/mcs/mcs_02_02.jsp 에서
2023. 3. 2. 인출.
-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2018). 국민연금 재정계산 -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선 방향.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 개선방향.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법. 법률 제18326호 (2022).
- 국민연금연구원. (2012). 해외 공·사연금제도 II; 아메리카권.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18). 2018 국민연금 재정계산 - 국민연금 장기재
정추계.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 (2008). 2008 국민연금 재
정계산 -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및 운영개선방향. 보건복지가족부,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2013). 2013 국민연금 재정계산 -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방향. 보건복지부.
- _____. (2018). 2018 국민연금 재정계산 -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방향.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2023.3.30.).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결과 설명자료.
- 국세청(2022), 2022 국세통계연보 (2021년 기준).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2022.12.21).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7649
 에서 2023.5.2. 인출.
- 국토연구원(2023). 싱가포르 주거정책을 진단한다: 자가소유 90%가 주는 시사점, 국토정책 Brief.
- 국회예산정책처(NABO), 산업동향 & 이슈, 2018년 2월호 통권 제5호.
-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 (2022.4.12.). 2021년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5375&menuNo=200218&cl1Cd=&sdate=&edate=&searchCnd=1&searchWrd=%EC%97%B0%EA%B8%88%EC%A0%80%EC%B6%95&pageIndex=1>
 에서 2023.5.2. 인출.
- 금융감독원 연금금융실. (2017.5.4.). 2016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3401&menuNo=200218&cl1Cd=&sdate=&edate=&searchCnd=1&searchWrd=%ED%87%B4%EC%A7%81%EC%97%B0%EA%B8%88+%EC%A0%81%EB%A6%BD&pageIndex=1>
 에서 2023.5.2. 인출.
- 금융감독원 연금금융실. (2019.4.8), 2018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금

용감독원 보도자료.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4944&menuNo=200218&cl1Cd=&sdate=&edate=&searchCnd=1&searchWrd=%ED%87%B4%EC%A7%81%EC%97%B0%EA%B8%88+%EC%A0%81%EB%A6%BD&pageIndex=1> 에서 2023.5.2. 인출.

김대환. (2022).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세제체계 개편방안. 고용노동부.

김동진. (2022).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 퇴직연금의 현황과 개편방안, 2022년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발표자료.

김세중, 김유미. (2017).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김신우, 우윤석. (2016). 고령화시대 자산기반 복지를 위한 주택연금 가입의사 결정요인 연구. *사회과학논총* 18, pp. 79-94.

김원식, 김재현. (2015).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과 재정효과 분석: 정책방향. 한국재정학회 나성린 의원 공동주최 정책세미나.

김정주, 마승렬. (2011). 역주택저당대출 수요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46, pp. 207-225.

김정훈. (2020). 사적연금 관련 정책과제 및 감사시사점, 감사연구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18752 (2022).

나혜림, 최현자. (2014). 개별연금 가입여부 및 다층연금체계 가입구조의 결정요인 분석 - 연금퍼즐 및 은퇴준비 제약비용 중심으로,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7권 4호.

남재우. (2023).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 운용규제 완화뉴노멀 대응 전략, 3차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 금투협회/자본시장연구원.

류건식. (2013). “사적 연금의 역할과 정책 방향”, 「새정부의 연금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연금정책세미나.

류건식, 김동겸. (2015).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의 사적연금 기능 제고와 시사점. *KiRi Weekly* 제328호. 보험연구원.

- 류건식, 강성호, 김동겸. (2016).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보험연구원.
- 류건식, 이태열. (2017).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CEO Report CR 17-03. 보험연구원.
- 류건식, 강성호, 김동겸. (2017).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 류건식, 강성호. (2016). 퇴직연금 연금선호 실태와 연금화 결정요인 분석. 연금연구 제6권 제2호.
- 류건식, 강성호, 김동겸. (2022). 퇴직연금제도의 이해. 보험연구원.
- 백인걸, 고제현. (2019). 해외 역모기지 사례 연구 -공적 역모기지 중심으로. 주택금융연구원 이슈리포트.
- 백인걸, 최경진. (2020). 주택연금의 소득보장 및 소비진작효과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2(1), pp. 227~241.
- 보건복지부. (2014). 201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_____. (2015). 2015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_____. (2016). 201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_____. (2017). 2017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_____. (2018). 2018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_____. (2019). 2019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_____. (2020). 2020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_____. (2021). 20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_____. (2022). 2022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사회복지정책협의회. (2022). 발표자료.
- 생명보험협회 내부자료(2023).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보험 추이.
- 성주호, 류성경, 손성동, 권혁, 최윤희. (2014).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실행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 성혜영, 최옥금, 문현경, 주은선, 이은주, 김아람(2019). 해외 주요국 연금개혁 사례 및 시사점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 성혜영, 정창률, 전승훈, 강성호(2022), 연금수급자의 사회보험 및 조세부담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 송홍선. (2022), DC형 퇴직연금의 노후안전망 역할 강화 연구. 연구보고서. 자본시장연구원.
- 신경혜, 김형수. (2021). 기초연금 재정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국민연금연구원.
- 신경혜, 박성민, 한정림, 황선호, 손현섭. (2023).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 (2023~2027). 국민연금연구원 연차보고서.
- 심수연. (2023). 영국의 집합적 확정기여형(CDC) 퇴직연금 제도 시행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 안상모, 이종아, 정준호. (2013). 주택연금 상품 선택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주택 연구 21(1), 127-154.
- 여윤경, 양재환. (2021). 주택연금퍼즐현상에 관한 분석적 연구: 주택연금 가입의향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34(2), pp. 385-405.
- 유승동, 유경원, 오경현. (2013). 지역별 상속의향 차이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20(1), pp. 135-150.
- 윤성진, 김지선, 김갑성. (2015).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필요성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50(2), pp. 119-141.
- 이정우(2013). 연금퍼즐에 관한 연구: 건강위험, 종신연금의 유동성부족, 생존자치의 역할을 중심으로. 보험금융연구 73, pp75~107.
- 인사혁신처(2023). 2023 인사혁신통계연보.
<https://www.mpm.go.kr/mpm/ebook/2023stat/ecatalog5.html>에
서 2023.8.2. 인출
- 임하나, 신승우, 노승한(2016). 지역별 주택연금 가입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시·군·구를 중심으로. 부동산연구 26(3), pp. 39-47.
- 전병목(2022). 노후소득 형성을 위한 조세지원정책: 주택연금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전성주, 박선영, 김유미(201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방안. 보험연구원 기타보고서.

- 전희주(2019). 주택연금 가입에 대한 가입 의향 요인.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1(3), pp. 1085-1096.
- 정원석, 김세중(2018), 미국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Auto Enrollment)와 시사점, KIRI 리포트 제437호, 보험연구원.
- 정창률 (2018).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의 쟁점 및 개선방안 검토: 가입자의 관점에서. *한국사회정책*, 25(3), 151-174.
- 주은선, 오건호, 이은주(2019), 공적연금 발전방안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차창희(2023.6.1.) 매일경제 기사 '퇴직연금 통해 RP·MMF 100% 투자 가능해진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750168>에서 2023.6.10. 인출.
- 최경진(2015). 퇴직연금 급여지급방법 다양화방안. 고용노동부.
- _____(2021). 주택연금 가입자의 기대여명에 관한 연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 보고서
- 최경진, 백인걸, 한정림. (2021). 공·사적연금의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효과 분석: 1954년생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13(3), pp. 209-242.
- 최경진, 전희주. (2021). 주택가격 변동이 주택연금 중도해지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예산정책연구* 10(4), pp. 207~230.
- 최정환 (2012). 부동산 역모기지 활용에 대한 인식 연구: 수도권 및 천안지역 비교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21. 12. 9).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통계청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415453&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rch&sTarget=title&sTxt=%EC%9D%B8%EA%B5%AC%EC%B6%94%EA%B3%84 에서 2021. 12. 15. 인출.
- 통계청. (각 연도). 소득분배지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

LF06&vw_cd=MT_ZTITLE&list_id=C2_1_4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에서 2023.4.2. 인출.

통계청 경제통계국 경제통계기획과. (2018.12.10), 2017년 기준 기업생멸행정 통계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https://kostat.go.kr/synap/skin/doc.html?fn=64305324fc0aa7529c48ef6ee5c2adfd4b391d9b1445e3f975c7a968e36ff22a&rs=/synap/preview/board/11469/>에서 2023.5.2. 인출.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금융감독원 감독조정국 감독조정팀·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 (2022).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도자료 <https://kostat.go.kr/synap/skin/doc.html?fn=1e2974e947c7a71a2f8d206058bd487465509bae942fb8d4984247103ac38872&rs=/synap/preview/board/215/> 에서 2023.5.2. 인출.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21). 2022 고령자 통계. 통계청 보도자료. <https://kostat.go.kr/synap/skin/doc.html?fn=44fc580646bd977f4b72b1e4523aeb799f43db0045f93b133958e4cb6ca69ae6&rs=/synap/preview/board/10820/>에서 2023.5.2. 인출.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행정통계과. (2022.12.19.). 2021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60800&bid=11816&act=view&list_no=422391 에서 2023.6.10. 인출.

_____(2022. 12. 20.), 2021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https://kostat.go.kr/synap/skin/doc.html?fn=c6f45835cfce41a358706f03581018bb3a5e7488bc3a60f1b870cc3a7690c6d3&rs=/synap/preview/board/11895/>에서 2023.5.2. 인출.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8), 개인연금 가입자의 특성 분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2023). 12일부터 주택공사가격 12억원 이하면 주택연금 가입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 https://www.hf.go.kr/ko/sub05/sub05_04_05.do?mode=view&articleNo=595737&article.offset=0&articleLimit=10&srSearchVal=12%EC%9D%BC%EB%B6%80%ED%84%B0에서 2023.10.10. 인출.
- 홍범교, 박수진, 정경화. (2013). 주요국의 연금세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SIS 국가통계포털. 퇴직연금통계.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RP101&vw_cd=MT_ZTITLE&list_id=D3_RP_002&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6.10. 인출
- Brandolini, A. Magri, S, and Smeeding, T.(2010). Asset-based measurement of poverty.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9(2), pp. 267-284.
- Charles, E.F.M, David, P., Angela, M.A., 2021, Securing a Reliable Income in Retirement, Georgetown University Center for Retirement Initiatives Policy Report 21-03.
- Castles, F.(1998). The Really Big Trade-off: Home Ownership and the Welfare State in the New World and the Old. *Acta Politica* 33(1), pp. 5-19.
- Choi KJ·Noh SH·Baek IG(2022). Does home equity liquidation reduce older adults' poverty rate? Evidence from South Korea?, *Journal of Poverty and Social Justice* 30(1), pp. 59-76.
- Chou, K. L., Chow, Nelson W.S. and Chi, I.(2006). Willingness to Consider Applying for Reverse Mortgage in Hong Kong Chinese Middle-aged Homeowners. *Habitat International* 30(3), pp. 716 - 727.
- Davidoff, T., Gerhard, P. and Post, T.(2017). Reverse mortgages: What homeowners (don't) know and how it matters. *Journal of*

-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133, pp. 151-171.
- Glickman, M, Kuehneman, G.(2006), *Retiree pension payout decisions-evidence from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1992-2002*,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Washington DC.
- James, M.D., 2022, Pensions: Collective Defined Contribution (CDC) schemes.
- Kemeny, J. (2005). "The Really Big Trade-Off" between Home Ownership and Welfare: Castles' Evaluation of the 1980 Thesis, and a Reformulation 25 Years on. *Housing, Theory & Society* 22(2), pp. 59-75.
- Kuypers, S. and Marx, I.(2018). Estimation of Joint Income-Wealth Poverty: A Sensitivity Analysi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36, pp. 117-137.
- Leviton, R.(2002). Reverse mortgage decision-making. *Journal of Aging and Social Policy* 13(4), pp. 1-16.
- Nakajima, M. and Telyukova I. A.(2017). Reverse Mortgage Loans: A Quantitative Analysis. *The Journal of Finance* 72(2), pp. 911-949.
- Nina Paklina(2014), Role of Pension Supervisory Authorities in Automatic Enrolment, IOPS Working Papers on Effective Pensions Supervision, No.22.
- OECD(2013). *Pensions at a Glance 2013: OECD and G20 Indicators*, Paris: OECD Publishing.
- _____(2015a). *Pensions at a Glance 2015: OECD and G20 Indicators*, Paris: OECD Publishing.
- _____(2015b). Stocktaking of the Tax Treatment of Funded Private Pension Plans in OECD and EU Countries.

- _____(2018), *Pensions Outlook 2018*, Paris: OECD Publishing.
- _____(2019), *Pensions at a Glance 2019: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 _____(2020), *OECD Economy Survey: Korea*.
- _____(2021), *Pensions at a Glance 2021: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 _____(2022), *Pensions at a Glance 2022: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 oxera(2014). The Retirement Income Market.
- Stewart, F. (2007). *Benefit Security Pension Fund Guarantee Schemes*, OECD Working Papers on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No.5, OECD Publishing.
- Stiglitz, J., Sen, A., and Fitoussi, J.P.(2009). Report of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Paris, The Commission.
- Vanguard(2020). How America Saves.
- e-나라지표(2023), 국민연금 재정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4 에서 2023. 4. 29. 인출
- 네덜란드 퇴직연금제도,
 Lexology, “Q&A: occupational pension schemes in Netherlands”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db50b81a-b62a-40f8-ad3f-b9e28f5f2462> 2023.4.20.
- 미국 HUD(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ttps://www.hud.gov>
- 홍콩 HKMC(Hong Kong Mortgage Corporation)
<https://www.hkmc.com.hk>
- 싱가포르 HDB(Housing & Development Board)

<https://www.hdb.gov.sg/cs/infoweb/homepage>

싱가포르 DBS Bank <https://www.dbs.com.sg/index/default.page>

스위스 소득세율,

<https://finpension.ch/en/capital-withdrawal-tax-compared/>
2023.4.20.

스위스연방사회보험청(FSIO),

<https://www.bsv.admin.ch/bsv/en/home/social-insurance/bv/statistik.html#accordion1669082241705> 2023.8.1.

일본 JHF(일본주택금융지원지구) <https://www.jhf.go.jp>

영국 Equity Release Council <https://www.equityreleasecouncil.com/>

영국 소득세율 <https://www.gov.uk/income-tax-rates>

퇴직연금(나무위키)

<https://namu.wiki/w/%ED%87%B4%EC%A7%81%EC%97%B0%EA%B8%88>에서 2023.5.2. 인출.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ko/sub03/sub03_01_04.do에서
2023.8.2. 인출.

CNBC, “Annuities could soon qualify as a default investment in 401(k) plans”,

<https://www.cnn.com/2022/03/09/annuities-could-soon-qualify-as-a-default-investment-in-401k-plans.html> 2023.8.1.

eurostat. EUROPOP2020 – Population projections.

FSIO, <https://www.bsv.admin.ch/bsv/en/home/social-insurance/bv/statistik.html#accordion1669082241705> 2023.9.23.

FCA, “Retirement income market data 2020/21”

<https://www.fca.org.uk/data/retirement-income-market-data-2020-21> 2023.9.25.

<https://ec.europa.eu/eurostat/web/population-demography-migration-projections/population-projections-/database>

2023.5.24.

Money Advisor, “When Can I Take My Personal Pension?”.

<https://www.onlinemoneyadvisor.co.uk/pensions/personal-pensions/personal-pension-withdrawa> 2023.7.20.

Money Farm, “Can I withdraw my pension before turning 55?”.

<https://blog.moneyfarm.com/en/pensions/can-i-withdraw-my-pension-before-55> 2023.7.20.

OECD. Stat. OECD SOCX,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54369> 2023.5.24.

OECD. Stat. Population Statistics.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18014> 2023.5.23.

UBS Switzerland, “Occupational pensions: understanding pension funds”,

<https://www.ubs.com/ch/en/private/pension/information/magazine/2022/understand-the-pension-fund.html> 2023. 7.20.



[부록] 세대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노후보장 수준 전망표

〈부표 1〉 출생연도별 65세 기준 월평균 국민연금 노령연금액

(단위: 천 원, 2023년 기준 현재가)

출생 연도	남	여	전체	출생 연도	남	여	전체
1964	938	470	730	1997	852	685	775
1965	937	490	735	1998	853	704	785
1966	931	496	741	1999	854	708	787
1967	925	507	730	2000	853	709	787
1968	930	514	734	2001	853	708	787
1969	910	532	735	2002	852	709	788
1970	893	541	731	2003	853	709	787
1971	883	552	730	2004	854	708	787
1972	868	563	726	2005	856	710	789
1973	860	576	724	2006	858	711	790
1974	848	583	722	2007	859	711	790
1975	843	589	721	2008	860	712	791
1976	843	602	729	2009	859	714	792
1977	842	614	732	2010	859	714	792
1978	821	603	717	2011	859	715	792
1979	854	611	735	2012	859	715	793
1980	812	602	711	2013	857	716	792
1981	800	601	705	2014	857	717	792
1982	796	612	707	2015	857	718	793
1983	781	605	695	2016	857	719	793
1984	783	614	701	2017	857	720	794
1985	806	632	721	2018	857	720	794
1986	809	634	724	2019	856	719	793
1987	815	641	730	2020	856	719	793
1988	835	647	744	2021	856	719	792
1989	823	638	733	2022	856	718	792
1990	823	627	730	2023	856	717	791
1991	853	637	748	2024	856	717	791
1992	838	622	734	2025	856	716	791
1993	846	636	746	2026	857	717	792
1994	850	638	750	2027	858	717	792
1995	849	654	759	2028	858	717	793
1996	850	672	768				

주: 현재 계산을 위한 할인율은 5차 재정계산에서의 임금상승률 가정 사용

자료: 저자 산출

〈부표 2〉 퇴직연금 수급자의 출생연도별 65세 기준 퇴직연금액

(단위: 천 원, 2023년 기준 현재가)

출생 연도	남	여	전체	출생 연도	남	여	전체
1974	223	96	163	2002	788	453	636
1975	246	104	178	2003	792	456	639
1976	271	113	196	2004	795	458	641
1977	295	123	212	2005	798	460	643
1978	311	131	226	2006	800	461	644
1979	346	140	245	2007	798	461	643
1980	353	151	256	2008	797	462	642
1981	370	159	269	2009	797	463	643
1982	394	174	288	2010	796	463	643
1983	412	183	301	2011	793	464	641
1984	444	199	325	2012	792	464	641
1985	484	216	354	2013	791	465	640
1986	515	231	377	2014	791	466	641
1987	543	245	397	2015	790	466	640
1988	577	259	423	2016	790	467	640
1989	591	266	434	2017	791	469	642
1990	611	273	450	2018	793	469	644
1991	652	288	475	2019	794	469	644
1992	664	294	486	2020	797	470	646
1993	692	316	514	2021	799	471	647
1994	711	330	531	2022	801	471	648
1995	729	353	554	2023	803	472	649
1996	743	377	574	2024	805	474	651
1997	755	397	589	2025	805	474	651
1998	766	421	607	2026	803	474	650
1999	773	433	618	2027	802	474	650
2000	779	442	624	2028	801	474	649
2001	783	447	630				

주: 현재 계산을 위한 할인율은 5차 재정계산에서의 임금상승률 가정 사용
자료: 저자 산출

〈부표 3〉 (국민+퇴직) 수급자의 출생연도별 65세 기준 월평균 연금액

(단위: 천 원, 2023년 기준 현재가)

출생 연도	남	여	전체	출생 연도	남	여	전체
1974	1,071	679	885	2002	1,641	1,162	1,424
1975	1,089	693	899	2003	1,645	1,165	1,427
1976	1,115	715	925	2004	1,648	1,167	1,428
1977	1,137	737	943	2005	1,655	1,170	1,432
1978	1,131	735	943	2006	1,658	1,172	1,434
1979	1,201	751	980	2007	1,657	1,172	1,433
1980	1,165	753	967	2008	1,656	1,174	1,433
1981	1,171	760	974	2009	1,656	1,177	1,435
1982	1,190	786	995	2010	1,654	1,177	1,434
1983	1,193	788	997	2011	1,652	1,179	1,433
1984	1,227	813	1,026	2012	1,651	1,180	1,433
1985	1,289	848	1,075	2013	1,648	1,180	1,431
1986	1,324	865	1,101	2014	1,648	1,183	1,433
1987	1,357	886	1,126	2015	1,647	1,184	1,433
1988	1,412	906	1,167	2016	1,647	1,186	1,434
1989	1,414	905	1,167	2017	1,648	1,189	1,436
1990	1,434	901	1,180	2018	1,649	1,189	1,437
1991	1,505	925	1,224	2019	1,651	1,189	1,438
1992	1,503	916	1,220	2020	1,654	1,189	1,438
1993	1,538	951	1,260	2021	1,656	1,190	1,439
1994	1,561	968	1,281	2022	1,657	1,189	1,440
1995	1,578	1,007	1,312	2023	1,659	1,190	1,441
1996	1,593	1,049	1,342	2024	1,660	1,190	1,442
1997	1,607	1,083	1,364	2025	1,661	1,191	1,442
1998	1,619	1,125	1,392	2026	1,660	1,191	1,442
1999	1,626	1,141	1,405	2027	1,659	1,191	1,442
2000	1,632	1,150	1,411	2028	1,659	1,192	1,442
2001	1,636	1,155	1,416				

주: 현가 계산을 위한 할인율은 5차 재정계산에서의 임금상승률 가정 사용

자료: 저자 산출

250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소득보장 전망 및 과제

〈부표 4〉 (국민+퇴직) 출생연도별 65세 기준 A값 대비 소득대체율 (0.5A 소득자)

(단위: %)

출생 연도	남	여	전체	출생 연도	남	여	전체
1974	49.1	32.9	41.4	2002	53.6	42.6	48.6
1975	49.1	33.4	41.5	2003	53.6	42.6	48.6
1976	49.3	34.2	42.1	2004	53.7	42.6	48.6
1977	49.5	34.9	42.4	2005	53.9	42.7	48.8
1978	48.6	34.6	41.9	2006	54.0	42.8	48.8
1979	50.6	35.1	43.0	2007	54.0	42.8	48.8
1980	48.7	34.8	42.0	2008	54.0	42.8	48.8
1981	48.3	34.9	41.9	2009	54.0	42.9	48.8
1982	48.3	35.6	42.2	2010	53.9	42.9	48.8
1983	47.8	35.4	41.8	2011	53.9	42.9	48.8
1984	48.1	36.0	42.2	2012	53.9	43.0	48.8
1985	49.4	37.0	43.4	2013	53.8	43.0	48.8
1986	49.8	37.3	43.7	2014	53.7	43.0	48.8
1987	50.2	37.8	44.1	2015	53.7	43.0	48.8
1988	51.4	38.2	45.0	2016	53.7	43.1	48.8
1989	50.9	37.9	44.6	2017	53.6	43.1	48.8
1990	51.1	37.4	44.6	2018	53.6	43.1	48.8
1991	52.8	38.0	45.6	2019	53.6	43.1	48.7
1992	52.1	37.3	45.0	2020	53.5	43.1	48.7
1993	52.6	38.1	45.8	2021	53.5	43.1	48.7
1994	52.9	38.3	46.0	2022	53.5	43.0	48.6
1995	53.0	39.3	46.6	2023	53.5	43.0	48.6
1996	53.1	40.3	47.1	2024	53.4	42.9	48.6
1997	53.2	41.0	47.6	2025	53.4	42.9	48.6
1998	53.4	42.0	48.2	2026	53.5	43.0	48.6
1999	53.5	42.3	48.4	2027	53.5	43.0	48.6
2000	53.5	42.4	48.4	2028	53.6	43.0	48.6
2001	53.5	42.4	48.5				

자료: 저자 산출

〈부표 5〉 (국민+퇴직) 출생연도별 65세 기준 A값 대비 소득대체율(A 소득자)

(단위: %)

출생 연도	남	여	전체	출생 연도	남	여	전체
1974	34.4	22.8	28.9	2002	38.9	30.4	35.1
1975	34.5	23.2	29.0	2003	39.0	30.4	35.1
1976	34.7	23.8	29.5	2004	39.1	30.5	35.1
1977	34.9	24.4	29.8	2005	39.2	30.5	35.2
1978	34.5	24.1	29.6	2006	39.2	30.6	35.2
1979	35.9	24.6	30.3	2007	39.2	30.6	35.2
1980	34.7	24.4	29.8	2008	39.2	30.6	35.2
1981	34.6	24.5	29.7	2009	39.2	30.7	35.3
1982	34.6	25.1	30.0	2010	39.2	30.7	35.2
1983	34.3	25.0	29.8	2011	39.1	30.7	35.2
1984	34.6	25.4	30.1	2012	39.1	30.7	35.2
1985	35.6	26.2	31.0	2013	39.1	30.7	35.2
1986	35.9	26.4	31.3	2014	39.0	30.7	35.2
1987	36.2	26.8	31.6	2015	39.0	30.7	35.2
1988	37.1	27.1	32.2	2016	39.0	30.8	35.2
1989	36.8	26.9	32.0	2017	39.0	30.8	35.2
1990	36.9	26.6	32.0	2018	38.9	30.8	35.2
1991	38.1	27.1	32.7	2019	38.9	30.8	35.2
1992	37.7	26.7	32.4	2020	38.9	30.8	35.1
1993	38.1	27.2	32.9	2021	38.8	30.7	35.1
1994	38.3	27.4	33.1	2022	38.8	30.7	35.1
1995	38.4	28.0	33.6	2023	38.8	30.7	35.0
1996	38.5	28.7	34.0	2024	38.8	30.7	35.0
1997	38.6	29.3	34.3	2025	38.8	30.7	35.0
1998	38.7	30.0	34.7	2026	38.8	30.7	35.0
1999	38.8	30.2	34.9	2027	38.8	30.7	35.0
2000	38.9	30.3	34.9	2028	38.8	30.7	35.1
2001	38.9	30.3	35.0				

자료: 저자 산출

252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소득보장 전망 및 과제

〈부표 6〉 〈국민+퇴직〉 출생연도별 65세 기준 A값 대비 소득대체율(1.5A 소득자)

(단위: %)

출생 연도	남	여	전체	출생 연도	남	여	전체
1974	29.4	19.5	24.7	2002	34.1	26.3	30.6
1975	29.6	19.8	24.9	2003	34.1	26.4	30.6
1976	29.9	20.3	25.3	2004	34.2	26.4	30.6
1977	30.1	20.8	25.6	2005	34.3	26.5	30.7
1978	29.8	20.7	25.4	2006	34.3	26.5	30.7
1979	31.0	21.1	26.1	2007	34.3	26.5	30.7
1980	30.0	21.0	25.7	2008	34.3	26.5	30.7
1981	30.0	21.1	25.7	2009	34.3	26.6	30.7
1982	30.1	21.6	25.9	2010	34.3	26.6	30.7
1983	29.8	21.5	25.8	2011	34.2	26.6	30.7
1984	30.1	21.9	26.1	2012	34.2	26.6	30.7
1985	30.9	22.5	26.9	2013	34.2	26.6	30.7
1986	31.2	22.7	27.1	2014	34.1	26.6	30.7
1987	31.5	23.1	27.4	2015	34.1	26.6	30.7
1988	32.3	23.4	28.0	2016	34.1	26.7	30.7
1989	32.1	23.2	27.8	2017	34.1	26.7	30.7
1990	32.2	23.0	27.8	2018	34.0	26.7	30.7
1991	33.2	23.4	28.5	2019	34.0	26.7	30.6
1992	32.9	23.1	28.2	2020	34.0	26.7	30.6
1993	33.2	23.6	28.7	2021	34.0	26.6	30.6
1994	33.4	23.7	28.9	2022	33.9	26.6	30.5
1995	33.5	24.3	29.2	2023	33.9	26.6	30.5
1996	33.6	24.9	29.6	2024	33.9	26.6	30.5
1997	33.7	25.3	29.9	2025	33.9	26.6	30.5
1998	33.9	25.9	30.2	2026	33.9	26.6	30.5
1999	33.9	26.1	30.4	2027	33.9	26.6	30.5
2000	34.0	26.2	30.4	2028	33.9	26.6	30.5
2001	34.0	26.2	30.5				

자료: 저자 산출

〈부표 7〉 〈국민+퇴직〉 출생연도별 65세 기준 A값 대비 소득대체율(2A 소득자)

(단위: %)

출생연도	남	여	전체	출생연도	남	여	전체
1974	27.0	17.8	22.6	2002	31.6	24.3	28.3
1975	27.2	18.1	22.8	2003	31.7	24.3	28.3
1976	27.4	18.6	23.2	2004	31.7	24.4	28.4
1977	27.7	19.1	23.5	2005	31.8	24.5	28.4
1978	27.4	18.9	23.4	2006	31.9	24.5	28.5
1979	28.5	19.3	24.0	2007	31.9	24.5	28.4
1980	27.7	19.2	23.6	2008	31.9	24.5	28.5
1981	27.7	19.4	23.7	2009	31.8	24.5	28.5
1982	27.8	19.8	23.9	2010	31.8	24.5	28.4
1983	27.6	19.8	23.8	2011	31.8	24.5	28.4
1984	27.8	20.1	24.1	2012	31.8	24.6	28.4
1985	28.6	20.7	24.8	2013	31.7	24.6	28.4
1986	28.9	20.9	25.0	2014	31.7	24.6	28.4
1987	29.2	21.2	25.3	2015	31.7	24.6	28.4
1988	29.9	21.5	25.8	2016	31.6	24.6	28.4
1989	29.7	21.4	25.7	2017	31.6	24.6	28.4
1990	29.9	21.2	25.7	2018	31.6	24.6	28.4
1991	30.8	21.6	26.3	2019	31.6	24.6	28.4
1992	30.5	21.3	26.1	2020	31.5	24.6	28.3
1993	30.8	21.8	26.5	2021	31.5	24.6	28.3
1994	31.0	21.9	26.7	2022	31.5	24.6	28.3
1995	31.1	22.4	27.1	2023	31.5	24.5	28.3
1996	31.2	23.0	27.4	2024	31.5	24.5	28.2
1997	31.3	23.4	27.6	2025	31.4	24.5	28.2
1998	31.4	23.9	28.0	2026	31.5	24.5	28.2
1999	31.5	24.1	28.1	2027	31.5	24.5	28.3
2000	31.5	24.2	28.2	2028	31.5	24.5	28.3
2001	31.6	24.2	28.2				

자료: 저자 산출